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 학원업무 공유시스템(웹하드) 활용 안내

- 학원업무 자료의 효율적 축적·관리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질의회신, 판례 및 매뉴얼 등 공유
- 자료 위치
 - 업무포털 ⇨ SEN메일 ⇨ 웹하드 ⇨ 팀웹하드 ⇨ 학원업무 공유
- 활용 방법
 - 웹하드 사용권한 신청 ⇨ 자료 활용 및 탑재 요청 ⇨ 인사이동 또는 미사용 시 권한해제 요청
- 사용 신청 방법 및 기타 행정사항은 「학원업무 공유시스템(웹하드) 개설 및 활용 안내 (평생교육과-16816, 2018. 9. 7.)」 참고 및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02-3999-693)으로 문의

일 러 두 기

1. 본 편람에 수록된 내용들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포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 학원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본 편람의 내용이 참조하는 시점에 따라 법령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하고 해석 및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본 편람에 수록된 교육부나 법제처 등의 각종 법령 해석 및 질의 회신은 질의를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므로 이를 그대로 다른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질의 회신문, 법령 해석문, 소송판결문은 질의 배경과 판단 또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논리의 구조는 무엇인지 등을 잘 파악하여야 다른 민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해석, 질의 회신은 가급적 원안을 그대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충분히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법정서식은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고, 법정서식은 아니지만 업무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예시문으로 수록하였으니, 교육지원청의 실정 또는 상황에 맞게 수정·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학원 설립 MAP

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3
2. 설립 체크리스트	4
3. 설립 절차 전체 흐름도	6
4. 설립 전 확인 사항	7
5. 등록 시 확인 사항	19
6. 설립 후 해야 할 일	20
7. 등록증 발급 후 준비 사항	22
8. 운영 시 준수 사항	24
9. 학원과 교습소 비교	25
10. 관련 규정	27
11. 민원처리기한 및 전화번호 안내	28

II. 학원

1. 학원 설립	32
2. 학원의 교습과정	52
3. 교육환경 유해업소	56
4. 건축물 용도 및 시설	60
5. 학원의 명칭	72
6. 교습비등	73
7. 기타 유의사항	79
※ 법령 서식	85
※ 참고 예시문	86

III. 교습소

1. 교습소 설립	116
2. 교습소 운영	122
※ 법령 서식	125
※ 참고 예시문	126

IV. 개인과외교습자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148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151
※ 법령 서식 및 참고 예시문	154

V. 지도점검

1. 지도·점검(실태조사) 중점사항	166
2. 학원 불법운영 사례	200
3. 행정처분·과태료·벌칙	203
4.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233
5.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전수점검	234
6. 참고 규정	236
※ 법령 서식	253
※ 참고 예시문	254

VI. 학원 등 시설 안전관리

1.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285
2.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287
3.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288
4. 중대 재해 처벌 안내	289
5.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291
6. 안전대처를 위한 도움 자료	294

VII. 질의응답

1. 학원(독서실) Q&A	301
2. 교습소 Q&A	343
3. 개인과외교습자 Q&A	358
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73
5.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393

찾아보기	435



학원 설립 MAP

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3
2. 설립 체크리스트	4
3. 설립 절차 전체 흐름도	6
4. 설립 전 확인 사항	7
5. 등록 시 확인 사항	19
6. 설립 후 해야 할 일	20
7. 등록증 발급 후 준비 사항	22
8. 운영 시 준수 사항	24
9. 학원과 교습소 비교	25
10. 관련 규정	27
11. 민원처리기한 및 전화번호 안내	28

I

학원 설립 MAP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비교

구 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동시 9인까지 (피아노교습소는 5인까지)	동시 9인까지
시설규모	조례 [별표3][별표4]에 따른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없음
일시수용능력 인원	1㎡당 1인 이하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 요로 하는 학원인 경우 조례 제9조 및 [별표4] 참조)	1㎡ 0.3인 이하 (9인 이하/ 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교습과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과목	여러 과목 교습 가능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2의 제9항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교습비등 표시 ·게시·고지	적용	적용	적용
교습비등 조정명령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적용	적용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자	교습소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 :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교육지원청
※성범죄 경력조회는 본인이 조회 후 제출도 가능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정화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적용	해당 없음

학원 설립은 등록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
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하기 전

☆ 학원 설립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

확인사항	내 용	○	X
1. 학원의 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선택		
2. 설립자의 자격	▶ 결격사유 미해당여부, 성범죄아동학대 미해당 여부		
3. 학원 건물 소재지 조건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현재 용도 : -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여부 - 적합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 ※단,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불가 - 외부의 한 면이 완전 지상 노출 및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 2개 이상		
	▶ 유해업소가 없는가?(학교교과교습학원만 해당) - 기재사항 : -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 :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 설립 불가 -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 :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 시 유해업소 저촉이 되면 학원설립등록 수리가 불가하니,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업소로 인해 등록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시 관련조건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 후 추진		
	▶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 3층 이상일 경우 같은 층에 학원(독서실포함) 등의 전용면적이 200㎡ 이상(본인 학원면적 포함)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함.(승강기는 직통계단과 별개임) * 3층 이상 층에 학원 설립 시 완강기 설치(1, 2층의 학원은 해당없음)		
	▶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 (폐원, 위치변경 처리완료 후 설립 가능)		
	▶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 하였나? (지분 1/2초과 소유자의 서명 및 날인 필요)		
4. 임대(전대)차 계약서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5. 학원 시설 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1강의실당 최소면적 기준: 10㎡이상, 성인대상 어학원은 제외) - 보습 : 70㎡, 외국어 : 150㎡, 음악·미술 : 60㎡, 무용 : 70㎡(실습실), 5㎡(탈의실), 독서실 : 120㎡ 이상		

확인사항	내 용	○	X
	*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 복도, 기동, 붙박이장 등은 해당이 안되며,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 기준임(바닥면적 기준)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자바라 칸막이, 파티션, 폴딩도어 구획은 실 인정 안됨), 공유면적 불법점유 사용 시 설립 불가 및 설립 취소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시설면적기준에 유의 - 강의실 30㎡이상, 열람실 45㎡, 실험실습실 35㎡ 이상 준수 * 강의실과 복도는 분리되어야 하며, 강의실을 통한 통행 불가 * 급수시설(식수) 필요 * 화장실은 남녀 구분 필요		
	▶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 기재사항		
	▶ 소방관련법을 충족하는지? 관할소방서에서 직접 방문 소방법에 저촉 시 학원 설립 불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6. 학원의 명칭	▶ 적합한 학원명칭 확인(kipris 확인 필요-업종41번 겹치면 불가) * [고유명사 + 학원]. 관내중복명칭불가. 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 (영문 병행 표기 가능)		
7. 최종 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학원 설립 준비부터 등록까지
전체 흐름도입니다. ~

등록절차	준비 사항
등록 전 확인 사항 ☞ 중요 사항이므로 꼭 체크~	• 설립자의 자격을 확인(☞ Map 1, 2) (교육지원청에서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의뢰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학원시설의 기준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 Map 3, 4, 5, 6) - 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단,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 기준면적 : 교습과정별 기준면적 상이하므로 문의 ☞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Map 7)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용도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일 때)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Map 8, 9) • 학원시설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Map 10) - 설립자 명으로 임대계약 - 임대개시일 이후 등록신청 가능 • 강의실 기준면적 확보와 소방 설비 설치, 화장실 기준 확인(☞ Map 11, 12) - 강의실 당 10㎡ 이상 확보(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어학학원 제외) - 각실 소화기, 완강기(3층↑), 비상구 유도등 등 소방설비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동일건물 학원 수용인원 합산 300인 이상) •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관내 중복 명칭 학원 설립 불가) • 임차 장소의 기존 학원 개원·폐원 여부 확인 (동일주소 내 이중등록 금지)
등록 구비서류 준비	• 학원 원칙 1부(방문시 작성 가능)(☞ Map 13) ※ 교습과목·교습비 생각해오시기 바랍니다. • 학원시설평면도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각1부) • 기준등록지(본적지) 확인(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정관(원본 지참,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학원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명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이사·감사 등의 신분증사본(본적지 기재) - 성범죄아동학대조회동의서 - 이사회회의록(학원설립에 관한 내용·명칭·주소·면적, 이사·감사 등의 기명날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필요) - 위임장(법인을 대리한다는 내용, 대표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접수	• 구비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상담) 후 접수 처리합니다.
현장 방문(실사)	•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 소방법에 따른 설비요건(☞ Map 11) •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 및 민원 반려 (☞ Map 20) - 학원간판, 각실 명칭 부착, 소방시설, 급수시설, 기타 교구 설비 등
등록증 발급 후	•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잠깐! 학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할 것 (미신고 시 →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됨) • 강사채용 및 교습비등 등을 교육청 등록 및 보험 제출 (☞ Map 14, 15, 16, 17) • 학원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준수사항 확인(☞ Map 18, 19, 21)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1. 설립자의 자격

설립자의 자격

☞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확인
→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본적지 기재 요망 !!

☞ 이런 분은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는 그 임원중에 1~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 외에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Q] 법인 설립자인가요?

☞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임원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 주세요.**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2. 설립자 구비서류

설립자 관련 구비 서류

👉 개인, 법인, 외국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요!

◆ 내국인 설립자(개인)

1. 학원 설립등록 신청서 :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경력조회 동의서

◆ 내국인 설립자(법인)

1. 결격사유 조회의뢰신청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자산 10억원 이상 공증필]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등재
 -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 주주총회회의록, 발기인총회회의록 아님. 법인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열 수 없으나 약식으로 작성 가능
5. (법인 임원 전부)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외국인 설립자 (개인, 법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2. 여권사본 1부
3.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혹은 해당 체류 국가 대사관에서 증명 (해당 체류국가 범죄사실 확인)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Q] 투자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외국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 ② 신고수리 및 통지(외국인 투자허용 업종 적합여부 검토 후 외국인에게 신고 수리 통지) → ③ 현금예치(외국인 외국환 은행 등에 현금 예치) → ④ 투자확인서 발급 및 현금인출(외국환은행 및 무역진흥공사 투자확인서 발급)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3. 학원 기준 면적

학원 기준 면적

 강의실 최소 기준 면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1. 무엇을 가르칠 예정입니까? [시행령 별표2를 확인하세요!]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고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어학(실용외국어: 토익, 토플, TEPS, 회화 등)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2. 교습과목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 최소기준면적은 얼마입니까? (조례 별표3을 확인하세요!)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 제 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 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 활동	조례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Q1] 직업기술학원의 각 분야별 면적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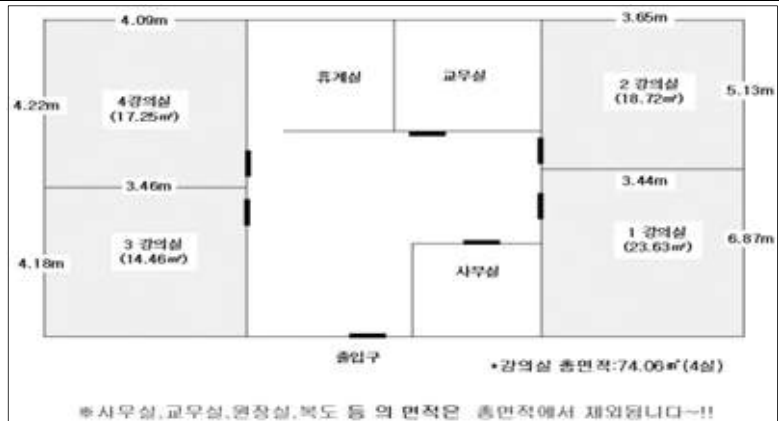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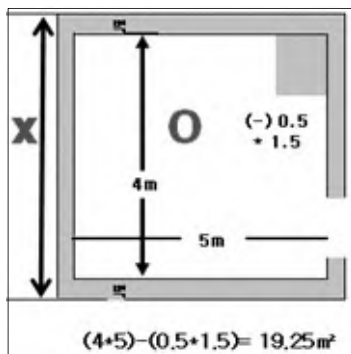
[Q2]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면적이 기준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69㎡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부족해도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강의실 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4. 강의실 면적 측정

강의실 면적 측정

👉 강의실 외의 공간은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에 미포함!



- ☞ 강의실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바닥면적 기준)
 - ☞ 강의실이란 순수하게 강의하는 공간만을 의미하며, 강의실 외의 공간(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 ☞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 이상 135㎡ 이하(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 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확보에 주의할 것!

[Q] 열람실, 실습실도 상기 측정 방식을 따르며 각 단위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시설이란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 면적단위로써 같은 건물 내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시설 면적기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강의실 : 30㎡~135㎡이하(칸막이 사용하는 경우 10㎡ 이상), 1㎡당 수용인원: 1인 이하
- (2) 열람실(독서실) : 45㎡이상(칸막이 사용 가능),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 (3) 실험.실습실 : 35㎡이상(칸막이 사용 가능)

※ 학원시설은 지하에 둘 수 없습니다. 단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례 제5조 제1항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5.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 확인

☞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학원 설립이 가능하며, 판매시설인 경우 예외적으로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법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번
명칭(번호)	호명칭	205	위반건축물여부	
전유부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139.5
공동부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 복도, 화장실	24.29
주	지5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26.79
주	지2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1.21

[Q1]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축물대장 열람 (구청, 동사무소, 무인자동발급기, 정부민원24(<http://www.gov.go.kr>)에서 발급) 후 해당 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 확인

[Q2] 용도 외에 학원 설립을 위해 확인해야 할 규제 지역이 있나요?

☞ 학원설립이 제한되는 제한지역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열람 후 관할 구청 및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관련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6.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런 점은 주의 하세요!

동일한 임차인의 학원 또는 교습소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함 (즉 임차인별로 면적을 산정해야 함)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화장실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외),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전대)차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 건축과 담당자 및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층	서울미술학원면적 : 150㎡	학원면적 합계 550㎡	용도 : 교육연구시설 (학원)
2층	서울음악학원면적 : 200㎡		
1층	서울보습학원면적 : 200㎡		



[Q] 1층(200㎡), 2층(200㎡)에 이미 학원이 설립되어 있고 건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며, 제가 이 건물 3층에 학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3층에 학원을 설립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용도가 500㎡가 넘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용도변경에 대한 비용부담을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하는 것이나, 부대시설 설치와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있어 건물주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전대)차계약 전에 반드시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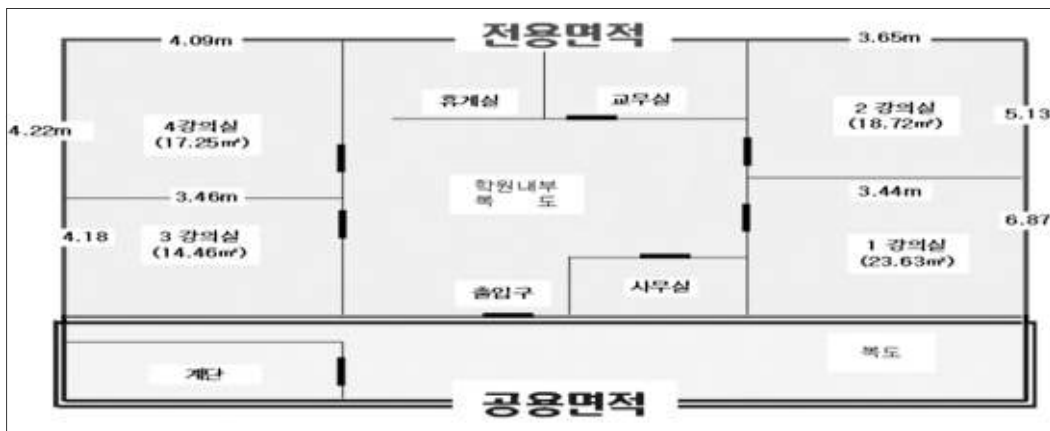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7. 직통계단 2개소

직통계단 2개소

☞ 3층부터(3층 포함) 한개 층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3층 포함)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설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용면적이란?

☞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예) 보습학원을 3층에서 설립 예정, 건축물대장 3층 면적은 300㎡일 경우

전용면적 250㎡, 공용면적(화장실, 계단면적)50㎡, 강의실면적의 합 180㎡ 일 경우, 전용면적이 200㎡가 넘으므로 직통계단은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8. 교육환경유해업소확인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조항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종류
제13호	전화방 / 화상대화 / 성기구취급업소 / 키스방 / 대딸방 / 전립선마사지 / 유리방 / 성인PC방 / 휴게텔 / 인형체험방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전자담배판매소(유인판매소만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오락실, 인형뽑기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제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휴게음식점영업' 인 경우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제21호	당구장(제외) / 무도학원 / 무도장
제23호	사행행위영업
제24호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ex. DVD방) /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제26호	단란주점 /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 호텔업
제28호	만화대여업(제외) * <2021. 9. 24.> 삭제

☞ 이외의 유해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확인

[Q] 당구장, 만화방도 유해업소에 해당되나요?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9. 유해업소 확인 방법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방법

☞ 건물의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or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학원 설립 불가

☞ 연면적 확인 방법

고지번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99지급번호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연면적(㎡)	2,571.52	연면적(㎡)	277.42	연면적(㎡)	1,385.94	연면적(㎡)	1,385.94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건물종류	49.07	건물종류	200.94	건물종류	277.45	건물종류	277.45
지대	(일반)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지대	일반지대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구분	일반건축물

(예) 학원을 3층에 설립할 예정. 지하1층에 노래방이 있을때,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건물의 연면적이 2,571.52㎡로 1,650㎡이상이므로,
「중층,위층,아래층인 2층,3층,4층」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원설립에 가능.

※ 건물의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10. 임대차계약서작성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학원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학원설립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학원설립자가 1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1/2초과)지분의 공유자들이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일반건축물대장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번	1111-111
영지일련번호		독이사항				대지면적 (㎡)	0
연면적 (㎡)		921.67	건축면적 (㎡)	0		정착면적 (㎡)	0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 1층/지상 1층
건폐율 (%)		0	용적률 (%)	0		높이 (m)	0
지분		스라브	부속건축물	0㎡ 0㎡		위반건축물여부	
지역		지구				구역	
조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건축물현황							
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300.76	
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철도		196.7	
소유자현황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등기여부
홍길동	111111-11111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	2007.03.08		
이영미	111111-22222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	2007.03.08		

*홍길동,이영미 2명이 1/2의 소유권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2명의 인적사항기재 및 날인을 요함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임대인들의 공유지분의 합계가 과반수(1/2초과)이어야 함

[Q] 건물소유주(홍길동: 남편)는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바빠서 홍길동의 부인(김영미)이 김영미의 이름으로 이름기재 및 서명(날인)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를 학원설립 서류로 제출하여도 가능한가요?

☞ 건물소유주는 홍길동이므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홍길동의 이름기재 및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11. 소방점검은 어떻게?

학원 소방 점검

 기준 면적에 따라 소방점검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꼭 문의하세요.

1.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예방과에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2. 학원면적 570㎡ 미만, 독서실면적 900㎡ 미만
※ 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져,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참고사항】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각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해당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 이상 600㎡ 미만 경우 해당

 잠깐!

[Q] 소방점검 대상인 570㎡(학원), 900㎡(독서실)는 전용면적인가요?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Map12. 화장실 설치하는 어떻게?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학원은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합니다.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별표1]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 것
5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잠깐!

[Q] 대변기 및 소변기는 반드시 수세식으로 설치해야하나요?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입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학원 등록할 때 확인 사항
Map13. 구비서류 확인은 필수

등록할 때 제출서류

☞ 다음의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4.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필)],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회의록(X), 발기인총회회의록(X)]
6.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포함)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8. 입학사정관 취업 등 제한 해당 여부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담당자의 행정정보
공동활용)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Q] 학원 명칭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등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학원, ○○독서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학원 설립 후, 해야 할 일
Map14. 교습비등 등록

교습비등 등록(신고)

☞ 교습비등을 변경시 지체없이 등록

- 학원 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 교육 담당자(교습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하며,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장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정을 명할 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Q] 교습비등 조정명령은 모든 학원에 적용되는지요?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 조정은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의2, 제1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학원 설립 후, 해야 할 일
Map15. 강사채용(해임)등록

강사채용 · 해임 등록

👉 강사를 채용 및 해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할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강사채용 등록 구비서류
 - 내국인 : ‘졸업증명서 원본’ or ‘졸업장 원본+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회보서(학교교과교습학원
청소년 수강생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 외국인
 - .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 건강진단서(1개월 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
 -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 여권사본,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회보서(학교교과교습학원, 청소년 수강생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사본은 원본대조 必)
-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장은 학원강사를 채용할 때 학원 소재지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원설립자가 강의를 할 때에도 강사채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잠깐!

[Q1] 대학교 재학생도 강사 채용이 가능한가요?

👉 예, 강사의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이상 수료 후 강사채용이 가능합니다.

[Q2] 보습학원과 어학학원의 영어강사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어학학원은 회화지도(E-2), 재외동포(F-4), 거주(F-2)를 채용할 수 있으나, 보습학원은 회화지도 강사(E-2)는 채용할 수 없고, F-2, F-4 비자 소지자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록증 발급 후 준비 사항
Map16. 성범죄경력확인 제출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출
2. 학원장이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민원실 or 형사과)에 신청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
신청서 작성 → 해당학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 첨부한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제출 → '범죄경력회신서' 발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시 구비서류

-  학원 설립운영자 직접 신청 : 신청서, 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립운영자 신분증
-  위임인 신청 : 신청서, 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록증 발급 후 준비 사항
Map17. 학원강사 학력조회 제출

외국소재 대학 출신 강사 학력조회 방법

외국소재 대학 출신 학원 강사의 학력조회 방법

1. 영사공증을 해주는 국가소재대학 출신자의 경우

- 해당국가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2. 영사공증을 해주지 않는 국가 소재대학 출신자의 경우

- 외국의 국.공립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외국의 국.공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공적문서이므로 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해 당해국가가 발행하는 Apostille(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외국의 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사문서이므로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대해 당해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후 Apostille (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 학위장, 졸업장 등을 사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서류는 학위검증의 효력이 없으므로, 1, 2의 방법으로 학위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학력인정 교육기관 조회 사이트

- 캐나다 : www.cicic.ca, 미국 : www.ope.ed.gov/accreditation



[Q] 학력 위.변조한 강사와 학원설립운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학력을 위.변조한 강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고 해임조치를 요구하며,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도에 따라 고발 등 형사.행정상 조치를 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 시 준수 사항
Map18. 이진 꼭 지켜야 합니다.

학원운영하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

☞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설립등록이 된 날로부터 사설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학 원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교습소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의료실비(학원·교습소 공통) 1인당 3천만원 이상		

※ 설립·운영자(교습자) 변경시 기 가입한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 변경(인계자→인수자)이 가능함(명의를 변경된 가입증서 사본 14일 이내 제출)

2. 면허세 납부

면허세 대상 업체는 구청에서 교부되는 납부서(지로용지)에 따라 기간 내에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학원의 교육환경정화

학원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 신고→교육청접수→관할 행정구청에 이진.폐쇄 협조 의뢰

4. 학원 통학차량 보험 안내

학원생 보호를 위하여 통학차량에 대해 학원소유 차량인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외부차량을 임대계약 할 시에는 해당차량이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에 가입 설정된 차량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장 스스로 유사시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학원 설립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설립후 Check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나?	○	×
	2. 학원 보험에 가입하였나?	○	×
	3. 강사를 채용할 때, 해임할 때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나? (강사채용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여부 포함)	○	×
	4. 교습비등을 학원에 표시, 게시하고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나?	○	×

Map19.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 vs 교습소

☞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하고, 교습소는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의 학습자를 과외교습함.

기 준	학 원	교 습 소
설립자의 자 격	· 학력제한 없음	·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 교습과정별로 해당하는 강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 강의실면적에 대한 제한 없음. (단, 강의실 1실만 인정됨.)
일시수용인원	· 조례 참조	· 1㎡당 0.3인 이하
강사 채용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대리교습 불가) (교습소 신고자=강의하는 사람)
교습과목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ex) 보습학원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가르칠 수 있음 (보통교과에 속하는 과목).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ex) 국어교습소
교습시간	· 05:00 ~ 22:00	· 05:00 ~ 22:00
교습대상	· 유·초·중·고·성인	· 초·중·고 재학생

[Q1] 학원과 교습소의 민원 구비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학원은 학원원칙, 평면도, 임대(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등록, 교습소는 평면도, 임대(전대)차계약서, 졸업증명서(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2매를 구비하여 신고

[Q2]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서 학습자를 1~9인까지 교습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Map20. 민원서류를 반려해 요

민원서류의 반려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 규정의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2.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3. 이의 또는 행정심판 판결불복 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Map21. 학원 설립·운영
관련 규정

관련 법규

☞ 학원 설립부터 운영까지 관련 법규입니다.

법 규 명	학원 관련 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학원설립·운영 및 지도·점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민원 처리 절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희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과태료 이의신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분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
● 건축법, 시행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 용도 확인 토지용도 확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유해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단급식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학원·교습소·개인파외 광고물 화재보험 가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 통학버스 학원차량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등록(신고), 변경시 면허세 납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Map22.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민원서비스합니다.

민원처리기한 및 교육지원청 전화번호 안내

❶ 학원 관련 민원 처리기간

구 분	민 원 업 무 명	처리기한	신청방법	비 고
학 원	학원설립 등록	8일	방문	세무서, 교육지원청 중 1개 기관에서 일괄처리 가능
	학원변경 등록 (설립자, 교습과정, 위치 등)	7일		
	학원의 시설설비완성 보고	7일		
	학원의 휴·폐원 신고	1일	방문, 인터넷	
교습소	교습소 설립 신고	8일	방문	세무서, 교육지원청 중 1개 기관에서 일괄처리 가능
	교습소 휴·폐소 신고	1일	방문, 인터넷	
	교습소 변경 신고	8일	방문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설립 신고	5일	방문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5일	방문	

❷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전화번호 안내

교육지원청	관할구	학원관리담당(☎)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중랑구	2210-1262~3, 5~7
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90-5562~9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2165-0272~5, 0284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 도봉구	3499-6872, 4~5 6864, 6866
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708-6553, 5~8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송파구	3434-4357~8, 4362~7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 양천구	2600-0861, 0871~7, 093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 서초구	3015-3461~9, 3342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 관악구	810-8364~8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광진구	2286-3643, 3652~4, 6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강북구	9449-356~360



학 원

1. 학원 설립	32
2. 학원의 교습과정	52
3. 교육환경 유해업소	56
4. 건축물 용도 및 시설	60
5. 학원의 명칭	72
6. 교습비등	73
7. 기타 유의사항	79
※ 서식	85
※ 참고 예시문	86

학원등록 민원업무 처리 절차



1 학원 설립

학원의 정의(학원법 제2조)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의 종류(학원법 제2조2)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참고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학원(독서실) 설립 등록 서류

※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민원 서류 간소화 추진 결과 안내」[총무과-195032(21. 12. 22.)]

민원사항	구비 서류
신규 설립 등록 (8일)	1.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학원 원칙 4. 학원 시설평면도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포함) * 관련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6.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1. 건축물대장(일반 / 집합) 2.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서류 외 필요서류

-  교습비 등록 신청서(내역서)
-  설립·운영예정자 학력서류(강사로 등록 시)

구비서류의 확인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소유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서 추가 구비
 -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민법 265조)
 - ※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서류 내 임대하는 장소, 면적, 기간, 임대(전차)인 등 확인
 - 무상사용: 무상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재산무상사용승낙서
 - ※ 재산무상사용승낙서: 소유자신분증 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구비(p.93 별지 서식 참조)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정관 목적: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정관 공증필요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참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참조]
 -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원본 지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제출 대상: 업무편람 p.71 참조)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21. 8. 9.):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원 확인 가능(주민등록법 제25조)
-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참고] 법인 정관 및 대표권한 확인

○ 상법 제289조에 규정된 정관 절대적기재사항 확인 필요 ※ 대체로 제8호의 누락이 많음

• 상법 제289조(절대적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단, 정관 변경 이후에는 상법 제289조제1항제8호는 제외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을 처음 만들 때 필요한 것이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로 결정되므로 정관이 변경된 이후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삭제됨

○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여부 확인 필요

- 법인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서류에 모든 공동대표의 날인이 있어야 법률적 효력이 있음

- 법인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므로 확인 가능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으로 기재

· 각자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 홍길동’ 으로 기재

공동대표	각자대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	각 대표가 단독으로 의사결정
공동대표이사가 모두 날인해야 법률적인 효력 인정	각자대표 중 1인만 날인해도 법률적 효력 인정

• 상법 제208조(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손해배상책임)와 제386조(결원의 경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학원(독서실) 변경 등록 서류

※ 「학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민원 서류 간소화 추진 결과 안내」[총무과-195032(21. 12. 22.)]

민원사항	구비 서류
설립·운영자 변경 (7일)	[공통]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2. 인수·인계 확인서 [인계자] 1.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2.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인수자] 1.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3.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법인 정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위치 변경 (이전/ 확장/ 축소) (7일)	1.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2.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1. 건축물대장(일반 / 집합) 2.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민원사항	구비 서류
시설 변경 (7일)	1.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2. 시설평면도 3.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기타 변경 (종류/ 명칭/ 교습과정/ 임원 등) (7일)	1. 학원 변경통보서 2.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3. 교습과정 변경의 경우 - 교습비 변경 신청서(내역서) 4. 법인 임원변경일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입학사정관 취업 등 제한 해당 여부 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임원 변경시에만 해당<임원에 관한 사항 확인>
휴원/ 폐원 (1일)	■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휴업·폐업 신고 병행 시] 1.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재개원 (1일)	■ 학원 재개원 신청서 - 휴원 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 시에는 신청 불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도로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 내용	목적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학습/외국어교육/음악교육/미술교육/()교육					
	명칭	학원					
	위치	도로명)					
	학원 전화번호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	
	정원						
	강사명단	추후 통보		교습비등		별지 기재	
	개강 예정일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따른 취업제한자(입학사정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지 3년 이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본인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따라 학원의 강사 채용 시 취업 제한 해당 여부 확인 후, 해당되지 않을 시 채용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0000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조건부 설립등록(학원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추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설립 · 운영 조건부 등록 시 】

[구비서류]

-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신청서, 학원원칙, 시설평면도
- 시설·설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 상기 외의 제출서류는 편람 p.33 학원 설립 등록시 구비서류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시설 · 설비 완성보고 시 】

- ①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설·설비 완성보고를 하여야 함
- ② 시설·설비 완성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③ 구비서류

-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④ 심사기준

- 시설·설비, 장소 요건 및 건물 용도가 학원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함



 건물의 용도가 학원에 적합한 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을 전제로 조건부 등록이 가능한지?

 학원설립 예정 건물의 용도와 학원의 시설·설비 요건은 별개인 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물용도는 조건부 등록 대상이 아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학원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5조의2, 조례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이며,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제한 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것
 -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 5]와 같다.
 -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여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설립자의 자격(학원법 제9조)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결 격 사 유	확 인 방 법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석례: p.381<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참조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결격사유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⑥-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⑥-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NEIS 결격사유자 확인
⑦ 법인으로서는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NEIS 결격사유자 확인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학원법 제9조제2항제2호)

-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등록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위헌, 2011헌바252, 2014.1.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법인의 임원 중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위헌, 2012헌마653, 2015.5.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취업 제한 제도

구 분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내 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점검 및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대상 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교습소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름

■ 취업제한 관련 위헌판결 및 '18.7.17. 개정법

■ 위헌 판결

- [단순위헌, 2015헌마98, 2016. 4.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 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단순위헌, 2015헌마914, 2016. 7.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18.7.17. 개정법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18.7.17.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음

구 분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취업제한 적용	X('16.7.28.위헌) ○('18.7.17.개정법)	○	X('16.4.28.위헌) ○('18.7.17.개정법)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법 제67조)
- 취업자(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법 제58조)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법 제75조)
- 취업자(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법 제29조의5)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력 조회 절차

주체 절차·방법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학원의 종사자(강사·직원 등) 교습소(보조요원 등)
조 회 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조회시기	학원(교습소) 설립 등록 시	강사·직원, 보조요원 등 채용 시
구비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①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신청서 ②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③ 학원 등록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조회방법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아 관할 교육 지원청에서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신청서 작성 후 해당시설(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형사과)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첨부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이용가능 (https://crims.police.go.kr)
회신방법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신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 ×)만을 회신 받음	

※ 개인과외교습자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본인이 경찰서에 신청 후 회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수 있음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근거 법조항

구분	종류	조회대상자	조회자	법률근거	조회대상자 동의서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
성범죄	범죄경력 조회 (아청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교육지원청, 기관장 본인	아청법 제56조제4항	불필요	가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취업(예정)자 본인	아청법 제56조제5항	필요 불필요	불가능
	취업제한 점검·확인 (아청법 제57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중인 자, 취업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	교육지원청	아청법 제57조	불필요	가능
아동 학대 범죄	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교육지원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필요	가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아동 관련 기관장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필요	불가능
	취업제한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 관련기관 등을 운영중인 자, 취업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	교육지원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불필요	가능

🌸 외국인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

◆ 제출대상 ◆

1. 외국인 개인설립자
2. 법인설립자: 임원 중 외국인 임원

◆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2. 여권 및 비자
3.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 경찰서 형사과에 조회 요청 공문 발송(행공 불가)
5. 기타 서류는 내국인 설립자 제출 서류와 동일

[D-8 비자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때 자격 및 구비요건]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 * 수시 변동하므로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3. 학원법 등에서 정한 설립자의 자격(결격사유) 확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2016.09.22)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85630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856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학원의 강사자격(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3])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질의응답례 p.46참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평생직업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강사 자격기준

계열	교습과정	인정 기준	비 고
기예	바둑	1.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 (사)한국바둑협회가 발행한 바둑 아마 3단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 (사)한국바둑협회가 발행한 바둑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향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격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아마 3단 이상 보유자로 인정 [평생학습진흥과-743(2010.01.22.)]	바둑관련 법인 및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3개 법인만 인정
경영· 관리사무	주산	주산 1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평생학습진흥과-8762(2014.4.24.)]	주산관련 민간자격 중에서 교육부 공인받는 경우 제4호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추가인정 검토 필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속셈학원에서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자가 보습학원 강사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 강사 자격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제6호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강사자격 기준에 학력요건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졸업으로 강화되면서,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부터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강사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96년 1월 1일 이전 학원 강사를 하였고 그 당시 2년 이상 전임의 교습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부칙<대통령령 제14883호, 1995.12.30. 제3항>]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10.13.)

✧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3])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❶ 비자와 여권의 차이는?

✎ 비자는 사증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여행허가서이고, 여권은 홍길동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신분증임. 여권만 있으면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단기간(15일~6개월, 나라별로 다름)에 한해 모두 갈 수 있음.



❷ 타 학원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외국인(E-2비자 소지자)을 다른 학원에서 채용이 가능한가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으면 채용이 가능함.



❸ F-2, 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이 외국어 교습을 하는 강사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 취업에 장애가 없으므로 가능함. 그러나 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 자국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검증 후 채용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 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학원 강사 가능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후 가능, 허가 스티커 혹은 온라인 허가서 확인 필요)
회화지도(E-2)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예술홍행(E-6)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모델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① 학원 강사 ② 학원설립 가능 (취업범위에 창업 포함) ③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거주(F-2)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재외동포(F-4)	재외동포에게 부여	
영주(F-5)	영주권자에게 부여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학원설립 가능
공통사항	※ 자세한 사항 및 비자별 자격 사항은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강사 채용시 등록 서류

1. 내국인 강사 / 생활지도사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 생활지도사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2. 학력증명서(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2년 수료 이상)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취업을 준비하는 미성년학생이 있는 경우) 2. 학력증명서(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 인정 기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고)
 - 학점인정증명서를 통해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전공60학점 이상, 교양30학점 이상 포함)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 이상(전공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포함) 확인
 ※ 채용·해임 통보 시기 : 채용 또는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
 ※ 국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공증 받은 것

2. 외국인 강사

E-2 (회화지도)	D-2 (유학)	E-6, F-2, F-4, F-5, F-6
* 어학원 강사만 가능	* 학원 강사 가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후 가능)	* 학원 강사 / 학원·교습소 설립 / 개인과외교습자 가능
1. 건강진단서 2. 여권 및 사증 3. 외국인등록증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 건강진단서 2. 여권 및 사증 3. 외국인등록증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5.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6. 학력증명서	1. 건강진단서 2. 여권 및 사증 3. 외국인등록증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5.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6. 학력증명서

- ※ 학력증명서 및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공증 받은 것
 ※ E-2비자 소지자는 자국범죄경력 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제출 생략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52(2012.3.30.)>
 ※ 외국어교습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2017.12.>
 ※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이 지났을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청
 출입국사실증명서에서 외국 체류기간이 연속 180일 미만으로 지속되었는지 확인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4. 10.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학원강사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 어학원이 아닌 학원에서 외국인강사 채용이 가능한지?
- ☞ 비록 법률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법률의 입법취지와 해석례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 강사는 현실적으로 외국어계열 외 예능 등 기타계열 학원에서도 채용될 수 있음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2018.12.17.)

🌸 외국소재 대학 출신 강사 학력조회 방법

1. 영사공증을 해주는 국가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국가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해당국가의 대한민국의 공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2. 영사공증을 해주지 않는 국가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가. 외국의 국·공립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외국의 국·공립 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해 당해국가가 발행하는 Apostille(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

나. 외국의 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사문서이므로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대해 당해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후 Apostille (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사설법인에서 공증 받은 서류

외국 소재 대학의 학위.졸업장 등을 사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서류는 학위 검증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의 방법으로 학위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공자아카데미는 예외[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23(2014.4.7.)]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 나.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국내 교습 외국인 강사만 해당)
- 다.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국내 교습 외국인 강사만 해당)
- 라.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의 경우)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확인

※ 법무부 고시(제2017-116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HIV가 제외되었음
(평생교육과-19165, 2017.10.19.)

3. 학력증명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 나.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취득증명서
- 다.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 라.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경우)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및 그 밖의 신분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 여권
 - 유효할 것. 국제화 분야 외국 원격 교습 강사의 경우 해당 여권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 필요
- 나.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체류자격은 외국어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다. 그 밖의 신분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것,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당 신분증명서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국제화 분야 외국 원격 교습 강사의 경우)

※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3] 9호 <개정 2024. 5. 7.> , 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내 교습 [국내원격교습(국제화분야) 제외]	국내 원격 교습(국제화분야)	외국 원격 교습(국제화분야)
대학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이상
1. 건강진단서 2. 여권 및 사증 3. 외국인등록증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5.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6. 학력증명서 (E-2비자 소지자 5,6 제출 생략)	1. 건강진단서 2. 여권 및 사증 3. 외국인등록증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5.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6. 학력증명서 (E-2비자 소지자 5,6 제출 생략)	1. 건강진단서(공적확인 필요) 2.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 사본(공적확인 필요) 3.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4. 학력증명서

2 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합니다.
-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다음표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하고,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사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 활동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특수교육학원 등록 시 교습과정 관련 유의 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07.5.25)되고 (구)「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 (08.2 고시) 제외하고, 교육과정 외로 교육이 아닌 전문치료사가 치료지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특수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만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가능하나, “치료교육”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은 등록이 불가능함을 재통지하오니, 각 교육청에서는 신고포상금 등 학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97, 2010.2.3)

종합학원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미술】혹은 【보습·외국어】과정 등을 교습할 경우 종합학원으로 구분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개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학원의 등록대상인지?

☞ 창의력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교습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신장에 있어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항에 의하여 [별표 1]의 교습과정 중 그 교습내용이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는게 적절할 것임

☞ 창의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학, 수학 등 지식이나 기술, 예능 등의 교습이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창의력 과정은 학원법상 등록대상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간호조무사학원 지정평가제 실시

☞ 「의료법」제80조 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함. 간호조무학원 개원 문의 시 관련 내용 및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확인토록 안내

☞ 관할 교육지원청은 간호조무사학원의 신규등록, 위치변경, 설립자(대표자)변경, 폐업 및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공문발송

원격교습학원 설립 관련 사항

1.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한다.
(학원법 제2조)
 2.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7조)
 3.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원법 제24조)
 4.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 ※ 원격교습학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14.10.14.자 개정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원격교습학원’은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고 해석함
5.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서버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 ※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 ※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 상기 외의 제출서류는 편람 학원 설립 등록시 구비서류(p.33) 참조
 -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등록 후 제출
 6. 교습과정 등록: 교습과정 전체 등록



-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할 대상은?
- 학원 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 학원 등록대상은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 콘텐츠(교습 동영상)만 구매하여, 영상 전송(교습)하는 업체도 학원 등록 대상인지?
- 전송(교습)하는 업체만이 학원등록 대상 ※ 동영상제작업체는 학원 아님 [서울시교육청, 2012. 11. 1.]

❧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등록

■ 2008년 댄스스포츠(무도)학원 등록에 대한 교육부 질의회신

- ❶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체육시설업의종류) 및 제11조(시설) 규정에는 문화관광부의 시설규정에 따라 시설을 하여 시·군청에 신고하여 운영을 하거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의거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한 후에 영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❷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별표2의 규정은 댄스스포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속하는 과정으로 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5항 규정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은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결(2005도4706 판결일 2007.01.25, 2004도6717 판결일 2004.12.10, 2004도6717 판결일 2004.12.10) 내용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으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속하는 10종목에 해당되는 ‘댄스스포츠’ 교육과정 학원설립·운영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 무도학원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학원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❸ 댄스스포츠는 지난 3월중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변화는 없습니다. 본 영역이 향후 올림픽 시범 경기화 할 가능성이 있고, 스포츠적 성향이 우세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 보건법상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에 의한 등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댄스스포츠(무도) 관련 학원설립·등록 업무처리 방안(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736, 2014. 1. 13)

잇따른 검찰의 소송포기 지휘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간접강제신청에 따른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교육청은 댄스스포츠 시설을 학원으로 등록수리하기로 함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조례」 제5조 별표3의 댄스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적용

■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 등록 관련 처리방법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454, 2018. 7. 26)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려는 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 등록 요건을 갖추어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용’ 교습과정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댄스’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함

*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국제표준무도’로서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3 교육환경 유해업소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혹은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법 시행령 제4조의2)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조항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종류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배출 / 처리 / 공공처리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배출시설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사체 / 오염물건 /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제9호	회장시설 / 봉안시설
제10호	도축업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전화방 / 화상대화 / 성기구취급업소 / 키스방 / 대딸방 / 전립선마사지 / 유리방 / 성인PC방 / 휴게텔 / 인형체험방
제14호	고압가스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충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 저장소
제17호	(감염병) 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전자담배판매소(유인판매소만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오락실, 인형뽑기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제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휴게음식점영업’인 경우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제21호	당구장(제외) / 무도학원 / 무도장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 경주장, 장외매장
제23호	사행행위영업
제24호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ex. DVD방) /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제26호	단란주점 /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 호텔업
제28호	만화대여업(제외) * <2021. 9. 24.> 삭제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취급시설
제30호	레미콘제조업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
제32호	카지노업

※ 유해업소 제외업소(학원법시행령 제4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기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제한 (학원법 제5조제2항)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 ①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 ②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운영 가능
- * 수평거리는 수평면에서 학원-유해업소간 최단거리로 측정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학원 설립 불가

건물의 총면적 확인 방법

고유번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84C접수번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지번	1111-111
영도면적(㎡)	2,571.52	호수	2세대.호 / 0가구	대지면적(㎡)	557.9
연면적(㎡)	2,571.52	건축면적(㎡)	277.1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388.84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관련생활시설	층수	지하 3층/지상 6층
건폐율(%)	49.67	용적률(%)	248.94	높이(m)	27.65
지명	(철근)콘크리트	부속건축물	동 ㎡	위반건축물여부	
지역		지구		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용식점	408.45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용식점	200.97	
주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용식점	408.45	
주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교육연구시설	200.97	
주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용식점	408.45	
주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용식점	200.97	

(예) 학원을 3층에 설립할 예정. 지하1층에 노래방이 있을때,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건물의 연면적이 2,571.52㎡로 1,650㎡이상이므로,
「동층,위층,아래층인 2층,3층,4층」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원설립이 가능.

【건물의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



4 건축물 용도 및 시설

-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만약 해당 용도가 아닌 곳에 학원 설립을 원할 경우, 학원의 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알아보고 임차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500㎡ 미만의 학원, 독서실(면적에 상관없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 예외적 허용 : 판매시설
 - ※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학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385(2019.11.21.), 평생교육과-23904(2019.11.27.))
 - ※ 판매시설은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용도변경 절차 이행없이 판매시설 내 설치 가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641(2014.5.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23(2014.4.7.))
 -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별표1]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 과 ‘독서실’ 을 구분하고 있어 ‘독서실’ 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인 경우에만 등록 수리 가능(평생교육과-19421(2018.10.18.))
- 500㎡ 이상의 학원 :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법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독서실 등록 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용도 변경(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학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독서실 등록 수리가 가능한지?
- ☞ 2000.6.27. 「건축법 시행령」 개정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이 별도 규정되지 않아 ‘학원’의 범위에 ‘독서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에서도 설립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학원’과 ‘독서실’을 각각 나열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연구시설’에 규정된 ‘학원’에 ‘독서실’이 포함된다라고 확대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학원법」상 ‘독서실’은 현행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등록 수리가 가능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10.12.)
- 독서실 변경 신고시, 기존 독서실 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다면 현재 해석을 적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실시한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 독서실 위치가 변동될 경우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 후에 신고 수리해야하나, 위치가 변동되지 않는다면(설립·운영자 변경, 시설 및 설비 변경 등) 용도 변경 필요없이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신고수리가 가능함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2019.1.14.)

학원 설립 등록

- 면적은 소유자별 사용면적 합계로 산정하며,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으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소유주(임차인)별로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모두 동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674(2014.5.8.)])
- 무허가 또는 위반 건축물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 학원설립 관련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건축물 용도 확인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 임대 계약서 면적, 실제로 학원으로 쓰이는 면적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실사 시에는 건물 내에서 실제 학원으로 운영되는 면적이 500㎡이상이 넘을 경우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
 - ※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건축법 제79조 제2항)
 - ※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 설립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 [법제처 해석례 안전번호 14-0210]

▶ [예시] 교육연구시설 변경의 경우 (소유주(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99204번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번	
영향권번호		요청일	205	위반건축물여부	
전유부분					
구분	층별	구분	용도	면적(㎡)	
주	2층	서울출근근로자주택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138.5	
공용부분					
구분	층별	구분	용도	면적(㎡)	
주	2층	서울출근근로자주택구조	계단, 복도, 화장실	24.29	
주	지1층	서울출근근로자주택구조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26.79	
주	지2층	서울출근근로자주택구조	주차장	31.21	

3층 : 학원예정지 바닥면적 200㎡
2층 : 보습학원 바닥면적 150㎡
1층 : 음악학원 바닥면적 200㎡

∴ 학원 바닥면적 합계 : 550㎡

따라서, 학원예정지의 건축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

참고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당해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은 물론 공용으로 쓰이는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함. 단, 주차장은 제외

✿ 3층 이상의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판매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는 피난층¹⁾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설립·등록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각 학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함
- ※ 교습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직통계단

- 건축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²⁾만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위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함
 -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연결하는 부위에 거실이 있어서는 안 됨
 - 에스컬레이터 및 차량용 경사로는 직통계단이 아님
 - 해당층이 하나의 거실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거실에서 양쪽 직통계단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됨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과 준초고층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옥상은 피난층이 아님)
2) 계단 도중에서 폭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 계단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피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❶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으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1951(2008.6.25.)]



❷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에 미달하더라도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200㎡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층으로써 동 규정에 나열된 것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200㎡ 이상인 것에 적용하는 것(질의 요지 중 ②의 경우)으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어야 적용하는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 건축기획팀-7152(2006.12 5.))



❸ 법 개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인데 학원설립이 안되는지?

☞ 2003.2.24.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부칙(제17926호, 2003.2.24.)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 1개소라 하여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설립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 학원·독서실의 용도가 변경됨 없이 유지된 경우이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학원설립이 제한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 ※위 제1항과 관련하여 도·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용도지역 분류에 따른 학원설립 가능여부(참고) -

용도 지역 건축물 용도	제1종 및 제2종전용주거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유통상업지역 · 생산녹지지역은 4층 이하	·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생활 시설(학원)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교육연구 시설(학원)	불가능	불가능	가능	기술계 학원만 가능	불가능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표시변경 제한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은 시·도·군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관하여는 지자체소관부서에 확인하여 처리

※ 참조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토지이음(<http://www.eum.go.kr>)

학원의 면적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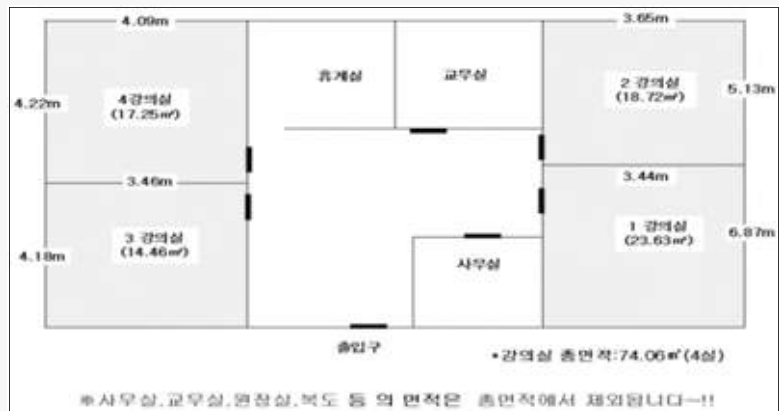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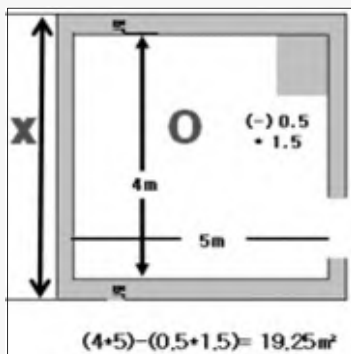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 시· 검 정, 보 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70㎡ 이상
	국 제 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조례 [별표4]와 같음
평생직업 교육학원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 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조례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 퓨 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 화 관 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 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포인트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임.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및 [별표 4]를 참조

강의실 면적측정

- 강의실이란 순수하게 강의하는 공간만을 의미하므로, 강의실 외의 공간(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강의실을 통한 통행은 불가)
-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m^2 이상 135m^2 이하로 합니다.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은 85m^2 이하)
- 교습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 칸막이당 최소 10m^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 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
- 강의실 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바닥면적 기준)



보습과정과 원어민을 채용하는 외국어 학원을 한 개의 학원으로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가요?

한 개의 학원에서 두 개의 교습과정을 교습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습, 외국어 교습을 위한 종합학원을 설립할 경우, 보습에 해당하는 강의실 70m^2 와 어학원에 해당하는 강의실 150m^2 를 각각 갖추어야 하므로 총 220m^2 의 강의실 면적이 필요합니다.

지하실의 학원설립(조례 제3조 및 제4조)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시설·설비·채광 등 조건)

단위시설 기준(조례 제4조)

단위시설이란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 면적단위로서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단위시설면적기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위시설 내부에는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위시설 기준	일시수용인원	기 타
강의실	30㎡이상 135㎡이하 (보통교과 종합반: 85㎡이하)	1㎡당 1인 이하	칸막이설치시 : 최소 1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
열람실	45㎡이상	1㎡당 0.8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실험·실습실	35㎡이상	1.5㎡당 1명 이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당 1명 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공통기준】 급수시설·화장실·채광시설·방음시설·소방시설 등은 ‘조례 제4조 별표’ 참조
※ 실을 구획하는 벽은 이동되거나 가변적일 수 없음

-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조)
- 학원의 강의실, 실험실습실, 사무실 등은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중 기계(공조냉동, 용접과정), 자동차, 전기, 항공, 농림, 안전관리, 디자인(패션디자인), 방송, 토목, 건축은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실험·실습·실기실(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4조)
- 이 때, 따로 설치하는 장소는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지역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 중장비학원이 실습장을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또는 경기도에 설치하는 경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의 설비와 교구기준 적용 시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례 별표4의 기준으로 봅니다. (조례 제5조)

소방시설 기준

학원·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营业을 말함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을 설립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1.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제출

2. 산정된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학원면적 190㎡이상 ~ 570㎡ 미만, 독서실 면적 300㎡이상 ~ 900㎡ 미만)으로서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제출

② 기타 : 교육지원청이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의뢰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점검

3. 산정된 수용인원 100명 미만(학원면적 190㎡미만, 독서실면적 300㎡미만)

- 교육지원청이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의뢰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

※ 소방점검 대상인 학원(570㎡), 독서실(900㎡)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조건에 따라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확인

※ 학원 명칭이나 설립·운영자 변경, 시설(실 증감시) 변경시, 완비증명서 재발급 필요

예시 1)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학원이 있는 경우 A학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3층	A학원 (198㎡)	B학원 (120㎡)	C학원 (175㎡)	☐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3층 영업장 면적만 합산(A+B+C) = 198㎡+120㎡+175㎡ = 493㎡ - 수용인원 300인(570㎡)미만으로 제외 ☐ 층별 방화구획이 안 된 경우 ○ 3층 전체 영업장 면적과 2층 학원 면적 합산 = 493㎡+(250㎡+243㎡) = 986㎡ - 수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2층	D학원 (250㎡)		E학원 (243㎡)	
1층	소매점	사무실	서점	

예시 2)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B학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3층	A학원 (230㎡)	B학원 (210㎡)		☐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3층 영업장 면적만 합산(A+B) = 230㎡+210㎡ = 440㎡ - 합산면적이 570㎡미만으로 대상에 해당 안됨. ☐ 층별 방화구획이 안 된 경우 ○ A학원 수용인원이 100인(190㎡) 이상이며,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있기 때문에 B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2층	C목욕탕			
1층	소매점	약국		

예시 3) 층별 입점업소에 따른 방화구역 대상여부

기존학원(130㎡)	신규학원(220㎡)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방화문(셔터) 설치	방화문(셔터)설치	방화문(셔터)설치

※ 위와 같이 신규학원(220㎡)의 경우 층별 영업장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학원 및 일반음식점과 면적합산이 되지 않으며, 신규학원의 영업장 면적이 570㎡ 미만으로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신규학원의 전용면적이 190㎡ 미만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됨.

※ 건축법의 용도변경 산정시의 바닥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개념이 아님에 유의

【참고】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각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 강 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경우 해당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학원·독서실의 시설을 운영하려 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변경신청 포함)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산정방법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접수(학원에서 직접 신청)

가. 신청 시기 : 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해당 지사)에 신청

나. 신청시 구비 서류

-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 1부

※ 점검 범위 :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로 한다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제4조)

다.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https://safety.kesco.or.kr>)

- [민원신청] - [전기안전점검]

◎ 예시)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학원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여부

3층	A학원 (198㎡)	B학원 (120㎡)	C학원 (175㎡)	□ 하나의 건축물내 학원이 여러개인 경우 ○ 층별 전체 학원 면적 합산 - 3층(198㎡+120㎡+175㎡)+2층(250㎡+243㎡) = 986㎡ - 수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 ※A학원: 설립·변경예정 학원 / B-E학원: 기존 학원
2층	D학원 (250㎡)		E학원 (243㎡)	
1층	소매점	사무실	서점	

참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관(허가관청)은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1항)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2항)
 1. 휴·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 영업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5 학원의 명칭

명칭사용 기준

- ☑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금지
-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입시)학원, ○○보습학원, ○○음악학원, ○○독서실
- ☑ 타고습과정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명칭표현은 주의필요 (학원법 제17조 1항 9호)
【예시】 보습논술학원 -> ○○연기학원 (X)
-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 불가

※ 검색방법 : <http://www.kipris.or.kr> ⇒ [상표] ⇒ 검색

-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069, 2016. 10. 19.)

구분	유치원		학원	
	외국어	한글식 표기	외국어	한글식표기
한자	幼稚園	유치원	學院	학원
영어	kindergarten(Am)	킨더가튼	educational institute	에듀케이션서널 인스티튜트
	preschool(Brit)	프리스쿨		
	nursery school	널서리스쿨		
	kids school	키즈스쿨		
독일어	kinderschule	킨더슐레	konservatorium	콘서바토리움
프랑스어	' ecole maternelle	에콜 마테르넬	institut	인스티튜
중국어	幼稚園	유치유안	学院	세이유안
일본어	ようちえん	요우치엔	がく-いん	가꾸잉

※ 유치원의 ‘외국어’ 및 ‘한글식 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음.

-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한글과 병기 하여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 한글로 풀어서 사용 ☞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록 가능, leaders보습학원 등록 불가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6 교습비등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학원법 제15조)

- 교습비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규칙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1.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등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교습비등의 개념(학원법 제2조 제6항)

-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의 범위(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 ☞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 재료비 : 학습자의 실습·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차량비 등록시 제출 서류(예시)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2. 교습비 등 변경등록내역 1부.
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 각1부.(학원설립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자 각 1부.)
5. 전세버스 계약인 경우: 전세버스 계약서(학원설립자와 계약)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1부.
6. 자가용자동차인 경우: 유상운송 허가증 1부.(관할 구청에서 발급)
7. 운전자명단 및 보조탑승자명단 1부.
8. 차량운행일지 또는 배차표 1부.
9. 1인당 차량비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인당 월간 이용 횟수 산출)
10. 차량이용자 명단 1부.(교습과목 등 명시)

교습비등 반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 > <시행령 개정 2020. 3. 31.>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①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제18조 제2항 제1호) ② 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제2호)	①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②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 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나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 의 일수)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18조제2항 제3호)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 외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독서실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후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 영업상 학원의 교습비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한 경우 학원비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서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 다만 원격학원 수강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면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미수강 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주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60)

❓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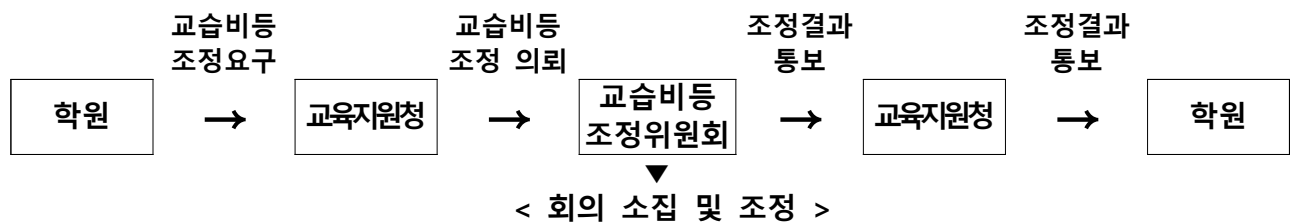
☞ 수강생 또는 보호자가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학원장에게 고지한 시점을 기산하여 반환함

(관련근거 : 민법 제111조)

✧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운영

-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정을 명할 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교습비등 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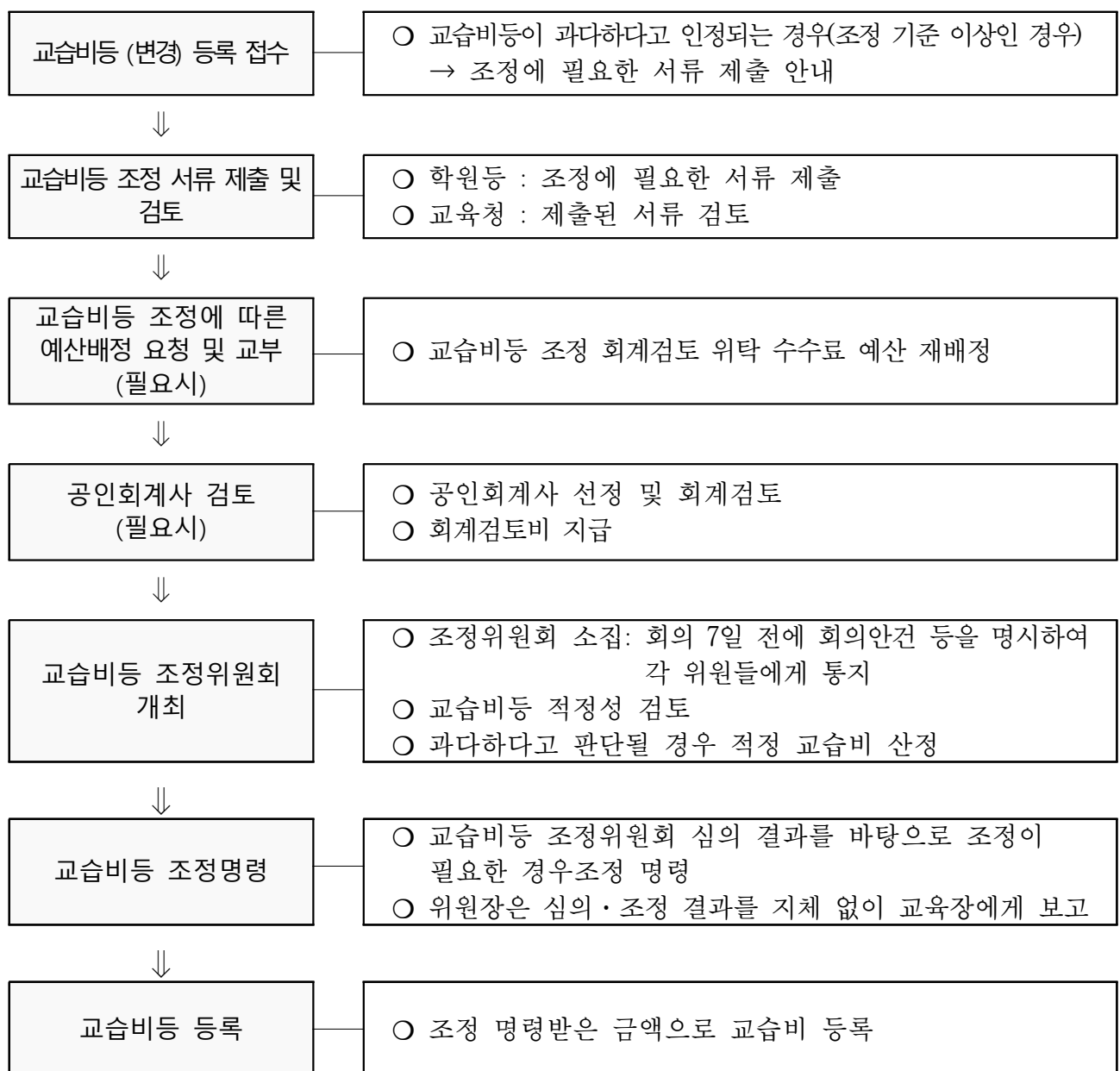


✧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구성(시행령 제17조, 교육규칙 제14조)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헬
-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함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 ②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 ③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② 교육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함

교습비등 개별 조정 절차



※ 교습비등 개별 조정 증빙자료 요구 목록(예시)

1. 학원 수익 분석을 위한 증빙자료

- ①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 ②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 ③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 ④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⑤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예시)
 - 사업장현황신고서(개인사업자만 해당)
 - 신고서(겸업사업자만 해당)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 세무조정계산서 등

2. 학원 원가 분석을 위한 증빙자료

- ① 과정별 원가명세서
- ② 과정별 강사 명단 및 직원 명단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강사 및 직원 연말정산 및 급여 서류)
- ⑤ 설립운영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 교습비등 개별조정 증빙자료 검토 사항(예시)

1. 학원 수익 분석 증빙자료 검토 사항

- 통보된 교습비와 징구된 자료의 교습비와 동일한지 여부
- 지나치게 낮은 수강률이 분석되는지 여부(소수정원운영 등)

2. 학원 원가 분석 증빙자료 검토 사항

- 원가 구성 항목이 적정한가 여부
- 등록된 강사 외 강사료 지급여부
- 강사료, 임차료 이외 경비가 지나치게 높은지 여부
- 본사의 공통경비 안분 금액이 큰 경우
- 지나치게 높은 원가 구성
- 고가의 강사료, 고가의 임차료, 고가의 기타경비 등

관련 규정

- 법 제15조 (교습비 등) / 제18조 (교습비의 반환 등)
- 시행령 제17조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 제17조의2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 / 제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
- 시행규칙 제15조 (교습비 등의 게시 등)
- 교육규칙 제8조 (교습비등 게시·표시) / 제9조 (교습비등 조정명령) / 제1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조정위원회 운영 등)

7 기타 유의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음악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동일 건물 내 사업자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 신규 등록은 2008.7.1 부터, 기존 운영 사업장은 2010.1.1 부터 적용
- ➡ 같은 건물 내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 소음원		아침, 저녁 (05~07,18~22)	주간 (07~18)	야간 (22~05)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기타항목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실외소음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조례 제8조)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입니다. 단,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 폐원절차 간소화(시행규칙 제8조)

- 학원 폐원 신고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 중 한 기관만 방문하여 폐원·폐업 신고를 함께 접수 처리 가능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590(2015.1.13.)호 참고]
- 학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삭제<2019.1.10.>
 - ※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신고를 할 수 없다.(법 제10조제4항)

☘ 면허세 납부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면허세를 체납하는 경우 학원 등록이 취소됩니다.

○ 면허세 개요

- 정기분 : 매년 1회 납부(대상: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 신고 납부분 : 면허 변경 시 납부
- 과 세 : 설립·운영자(교습자)의 변경, 면허의 종별구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
- 비과세 : 명칭·시설 변경 등

○ 납부시기

- 면허증서(학원등록증·교습소신고서)를 발급받기 전과 설립·운영자(교습자)의 변경이 있거나 ‘종’의 변경이 있을시
 - ☞ 위치변경으로 학원 연면적이 300㎡이하에서 500㎡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면허증서 발급받기 전에 54,000원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 설립·운영자 변경으로 공동 설립·운영자가(①A,B→A,C or ②A,B→A) 변경 되었다면 면허증서 발급받기 전에 기존 종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납부해야함

☘ 면허세 금액(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 [별표])

종별		건축물 연면적 기준	면허세
학원	제1종	1,000㎡ 이상	67,500원
	제2종	500㎡ 이상 1,000㎡ 미만	54,000원
	제3종	300㎡ 이상 500㎡ 미만	40,500원
	제4종	300㎡미만	27,000원
교습소		교습소	18,000원

☘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실비보험 포함·교육규칙 제2조 제3항)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시설	배상 범위	의료실비보험	배상금액 기준		유형 【학원·교습소 동일 적용】	시기
		인당	인당	사고 당		
학원	학원 및 교습소 내 · 외	3천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 설립 ·변경 등록의 경우	14일 이내
교습소				5억원 이상	휴원(소) 후 재개원(소)할 경우	7일 이내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가입처					일반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 단, 원격학원은 학원책임배상보험 제외대상임

※ 설립·운영자(교습자) 변경시 기 가입한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 변경(인계자→인수자)이 가능함(명의를 변경된 가입증서 사본 14일 이내 제출)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관청 : 세무서)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위반 시 처분사항 :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의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학원 포함(「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 집단급식소 신고 (식품위생법 제2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을 운영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학원의 게시 및 비치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게시(○)/ 비치(△)	보존기간	비 고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준영구	과태료 사항
2. 학원 강사 게시표	○		과태료 사항
3. 교습비등 및 그 반환기준	○		과태료 사항
4. 원칙	△	준영구	과태료 사항
5.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5년	과태료 사항
6.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5년	과태료 사항
7. 수강생 대장	△	3년	과태료 사항
8. 직원 명부	△	계속	과태료 사항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시
10.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		해당시

법 령 서 식

※ 법규상의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서식명	관련 법규 서식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4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5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6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7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8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9	학원강사 게시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10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11	수강생대장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12	직원명부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13	휴업/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1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1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16	위임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17	학원 원칙 및 독서실 원칙	교육규칙 별표1 및 별표2
18	열람시간 연장 승인신청서	교육규칙 별지 제1호
19	채용통보서 및 해임통보서	교육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20	교습비등 게시표	교육규칙 별지 제18호
2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교육규칙 별지 제19호

참 고 예 시 문

연번	서 식 명	비 고
1	학원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신청서	별지1
2	학원(교습소) 인계·인수 확인서	별지2
3	등록(신고)증명서 분실신고서	별지3
4	위임장	별지4
5	민원처리【연장·철회】신청서	별지5
6	재산무상사용승낙서	별지6
7	학원·교습소 재개원(소) 신청서	별지7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8,9
9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10
10	결격사유 조회 기안	별지11
11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의뢰 기안	별지12
12	소방점검 의뢰 기안	별지13
13	출장복명서	별지14
14	변경등록 검토의견서 예시	별지15
15	학원설립운영 등록 수리 알림 기안	별지16,17
16	처리기한 연장 알림 기안	별지18
17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 기안	별지19
18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재구성 기안	별지20
19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재구성 계획(안)	별지21
20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학부모 추천 요청 기안	별지22
21	학원 폐원 신고수리 알림 기안	별지23

※ 서식은 업무참고용이며 각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사용

[별지 1]

학원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도로명주소 (학원 전화번호:)		
설립·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별첨 작성 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지사항

- 교육장은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별첨」 교습비등 변경등록내역 1부(해당시) ○ 해당 과정별 교습시간표 ○ 기타경비 실비 입증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해당시)	수수료 없음

☐ 교습비

[illegible]

- 교과과목, 반별 인원 등 자료 첨부
- 교육지원청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 참고
- 월 총교습시간 산출 : 4주 기준 선택 가능(담당자 문의)
-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 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 금액 이상으로 등록신청 한 경우(★기준금액 :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나. 교습비 조정기준 이하 등록 시에도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적 개별조정
- 변경등록 업무 불성실 인정 시 : 별도 「행정처분」 실시
 -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미보고·허위보고(제출)의 경우 : 10~35점 벌점 부과(1차 위반)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88 서울특별시교육청

[별지 2]

학원(교습소) 인계·인수 확인서

인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확인사항 (※체크박스 √ 표기)	☐ 시설평면도 열람 여부 ☐ 시설 무단 변경 여부	
		☐ 기존 수강생 인수(수강료 및 환불시 조치 등)	
☐ 행정처분 여부(교육지원청 확인) ☐ 채용 강사 확인 여부			

인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확인사항 (※체크박스 √ 표기)	☐ 시설평면도 열람 여부 ☐ 시설 무단 변경 여부	
		☐ 기존 수강생 인수(수강료 및 환불시 조치 등)	
☐ 행정처분 여부(교육지원청 확인) ☐ 채용 강사 확인 여부			

상기 인계자는 상기 인수자에게 학원(교습소)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유의사항

인계·인수 전 기존 수강생의 수강료 환불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인수자가 승계(환불)하고, 행정처분이 있을 시 처분 내역도 승계한다는 사실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

등록(신고)증명서 분실신고서

명칭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기재		등록(신고)번호
설립·운영자 (교습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위치	주소(도로명 주소)		
분실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등록(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입니다. 분실 신고 후 등록(신고)증명서가 발견되면 자진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지 4]

위 임 장

민원 내용		
위임받는 사람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위임하는 사람 (설립자)	학원(교습소)명	등록(신고)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위 민원 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 법인설립자
법인인감증명서 1부, 수임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첨부 시 사용인감도장)
- 개인설립자
- 수임자(신청자)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자(설립자) 신분증 사본 1부
※ 설립/설립자변경/폐·휴원(소) 민원신청 시, 위임자(설립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5]

민원처리【연장·철회】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민원 내용			
신청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사유			
※ 연장 시 작성	당초처리기간		
	예정처리기간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처리 【연장 · 철회】 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지 6]

재산무상사용승낙서

승낙자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승낙내역	주소	(도로명주소)	재 산 종별	
	사용면적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목적	학원(독서실) · 교습소 사용		
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위 주소지를 학원(교습소)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 승낙자(소유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공지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체 제출 가능(보증금과 차임 등 “무상” 표기)

[별지 7]

학원·교습소 재개원(소) 신청서

- 휴원(소) 기간 만료 전 재개원(소) 경우에 신청
- 휴원(소) 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소) 시에는 신청 불필요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학원명 (교습소명)		등록(신고)번호	
위치	주소(도로명주소)		
설립자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휴원(소) 기간		재개원(소) 연월일	
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개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원설립 · 운영자 • 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별지 8]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1. 목적 : 학원 수강, 상담, 학습정보 제공, 공지사항 및 소식지 전달			
2. 수집 항목			
필수정보	다음 항목은 학원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학원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또는 휴대전화)		학교 및 학년
	(수강과목)		
선택정보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성 별
	(관심과목)		학부형 연락처
	다음 항목은 학원생의 상담, 학습정보의 제공, 공지사항 전달, 소식지 전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 목적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학원 퇴원 후 6개월(1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합니다. (즉시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선택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할 경우 학원 수강중이라도 해당 정보는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원에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학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학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 /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20 년 월 일

이름 : (인)

학원(교습소) 귀중

[별지 9]

* 홍보·마케팅 등 교습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양식 참고

학원(교습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_____학원(교습소)은 학원 홍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학원 성과 홍보

- 학원 홈페이지 : www.△△△.co.kr
- 현수막 부착 장소 : 학원 차량, 학원 벽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출신학교, 입학예정 (대)학교

*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작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 .)로부터 1년

*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작성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셔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학원(교습소)에서 제공하는 _____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학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학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 /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_____학원(교습소) 귀중

[별지 10]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 1.
-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 위탁받을 재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¹⁾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을 ○○시 ○○구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11]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조회 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조회 의뢰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읍장

(경유)

제 목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화를 의뢰하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 .00.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조회 의뢰 대상자 ◎

시 설 명	설립운영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비고
○○학원			경기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후 전력조회 요청함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2]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조회 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조회 의뢰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서울○○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학원 설립운영자 범죄(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의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하여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자에 대한 범죄(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의뢰하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 .00.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원명 (학원위치)	비고
1	○○○	000000-0000000	○○학원 (○○구 ○○로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후 전력조회 요청함

붙임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3]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서울특별시 ○○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점검 의뢰(○○학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서 관할 지역 내 위치한 다음 학원시설에 대하여 소방 안전검사를 의뢰하니, 민원 처리기한을 감안하시어 20 . 00. 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검사 대상 시설 현황 ◎

시설명	설립자	전화번호	소 재 지	건축물 면적(㎡)			비고
				연면적	사용면적	건축물 대장면적	
○○학원	○○○	02-0000-0000	○○구 ○○로 ○○, (○○동)	2,060.2	176.60	311.08	위 치 변 경

- 붙임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시설평면도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4]

출장복명서

1. 관련 :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민원접수-0000(20 .00.00.)]
2. 현지조사 실시일 : 20 .00.00.()
3. 학원 설립예정지 : ○○○구 ○○○로 ○○(○○동)
4. 현지조사 및 제반서류 확인 결과

시 설 현 황			설 비 현 황			교 육 환 경	건 축 물 용 도	시설점검	교 습 과 정
구분	기준 (㎡)	시설 (㎡)	구분	기준	수량				
실습실	60이상	140.12	악기	5이상	00대	설립 예정 건물 내 교육환경 유해업소 해당없음	근린생활 시설	소방 점검결과 적정 :○○소방서 예방과-0000 (20 .00.00.)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기타실	-	2.43							
계	60이상	142.55							
화장실	남,여각1실	남,여각1실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설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결격사유 조회 결과			1년 내 직권폐원 또는 교습정지 중 여부	범죄 조회			
		등록기준지	조회 일자	조회 결과		관련공문	조회 결과		
○○○	000000 -*****	○○도 ○○○시 ○○○구 ○○○	20 . .	이상없음	해당없음	서울○○경찰서 형사과-000000 (20 .00.00.)	해당 없음		

5. 조사자의견

- 관내 동일명칭의 학원이 없고 시설 및 설비가 제 규정에 적합함
- 학원 예정지 건축물 용도가 적합함
-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 냉·난방시설이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정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수리하고자 함

6. 등록수리 내역

등록 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 원 위 치	면 적(㎡)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실습실 (A)	기타실 (B)	계 (A+B)	
0000	○○학원	○○○	000000- *****	○○○구 ○○○로 ○○(○○동)	140.12	2.43	142.55	

붙임 시설평면도 1부

작성일자 : 20 . . .

조사자 : 직
직성명 (인)
성명 (인)

[별지 15]

검 토 의 견 서

1. 건 명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고 건
2. 위 치 : 서울시 ○○구 ○○로 ○○, ○층(○○동)
3. 설립운영자 : ○○○(000000-*****), ○○○(000000-*****)
4. 검토내용
- 가. 결격사유 조회 및 직권폐원여부 : 이상없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신 원 조 회 결 과		직권폐원여부
		조회회신기관	이상유무	
○○○ (000000-*****)	○○도 ○○시 ○○면 ○○리 ○○	○○도 ○○시 ○○면장 ○○면-0000(2015.00.00.)	해당없음	직권폐원 사실없음
○○○ (000000-*****)	○○도 ○○시 ○○면 ○○리 ○○	○○도 ○○시 ○○면장 ○○면-0000(2015.00.00.)	해당없음	직권폐원 사실없음

- 나. 범죄경력조회 : 이상없음[서울○○경찰서 형사과-0000(2015.00.00)]
- 다. 제출서류 및 부동산 임대서류 : 이상없음
5. 검토의견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수리하고자 함.
6. 변경수리내역

등록 번호	학원명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비고
		설 립 운영자	주민등록 번 호	설 립 운영자	주민등록 번 호		
0000	○○학원	○○○	000000 _*****	○○○	000000 _*****	서울시 ○○구 ○○로 ○○, (○○동)	
		○○○	000000 _*****	○○○	000000 _*****		

20 . 00. 00.

직 성명 (인)

[별지 16]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학원 설립운영자
(경유)

제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 수리 알림(○○학원)

- 1. 관련 : 민원접수-0000(20 .00.00.)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
- 2. 귀하께서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계법규 및 제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한 학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등록 수리 내용

등록 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 원 위 치	면 적(㎡)			비고
		성 명	법인등록 번호		강의실 (A)	기타실 (B)	계 (A+B)	
0000	○○학원	○○○	000000- *****	○○구 ○○로 ○○(○○동)	90.61	10.58	101.19	

- 4.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의 면허세 신고납부를 이용하거나 면허세 고지서에 학원설립·운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내 은행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5. 아울러, 강사 채용 후 14일 이내에 채용등록하시고, 학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후 그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안) 1부.
2. 평면도 1부.
3. 학원 원칙(안) 1부.
4. 학원운영준수사항(평생직업교육학원).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협조자
시행
우
전화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별지 17]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 수리 알림(○○학원)

-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귀 청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다음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사항을 지방세법 제38조의2에 의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록 수리내역】

등록 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 원 위 치	면 적(㎡)			비고
		성 명	법인등록 번호		강의실 (A)	기타실 (B)	계 (A+B)	
0000	○○학원	○○○	0000000- 00000000	○○구 ○○로○○(○○동)	90.61	10.58	101.19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8]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처리기한 연장 알림

1. 관련: 민원접수-0000(20 .00.00) 『학원변경통보서(○○학원)』
2. 귀하께서 제출한 ○○학원의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대하여 20 .00.00. 현장실사 후 소방안전 점검 조회결과, 감지기 미설치 및 완강기 고정불량으로 부적합 통보[○○○ 소방서 예방과-0000(20 .00.00)]를 받았기에 보완 요청하니, 빠른 시일 내에 소방안전시설을 보완하시기 바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처리기간 연장사유: 소방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 나. 당초처리기한: 20 .00.00.
 - 다. 연장처리기한: 20 .00.00.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9]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학원 운영등록신청자

(경유)

제목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

1. 관련

가. 민원접수-0000(20 .00.00)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

나. ○○면-000(20 .00.00.) 결격사유조회 회보(○**)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학원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반려합니다.

붙임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20]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재구성

1. 관련근거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 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 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재구성 계획(안)」(평생교육건강과-0000(20 .00.00.))
2.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2명의 임기가 20 .00.00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가. 재구성 현황

구분	임기만료 위원		신규 위촉 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임기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초	○○○	○○초	○○○	20 .00.00 ~ 20 .00.00(2년)
	○○초	○○○	○○초	○○○	20 .00.00 ~ 20 .00.00(2년)

나. 위촉장 수여 : 차기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일.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21]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 재구성 계획(안)

I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재구성 배경

- 20○○ . ○. ○.자 ○○○ 등 2명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마련 및 합리적인 조정으로 교습비등의 안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힘쓰고자 함.

II 관련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III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기준 및 운영

- 1. 구성 기준
 - 가. 정원 : 7명 ~ 11명
 - 나. 위원 기준(시행령 제17조)

순 번	위 원 구 분	구 성 기 준		비 고
		인 원	구성요건	
1	구청 소비자물가 담당공무원 또는 관할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1명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당연직	
3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	2명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경제학,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원 등	1명 이상		

- 2. 위원 임기
 - 위원임기 : 2년(두 차례만 연임가능)

IV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재구성(안)

1. 구성내역

가. 임기 : 20 .00.00. ~ 20 .00.00 (2년)

나. 인원 : 2명

순번	위 원 구 분	인 원	비 고 (임기만료 위원)
1	학부모	2명	○○○,○○○
합 계		2명	

2.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가. 위촉 방법

순번	위 원 구 분	인원	위 촉 방 법	비고
1	학부모	2명	학교에 추천 요청	

나. 추진 계획

추진 일정	추진 계획	비 고
20 .00.00	추천 요청	
20 .00.00	위촉 대상자 결정	

[별지 22]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학부모 추천 요청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 기준 설정과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의 교습비 조정을 위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귀 교의 학부모 중 적임자의 추천을 의뢰하니 다음 서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추천인원 : 학부모 1명
- 2. 추천서식

학교명	학부모 성명	연락처	학생명	학년반	비 고

- 3. 추천기한 : 20 .00.00() 14:00.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23]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학원폐원 신고 수리 알림

1. 관련

- 가. 민원서류 제○○호 (20 . . .)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귀하께서 신청한 ○○학원 폐원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폐원 후 학원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위반하고 무등록 학원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형사 고발 조치(징역형 또는 벌금형)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학원폐원 신고 수리 내용

등록번호	명 칭	설립자	위 치	폐원일	폐원사유	비 고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교습소

1. 교습소 설립	116
2. 교습소 운영	122
※ 법령 서식	125
※ 참고 예시문	126

교습소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1 교습소 설립

✎ 교습소의 정의(학원법 제2조 제2항)

-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선풍공예(슈아트)를 가르치고 싶다는 민원이 있어 학원으로 등록토록 하였으나, 가르치고자 하는 인원이 4~5명으로 소수여서 교습소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교과목이 아닌 과목을 9명 이하에게 가르치고자 할 때 교습소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하고, 과외교습이란 동법 제2조제4호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교습소 신고 대상이 아님.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교 입학시험 준비생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질의한 내용의 성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9인 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 또는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할 것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819, 2009.10.21)

✎ 교습소의 시설·학습자 수 등(시행령 제16조)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여야 합니다.
- 강의실(실습실)은 1실만 인정(음악 교습의 경우 제외)



● 강의실 18㎡의 일시수용인원은 얼마인가요?



1㎡당 0.3인 이하이므로, $18\text{㎡} \times 0.3\text{인} = 5.4\text{인}$ 이하이므로 5명임. (소수점은 절사)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제16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 제14조

✎ 교습자의 자격(시행령 제15조)

-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준용합니다.
-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함.

[참고] 학원 강사 자격기준(시행령 제12조제2항)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졸학력 및 전국대회 수상경력으로 교습소 운영 가능한지?

☞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전국대회 수상 경력으로 86년~92년까지 교습소를 구미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 받아 운영해 오다가 폐소하였습니다. 폐소 시 인가증을 반납하였으며, 현재 다시 서예교습소를 개소하고자 구미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전문대, 대졸 학력이 있어야 교습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 6번, 7번과는 무관한지요? 지방교육청마다 법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교습소 설립자격은 학원 강사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 중 제6호의 기준은 종전('96.1.1)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96.1.1이전에 기 고졸자로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될 것이며, '96.1.1이후인 최근에 학원 등에서 강사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 강사로 간주되며, 현행 규정상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후원)하는 기능대회이므로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부 민원처리사례 2006. 9. 8)

❓ 사립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유치원과는 별개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 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는 별개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2018. 6. 21)

❓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가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교습소 설립 운영은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4. 11. 20)

❓ 외국인으로 F-2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은 외국인입니다. 이 경우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 F-2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교습소 설립은 가능하다고 보며, 학원법령에서 정하는 설립자격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7. 18)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교습소의 명칭(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음악교습소, ○○중국어교습소, ○○수학교습소

※ ‘국어’와 ‘논술’은 별개의 과목으로 혼용사용불가

(예시) ○○국어논술교습소(X), ○○국어교습소(O), ○○논술교습소(O)

- 관할지역내 동일명칭 사용금지

※ 기타 명칭 표기 유의사항은 학원의 명칭 표기 방법을 참고(72p)

✎ 교습소의 과목(학원법 제14조 제7항)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 논술,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교과목은 각각 하나의 교습과목에 해당하며,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의 경우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회화와 조소 등을 하나의 교습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교습소에서 교습하는 교과목은 학교교과목으로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❶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동시에 교습하려면 어떤 교습소를 설립해야 하나요?

☞ 음악교습소에서는 악기를 교습할 수 있으므로, 음악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시면 됩니다.

✎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교육환경 등의 정화 등

-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p.60)
- 교습소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p.56)

【참고】 소방시설 점검 시 확인 사항

각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 강 기	교습소가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교습소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습소 신고 구비서류

민원사항	구비 서류
신규 설립 (8일)	1. 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확인) 6. 교습소 시설평면도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8.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교습자 변경 (8일)	[공통] 1. 인계자 및 인수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교습자 변경신고서 3. 인수·인계 확인서 [인계자] 1. 기존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인수자] 1.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습소 시설평면도 3.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확인) 4.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6.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위치 변경 (8일)	1. 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교습소 변경신고서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확인) 5. 시설평면도 6. 기존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7.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시설 변경 (8일)	1. 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교습소 변경신고서 3. 시설평면도 4. 기존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5.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신고증명서 기재사항 외 변경의 경우 생략)

민원사항	구비 서류
기타 변경 (명칭/교습 과정 등) (8일)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3. 기존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제출) 4.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5. 교습과정 변경의 경우 - 교습비 변경 신청서(내역서) ※ 신고증명서 기재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3, 4번 생략
휴소/ 폐소(1일)	1.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 휴업·폐업 신고 병행 시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재개소 (1일)	1. 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교습소 재개소 신청서 - 휴소 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소 시에는 신청 불필요
임시교습자 채용신청 (7일)	1.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 2.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설립·변경 신고 수리여부 결정 및 신고증명서 교부

- ① 면허세 납부 확인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하여야 함)
- ② 교습소 설립·운영자 유의사항 안내
 - 신고 후 제출서류 안내
 - * 교습비 등 (변경) 등록서
 - * 안전관리대책수립 관계 서류 제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 증서 사본 제출)

※ 교육감은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학원법 제14조제2항) <신설 2018.12.18.>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2 교습소 운영

✎ 교습소 임시교습자 채용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2항)
 - 제출 서류: 채용승인 신청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규칙 제7조제3항)
 - 교습(채용) 기간: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교육규칙 제7조제5항)
 - 신고 기한: 임시교습자 교습 개시예정일부터 15일 전후(교육규칙 제7조제3항)
- 교육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육규칙 제7조제5항)
 -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 기간 만료 후 자동 해임

✎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시행령 제15조 제3항)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3항)
 - 제출 서류: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해임)통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신고 기한: 채용(해임) 15일 이내
- 관할 교육장은 ‘교습소 보조요원 관리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조요원이 교습행위 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벌점을 부과합니다. (1차 30점, 2차 60점, 3차 폐지)

✎ 보조요원 채용 사례

- ✓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 학습자 등·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습비등(학원법 제15조)

-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합니다.
- 기타경비의 범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교습비등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준수사항
 -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 교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교부)하고 보관하여야 함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게시표를 학원 내부, 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 기타 교습비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p.73~78(교습비등) 참조

교습소 변경 신고(학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 교습소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제9항)
 - ※ 교습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법 제14조제13항)

※ 휴소 및 재개소 유의사항

- ✓ 교습소의 휴소 기간이 만료되기 전 교습자에게 휴소 기간의 연장 또는 재개소 여부를 확인
- ✓ 재개소 교습소의 경우 보험 등의 가입 및 교습과정 전반, 교습비등 등 교습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재신고(통보)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갖추어 신고(통보)토록 안내
- ✓ 교습소의 휴소 기간 동안 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소한 교습소의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휴소 기간 중 점검

교습소 폐소절차 간소화(학원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

- 교습자가 폐소 신고 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한 기관만 방문하여 폐소·폐업 신고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590 (2015.1.13.)호 참고]
-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삭제<2019.1.10.>

교습소의 게시 및 비치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게시(○)/ 비치(△)	보존기간	비 고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준영구	과태료 사항
2. 교습비등 게시	○		과태료 사항
3. 교습비등 반환기준	○		과태료 사항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5년	과태료 사항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5년	과태료 사항
6. 수강생 대장	△	3년	과태료 사항
7. 직원 명부	△	계속	과태료 사항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시
9.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		해당시

법령서식

※ 법규상의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서식명	관련 법규 서식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4	교습소변경신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5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7	수강생 대장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8	직원 명부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9	교습비등 게시표	교육규칙 별지 제18호
10	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육규칙 별지 제19호
11	휴업/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12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	교육규칙 별지 제5호
13	위임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1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1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참 고 예 시 문

연번	서 식 명	비 고
1	교습자 변경신고서	별지1
2	현지조사 출장보고 예시	별지2, 3
3	시설 설비 조서 예시	별지4
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수리 기안 예시	별지5
5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토서 예시	별지6
6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알림 예시	별지7,8
6	교습소 휴소 신고 수리 기안 예시	별지9
7	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기안 예시	별지10
8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예시	별지11
9	교습소 재개소 신고수리 예시	별지12
10	임시교습자 신고 수리 알림 기안 예시	별지13
11	임시교습자 해임통보서	별지14
12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별지15
13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별지16
14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관리대장	별지17

※ 서식은 업무참고용이며 각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사용

[별지 1]

교습자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사진 (3cm x 4cm)
	주소(도로명주소)				
위치					
인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인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학력	직업		주요경력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자 변경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 인계·인수 확인서 등 인계자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습자 자격 증명 서류 1부
- 교습자 신분증 1부
- 교습장으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사진 2매(3×4cm)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2]

(가칭)○○수학교습소 현지조사 출장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 설립 신청이 접수 (민원서류 제○○호(20 .○.○.))되어 현지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합니다.

1. 출장목적 : 교습소 설립·운영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2. 출장일자 : 20 .○.○.
3. 출 장 자 : 주무관 ○○○, 주무관 ○○○
4. 출 장 지
 - 가. 학원명 : (가칭) ○○수학교습소
 - 나. 설립자 : 홍길동
 -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 ○층
5. 조사내용
 - 가. 교육환경의 정화 등
(학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적합
 - 나. 시설기준(학원법 제8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 : 적합
 - 다.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 적합[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라. 시설 및 설비 : 적합(붙임 2 참조)
6. 출장자 의견 : 민원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관련 법규에 적합함

- 붙임
1. 현지조사서 1부.
 2. 시설 및 설비조서 1부.
 3. 평면도 1부. 끝.

[별지 4]

시설 및 설비조서

○○수학교습소

1. 시설

시설명	기준	현 보유		적합여부
		실수	면적(㎡)	
강의실	없음			
기타				
합계	없음			

2. 설비

구분	기준	현보유 및 상태
화장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1】	적합
급수	상수도사용의 경우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규정	정수기 ○대
채광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2】	적합
조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2】	적합
환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2】	적합
방음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적합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소화기 ○대, 유도등 ○개, 직통계단 ○개소

3. 기타

구분	기준	현황	적합여부	비고
칠판	조	조		적합
책상 및 의자	조	조		

[별지 5]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수리

1. 관련: 민원서류 제○○호 (20 .○.○.)
2. 민원인 “홍길동” 이(가)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 등이 관계법령에 적법(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 가. 신고자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612345-1*****)
- 나. 신고자주소 :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
- 다. 신고 수리 사항
 - 1) 목 적 : ○○교육
 - 2) 명 칭 : ○○수학교습소
 - 3) 위 치 :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 ○층
 - 4) 교습과목 : ○○
 - 5) 규 모 : ○○㎡(강의실-○○㎡)

- 붙임
1. 교습소설립·운영 신고검토서 1부.
 2.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1부.
 3. 현지조사서, 시설 및 설비조서, 평면도 각 1부.
 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6]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토서

1. 신청개요

교습소명	신고자	신 고 위 치	신 청 내 용	비 고
○○수학교습소	홍길동	○○시 ○○로 ○○번길 ○○ ○층	교습소설립신고	

2. 검토내역

번호	검 토 사 항	검토 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1	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적 정	○		민원서류검토조서 참조
2	교습자 자격 - 1년 이내 불법운영으로 인하여 동일한 교습과목을 폐지처분 받은 자가 아닌가?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인가? 학원 강사자격에 준하는가?	이상없음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이상없음 직권폐소 : 무 강사자격: 충족 (4년대졸)
3	유해업소 - 학원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상없음	○		출장결과보고서 참조
4	건축물용도 - 건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적 합	○		건축물대장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5	직통계단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가?”	적합	○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6	이중등록 - 교습소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교습소가 등록되어 무단폐소한 곳은 아닌가?	이상없음	○		교습소신고(변경) 대장확인
7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적합한가?	적 합	○		출장결과보고서 참조
8	인원 -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은 적정한가?	적 정	○		○명
9	명칭 - 교습소와 명칭이 동일한 교습소는 없는가?	이상없음	○		교습소신고(변경) 대장확인

3. 검토결과 : 적합

20 . . .

검토자 직 :

성명 :

[별지 7]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교습소 교습자

(경유)

제목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알림(○○교습소)

1. 관련 : 민원접수-0000(20 .00.00.)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습소)』
2. 귀하께서 제출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계법규 및 제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한 교습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 수리 내용

등록 번호	학원명	교습자		교습소 위치	면 적(㎡)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강의실 (A)	기타실 (B)	계 (A+B)	
0000	○○교습소	○○○	000000- *****	○○구 ○○로 ○○(○○동)	20.5	10.21	30.71	

4.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의 면허세 신고납부를 이용하거나 면허세 고지서에 교습소설립·운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내 은행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교습소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후 그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8]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알림(○○교습소)

-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귀 청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교습소 설립·운영신고 수리 내역을 지방세법 제38조의2에 의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신고 수리내역】

등록 번호	학원명	교습자		교습소 위치	면 적(㎡)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강의실 (A)	기타실 (B)	계 (A+B)	
0000	○○교습소	○○○	000000- 00000000	○○구 ○○로○○(○○동)	20.5	10.21	30.71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9]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습소 휴소 신고수리(○○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서류 제○○호(20 .○.○.)
2. ○○수학교습소의 휴소 신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주 소	교 습 소 위 치	휴소 기간	휴소사유
○○수학 교습소 (제○○○호)	홍길동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층	20 .○.○. ~ 20 .○○.	수강생 모집곤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0]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습소 교습자 변경 신고 수리

1. 관련 : 민원서류 제○○호(20 .○.○.)
2. ○○영어교습소에서 신청한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에 대해 서류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 변경신고 수리내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교 습 자	홍길동(600101-1XXXXXX)	김영희(700101-2XXXXXX)

붙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1]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 휴소 기간 만료 전 재개원(소) 경우에 신청
- 휴소 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소) 시에는 신청 불필요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호
위치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 ○층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홍길동	6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 ○○ 000-000 (전화번호:031-000-0000, 010-1234-5678)	
휴소기간	20 .○.○. ~ 20 .○.○.		
재개소연월일	2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신고하였던 위 교습소의 재개소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울○○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교습소안전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재개소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 가입 후 14일 이내 제출)	수수료 없음

[별지 12]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습소 재개소 신고수리(○○수학교습소)

- 1. 관련 : 민원서류 제○○호(20 .○.○.)
- 2. ○○수학교습소 재개소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주 소	교 습 소 위 치	재개소년월일
○○수학 교습소 (제○○○호)	홍길동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층	20 .○.○.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3]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서울특별시 ○○시 ○○로 ○○번길 ○○)

(경유)

제목 임시교습자 신고 수리알림 (○○수학교습소)

1. 관련 : 민원서류 제○○호(20 .○.○.)
2. 귀하가 신청한 ○○수학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교습자 신고가 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습소명 (신고번호)	교습자	임시교습자 신고현황			신고사유
		성 명	담당과목	교습기간	
○○수학교습소 (제○○○호)	홍길동	김영희	수학	20 .○.○.~20 .○.○.	출산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4]

임시교습자 해임통보서

교 습 소 명		신 고 번 호	
위 치		전 화 번 호	
교 습 자		교 습 과 목	
해 임 통 보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해 임 일 자	년 월 일		
해 임 사 유			
임시교습자 해임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 지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15]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 치		(전화번호:)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조 요원 통보 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전공)	소지자격증	주요경력 (학교, 학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 련 범죄전력 조회결과
	채용일자	주 소				
	보조요원 채용 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신청인(교습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〇〇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3.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1부 ※ 이상 구비서류 중 개인정보 해당 서류 건은 확인 후 반환함

[별지 16]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 치		(전화번호:)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번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해임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한 보조요원을 해임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〇〇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illegible]

IV

개인과외교습자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148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151
※ 법령 서식 및 참고 예시문	154

IV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학원법 제2조)

-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 → 무상교습은 개인과외에서 제외됨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함.
-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학원법 제2조 제4호)
 1.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 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학원법 시행령 제3조)
 - 가.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4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학력 제한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자 중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NEIS 결격자 목록 확인)
- 외국인의 개인과외교습 가능 비자: 예술홍행(E-6),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외교습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 비자별 세부 자격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확인

- ✎ ① 외국인이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체류자격이 F-2(거주), F-4(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지?
 - ☞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가 직접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F-2(거주), F-4(재외동포)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 법령에서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2006.01.23.)
- ✎ ②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개인과외교습자 투자가 가능한 지 여부?
 - ☞ 외국인 투자 대상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이 목적이므로 교습을 위한 투자는 제외됨 (D-8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님)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 및 신고(학원법 제2조, 14조의2)

- 교습 장소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질의응답례 p.369)
 -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으로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확인)
 - ② 학습자 주거지
- 신고 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교습 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개인과외교습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중지통보를 할 수 없다.(법 제14조의2)



●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의 학습자를 함께 교습 가능 여부

-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하는 자'로 이때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학습자는 해당 주거지의 학습만을 의미함. 만일 해당 주거지의 학습자 이외에 다른 학습자에 대한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학원 형태의 운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그 주거지의 학습자만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함.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 12. 교육부)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학원법 제14조의2)

-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법 제14조의2제11항)
 -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 제777조 적용)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시행령 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 신고 : 교습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학력 · 전공·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시행령 제16조의2)
-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학원법 제15조)

-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합니다.
 - 교습비등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교습비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p.73~78(교습비등) 참조

🍃 기타 유의사항 (학원법 제14조의2)

-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교습장소가 학습자 주거지인 경우 학부모(학습자)가 요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의2제⑤항)
- 교습장소 내부에 교습비등 게시표와 반환기준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의2제⑩항)
- 광고시 등록(신고)번호, 교습과정(과목), 교습비등 표기(시행령 제16조의3)
-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시 유의해야 합니다.

※충간 소음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제20조(충간소음의 방지),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1. 30.>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

1. 표지 모형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개 인 과 외 교 습 자
교습과목 :

2. 표지 작성 요령

-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 마.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24:13으로 한다.

3. 표지 부착 위치

- 가. 표지는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 개인과외 교습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표지가 떨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구비서류

※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4 및 「민원 서류 간소화 추진 결과 안내」[총무과-195032(21. 12. 22.)]

민원사항	구비 서류
신규 신고 (5일)	1. 개인과외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 신분증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불가할 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3.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 (인터넷 및 동사무소 발급 가능)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자격증 원본은 지참) 5. 개인교습자의 증명사진 2매(3×4cm) 6.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필요 시)
변경 신고 (5일)	1. 개인과외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변경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 개인과외 교습자 학력·전공·자격·경력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교습과목, 교습비등 : 첨부서류 없음 4. 개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5. 구 신고증명서 반납(분실시 사유서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재발급 (1일)	1. 개인과외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3. 구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 4. 개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철회 (1일)	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철회 통보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법령서식 및 참고예시문

※ 법규상의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서식명	관련 법규 서식	비고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 서식	
4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 서식	
5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철회 통보서		별지1
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 알림 기안 예시		별지2
7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수리 기안 예시		별지3
8	개인과외교습자 철회 통보 수리 기안 예시		별지4
9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기안 예시		별지5

※ 별지 서식은 업무참고용이며 각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사용

[별지 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철회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번호	교습과목	
	주소(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집전화)	
수강생 현황		현원	특이사항
교습 철회	연월일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수강료 환불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철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신분증

[별지 2]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 (서울특별시 ○○구 ○○로 ○길)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 알림

1. 관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접수번호 제○○호, 20 .○.○.)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불임의 교부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자율과 창의로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함으로써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번 게시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3]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 (서울특별시 ○○구 ○○로 ○길)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수리

1. 관련: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접수번호 제○○호, 20 .○.○.)
2. 귀하께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 변경 건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니,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4]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 (서울특별시 ○○구 ○○로 ○길)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철회 통보 수리

1. 관련: 개인과외교습자 철회 통보서(접수번호 제○○호, 20 .○.○.)
2. 귀하께서 통보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철회 건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철회 통보를 수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5]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 귀하 (서울특별시 ○○구 ○○로 ○길)

(경유)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1. 관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접수번호 제○○호, 20 .○.○.)
2. 귀하가 20○○년 ○월 ○일 신청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명서 재교부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증명서를 재교부하니, 신고증명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지도점검

1. 지도·점검(실태조사) 중점사항	166
2. 학원 불법운영 사례	200
3. 행정처분·과태료·벌칙	203
4.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233
5.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전수점검	234
6. 참고 규정	236
※ 법령 서식	252
※ 참고 예시문	253

학원 지도·감독 업무 처리 절차

▶ 정기점검

단계	업무 내용
계획 수립	● 점검주기, 점검대상, 점검방법 등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는 자체 연간계획 수립 ● 학원 운영 관련 기본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둠
↓	
대상 선정	● 점검목적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추출 ● 점검대상 시설 확정 및 목록 작성 -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	
사전 준비	● 정기점검 실시 사전안내(홈페이지, 우편·문자 등) ● 현장 확인을 위한 최근 시설·교습비·강사 등록서류, 시설평면도 등 준비 ● 이전 행정처분 내용, 민원 발생현황 등 파악
↓	
현장 조사	● 공무원증, 학원 지도·감독 및 실태 조사증을 제시하고 소속, 직·성명,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 통보 - 점검 거부 시 강제 점검 진행은 어려우며, 거부에 대한 제재 안내(근거 법령 및 조항, 벌점 등) ● 수입·지출 장부, 신용카드 전표, 직원·수강생 명부 등 점검자료 요청 ● 각종 게시 사항, 교습비 징수내역, 교습 현장 등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위반 사항 및 관련 법령, 처분 내역, 시정 사항 등 상세설명 및 학원장 확인서 작성(필요시 증빙자료 복사 요청)
↓	
결과 처리	● 출장 복명,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위반내역에 대한 벌점통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진행 및 처분내역 나이스 입력 ● 시정요구 처리결과 징구 및 이행 여부 확인

🔍 특별점검

단계	업무 내용
점검 기획	● 사회적 이슈, 사교육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특별점검 주제 설정 및 점검 기획 ●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지, 홍보지 등 모니터링 실시 ● 점검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계획 수립	● 점검대상 시설 확정 및 목록 작성 ※ 이전 지도·점검 이력 확인 및 중복 여부 검토 ● 특별점검 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특별점검 실시 사전안내(홈페이지, 전화, 문자 등) - 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지 가능 ※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현장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최근 시설평면도·교습비·강사 등록 서류, 지도·점검 내역 등 준비
↓	
현장 조사	● 공무원증, 학원 지도·감독증표를 제시하고 소속, 직·성명,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 통보 - 점검 거부 시 강제 점검 진행은 어려우며, 거부에 대한 제재 안내 (근거 법령 및 조항, 벌점 등) ● 수입·지출 장부, 신용카드 전표, 직원·수강생 명부 등 점검자료 요청 ● 각종 게시 사항, 교습비 징수내역, 교습 현장 등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 사전 역할 분담 ● 위반 사항 및 관련 법령, 처분 내역, 시정 사항 등 상세설명 및 학원장 확인서 작성(필요시 증빙자료 복사 요청)
↓	
결과 처리	● 출장 복명,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위반내역에 대한 벌점통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진행 및 처분내역 나이스 입력 ● 특별점검 실시결과 보고(시교육청, 교육부) ● 시정요구 처리결과 징구 및 이행 여부 확인

④ 민원조사

단계	업무 내용
현황 파악 ↓	● 민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 수집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제보 및 증거자료 제출 협조요청 ● 대상 시설 현황 파악(위치, 등록여부, 교습시간, 교습인원, 교습과정 및 이전 행정처분 내용 등)
계획 수립 ↓	● 점검 일시·방법 등 점검계획 수립 - 민원 제보내용 중심으로 점검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점검계획 수립
현장 조사 ↓	● 공무원증, 학원 지도·감독 및 실태 조사증을 제시하고 소속, 직·성명,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 통보 -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어 사전통지 하여도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지 가능 - 점검 거부 시 강제 점검 진행은 어려우며, 거부에 대한 제재 명확히 안내(근거 법령 및 조항, 벌점 등) ※ 재방문일 통지 후 재방문, 제재내용 서면안내 등 방법 강구 - 무등록 교습시설,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 거부 시에는 파악 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 의뢰 ● 민원 제보 관련 점검자료 제출 요청 ● 민원 제보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실시(과잉 점검 주의) ● 위반사항 및 관련 법령, 처분내역, 시정 사항 등 상세설명 및 확인서 작성 - 무등록의 경우 교습장소, 시설규모, 교습인원, 교습과정 운영 실태 등으로 위반형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파악 및 고발 근거자료 수집
결과 처리	● 출장 복명,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위반내역에 대한 벌점통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진행 및 처분내역 나이스 입력 - 무등록 시설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세무통보 ● 시정요구 처리결과 징구 및 이행 여부 확인 ● 민원인에게 점검결과(위반사항 확인 등) 회신

1 지도·점검(실태조사) 중점사항

☘ 시설·설비 변경(확장 및 축소) 또는 시설·설비 기준 미달

- 근거: 학원법 제6조제1항 및 제14조, 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
- 내용 : 칸막이를 변경(이동, 설치 등)하는 경우와 시설·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변경 미등록(미신고)	10	15	20
	설비 변경 미등록 (학원만 해당)	5	10	15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학원만 해당)	시설기준 미달	25	50	등록말소
	설비(교구 포함) 기준 미달	10	20	30

- 용어해설
 - 시설변경 : 등록된 시설 내에서 칸막이를 변경하는 경우

☘ 무단 미개원 또는 휴·폐원(소)

- 근거 : 학원법 제10조, 제14조제9항,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 내용 : 학원(교습소)은 1개월 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하려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학원만 해당)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폐원) (학원만 해당)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폐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개월 이상 휴원(소) 미신고	1개월 이상 휴원(소) 미신고	10	20	3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휴·폐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법무부 2015년 질서위반행위규제 해설집 p304)

【질의요지】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제10조 및 제14조 제4항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 즉 사회통념상 폐원신고가 가능했을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 만일 당사자가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는 사회통념상 교육감에게도 폐업신고가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직권 말소 시 청문절차 여부

(교육부 질의회신 안내(독서실 건축물 용도 등) (평생교육과-19421, 2018. 10. 18.))

【질의요지】 「학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업 신고(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근거로 그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 개정법령의 취지는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소)한 경우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등 사실상 폐원(소)로 볼 수 있는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학원 또는 교습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문을 거칠 실익이 없으며, 현행 학원법의 경우에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명령의 경우에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감이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다만 타 법령 사례의 경우와 같이 미리 학원 운영자 또는 교습자에게 직권말소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10일 이상 예고 필요

학원·교습소 직권 말소 시 과태료 부과 여부

(교육부 질의회신 안내(독서실 건축물 용도 등) (평생교육과-19421, 2018. 10. 18.))

【질의요지】 「학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지?

【회답】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소)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행하는 직권말소는 학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폐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음.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의 신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학원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 제7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신고없이 폐원(소) 또는 휴원(소)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과외교습 중지명령에 따른 신고사항 말소

❶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중지명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으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폐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 학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17조제3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신고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폐지와 같이 신고사항을 말소해야 하나 이외의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입니다.

☞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중지명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시설이나 교습행위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거지에서 교습행위를 하므로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만 해당하므로 과외 교습중지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12.)

☘ 시설·설비 무단위치 변경

- 근거 : 학원법 제6조제1항 및 제14조, 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 내용 :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가 위치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위치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적발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말수 (폐지, 중지 1년)

- 용어해설
 - 장소변경 : 기존 학원을 운영하면서 타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학원을 이전할 경우 변경할 곳에 학원 시설을 완성한 후 변경 등록해야 하며 새로운 장소에서 등록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시설 확장 및 축소 : 동일 건물 내에서 기 등록된 학원의 층 또는 호실을 변경(추가 또는 감소)함으로 면적만 변경(확대 또는 축소)되는 경우, 변경 진행 중에는 학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시설에서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 완료 후 변경되는 장소에서 강의가 가능함

☘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무단 변경

- 근거 :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4조
- 내용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 변경 시 변경 등록(신고)해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20	40	60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자 변경 미신고	30	60	폐지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신고)

- 근거 : 학원법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 내용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시, 교습비등 변경 시 지체없이 등록(신고)
※ (예시) 방학 중 특강 개설 후 미등록(신고), 교습과목 신설 후 미등록(신고), 교습비 인상(안하) 후 변경미등록(신고) 등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신고)	10	15	20

✎ 감면 교습비등의 교습비등 등록·신고 의무

- 형제·자매 할인, 장기수강생 할인 등 감면 교습비 등을 등록·신고 후 징수해야 하는지
-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상 교습비 등의 감면은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습자나 학부모에게 이익이 되는 거이고, 교습비 등의 등록·신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며, 교습비 등의 변경 미등록·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교습비 등의 감면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습비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 학원 원칙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영

- 근거 : 학원법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내용 : 교습과정(목)을 변경 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등록(신고)한 교습과정(목)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교습과정(목)을 운영하는 경우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목) 운영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목) 운영	25	50	등록말소 (폐지, 중지 1년)

※ 예 시

1. 입시학원에서 토익, 토플 과목을 교습하는 경우
2. 어학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영어를 교습하는 경우
3.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등 초등학교의 보통 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4.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강사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 근 거 : 학원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5조, 조례 제10조, 교육규칙 제7조
- 내 용 : 강사 등을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 근 거 :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내 용 :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
(임시강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강사 등 모두 채용 불가)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30	60	폐지

-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 안내 (평생교육과-1816, 2019. 1. 29.)」 참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 근 거 : 학원법 제17조제3항
- 내 용 :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임의로 채용할 수 없음
(임시강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강사 등 모두 채용 불가)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30	60	중지 1년

개인과외교습자가 별도 강사 채용 시 위법 여부

-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당 장소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행위를 하였을 경우, 허위신고로 보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으로 보아 강사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 하는지?
- ☞ 학원법에서는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한다면 해당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자에 해당하여 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 9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자로 고발할 수 없고 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 강사에 대하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사용자이고 그 강사는 피용자이며 사용자종속관계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한 것이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고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12)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 내 용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행정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0	500	-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범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조제2호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범위(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834, 2014.10.2.)
 1. 학원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 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2.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전체

명칭관련 위반

- 근거 : 학원법 제15조의2, 교육규칙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제1호,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 제35조 제1항
- 내용 : 명칭은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유치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광고하여서는 안 됨
※ (학원)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교습소)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해당없음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교습소)을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400	500

※ 유아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학교형태 운영 시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제50조,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제1호
- 내용: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 위반사항 발견 시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
- 형사처분(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면 해당 시설 폐쇄

교습소 명칭 표시

- ❶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가요?
- ❷ 2. 학원 역시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상호/학원 을 표기하여 ‘○○○학원’ 으로 학원명을 지어야 하며 그 외 아카데미 학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❸ 3. 정상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표기와 / 잘못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할수 있는지요 예1. ○○○○아카데미/○○○국어교습소 , 예2, ○○○ 국어 아카데미/○○○국어교습소 이렇듯 학원에 신고된 교습소 명칭과 신고 안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을 붙여 표시한다’ 고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 를 붙여 표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 이나 ‘교습소’ 외에 다른 명칭 표시 및 공용 표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7조(행정처분)에 따라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5.2)

영어교습소 명칭

- ❶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 +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 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규정하여 학교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교습소 명칭 사용 시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카데미’ 라는 단어만으로는 교습소가 학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습소 명칭 사용에 대해 수리 관할청과 협의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8.20)

명칭 사용 위반 학원 관련 규정 및 사례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

-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

-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069, 2016. 10. 19.)

구분	유치원(유아학교)		학원	
	외국어	한글식 표기	외국어	한글식 표기
한자	幼稚園	유치원	學院	학원
영어	kindergarten(Am)	킨더가든	educational institute	에듀케이션얼 인스티튜트
	preschool(Brit)	프리스쿨		
	nursery school	널서리스쿨		
	kids school	키즈스쿨		
독일어	kinderschule	킨더슐레	konservatorium	콘서바토리움
프랑스어	'ecole maternelle	에콜 마테흐넬	institut	어스티튜
중국어	幼稚園	유치유안	学院	세이유안
일본어	ようちえん	요우치엔	がく-いん	가꾸잉

* 유치원의 '외국어' 및 '한글식 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음



유치원 유사명칭 관련 주요 질의별 답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873(2016. 12. 1.)

❶ '유치부'라는 표현도 학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 ☞ 유아대상 학원으로서「학원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되었다면 '유치부' 또는 '유아부'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관할청에서 달리 규제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 통상, '유치원'을 '유치부' 또는 '유아부'로 명명하지는 않음

❷ 온라인에서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으로 인가된 시설이 아니라면 해당 시설이 유치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음

❸ '킨더솔레'로 상표등록한 학원인데 제재대상이 되는지?

- ☞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아교육법」시행(12.9.22.) 전에「학원법」에 따라 학원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정상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다만, 해당 시설이 유치원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광고하는 행위는 「유아교육법」적용대상이 됨
- ※ 광고 시에는 명칭 뒤에 반드시 '학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킨더솔레학원)

- ☞ 아울러, 예외적 인정 여부를 떠나「유아교육법」상 해당 규정 도입 취지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학원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권장함

❹ '키즈스쿨'로 등록한 학원에 대해 명칭변경을 지도해야 되는지?

- ☞ 유치원 유사명칭을 학원 명칭으로「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시점을 고려하여
- (법 시행 전) 「유아교육법」시행(12.9.22.) 전에 등록한 경우라면 정상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법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시행(12.9.22.) 이후에 등록한 경우라면 유예기간을 두고 학원 명칭 변경을 지도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학원 명칭 변경없이 계속 사용한다면 유아교육법을 적용. 제재 바람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 연장도 가능

- 다만, 학원 명칭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시설이 유치원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광고하는 행위는 「유아교육법」 적용대상이 됨

※ 광고 시에는 명칭 뒤에 반드시 '학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키즈스쿨학원)

- ☞ 예외적 인정 여부를 떠나「유아교육법」상 해당 규정의 도입 취지를 존중하여 법 시행 전 등록된 학원 명칭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 측에서 자율적으로 학원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권장 바람

- ☞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이 학원 명칭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학원업무지침 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거짓·과대 광고 행위

- 근거 :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 내용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행정처분 :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벌점 부과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거짓·과대 광고	거짓	35	등록말소	
	과대	20	40	등록말소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 참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평생교육과-6075, 2018. 3. 27.) 참고

🔍 과대광고 적발 사례

- 동대문구에 위치한 학원이 인터넷상에 다른 지역 학원으로 검색될 수 있게 키워드를 설정, 홍보하여 과대광고로 적발됨
- 예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미용학원인데 인터넷 상에서 '강북구 미용학원', '서대문구 미용학원', '강남구 미용학원' 등 다른 지역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소지가 있는 과대광고를 하였음

✎ 교습비등 게시위반

- 근거 : 학원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교육규칙 제8조
- 내용 : 내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및 외부(학원, 교습소)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거짓 게시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 (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100	200	300

- 교습비등 외부표시제 방법(교육규칙 제8조, 별지 제18호 서식 준수)

연번	학원의 위치	게시장소
1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는 학원·교습소 또는 건물의 1층 주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학원·교습소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2	위 "1"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교습소	① 건물 주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②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①, ②번 방법 중 선택

교습비 거짓게시와 교습비 변경 미신고의 구분 사례

-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다르게 교습비가 게시되어 있으나, 실제 게시된 교습비로 수강료를 받고 있었으며, 수강료의 단가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을 때 > '교습비 변경 미신고'에 해당 / 교습비 거짓 게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같게 교습비가 게시되어 있으나, 실제 게시된 교습비와 다르게 수강료를 받았다면(초과) > 교습비 거짓 게시에 해당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의 판단 기준

- 학원에서 징수한 교습비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가 동일하나 등록된 교습비등과 다를 경우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과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 ☞ 학원법에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첫째,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징수한 교습비등과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 다른 경우
둘째,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셋째,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징수한 교습비등과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 동일한 경우는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이 다른 경우에는(감면 제외)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 (광고 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및 교습비등 표시위반

- 근거 : 학원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교육규칙 제8조
- 내용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 ①등록(신고)번호, ②학원(교습소) 명칭, ③교습과정(과목), ④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 인쇄물·인터넷 등 :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블렌, 부채, 메모지 등의 판촉물과 현수막 활용 광고 시는 제외)
 - ※ 교습비등의 표시 : 교습과정(목)의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포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광고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 표시	10	20	30
	광고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광고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100	200	300

☘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성과 홍보

-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 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제11조(지도·감독 등) ④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지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인터넷 광고범위' 변경 알림(평생교육과-6075, 2018. 3. 27.)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광고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
- 다만, 판촉물(볼펜, 부채, 메모지 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비등의 적시 의무는 제외, 거짓·과대광고 사항만 지도·점검 대상으로 함

☞ **(적용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중요사항 표시 의무

① 광고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납부하는 일체 경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구분

※ **(교습비등 표기)** △원칙: 전부 표기, △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교습소 명칭을 대신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표기 권장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시) 00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길동보습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영어 20만원/주5회 각 50분)
 00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피아노교습소 (12만원/주3회 각 50분)
 00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 (수학 25만원/주2회 각 90분, 국어 25만원/주2회 각 90분)

② 학원·교습소의 명칭은 00학원, 00교습소로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학원법 제15조의2)하며, 유아대상 여학원은 "유치원 및 유사명칭"을 쓰지 않도록 주의(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유치원 유사명칭 :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슐레(kinderschule)

☞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① **과대·거짓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

1.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2.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3.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 가능
 *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4.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등을 광고하는 행위
5. 언론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상, 추천 사실이 없음에도 수상 또는 추천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표시광고법 제3조)

※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광고행위 금지

1.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2.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행위
3.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③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④ **기타 부당광고 행위 자제** (학원법 제16조제1항)

-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 진학 실적의 외벽광고 및 전단 광고 금지 지도

※ **(참고)** 서울교육청은 진학실적의 외벽 광고 및 전단을 통한 광고 금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 자제 지도

※ 기타 부당광고 유형은 일반적인 학원 지도·감독권에 의해 시정 요구 형태로 조치

교습비등의 반환

- 근 거 : 학원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내 용 : 교습비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감염병에 관한 조치 사유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수강생의 사유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등록말소 (폐지, 중지1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교습비 반환 관련 법령해석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5-0260, 2015.6.23., 민원인]
- 【질의요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 【회답】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질의 회신

- 수강료를 할인받은 수강생의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2016. 4. 21.)호]
- 【질의요지】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에 따라 수강료가 할인된 경우, 수강생의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학원 약관을 기준(중도해지 시 할인 전 수강료로 산출)**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는「학원법 시행령」제18조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답】 「학원법 시행령」제18조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
 -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업무 처리 기준

할인된 교습비등 반환[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8606(2016. 4. 28.)호]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할인되기 전의 교습비등이 기준이 아닌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금액 산정**

예) 매일 1시간씩 교습하고 월 10만원인 교습과정을 2016. 3. 1. ~ 2016. 5. 31.(3개월) 수강등록하고 교습비를 할인받아 3개월분 수강료 27만원 납부한 후 2016. 4. 20.부터 수업을 중지한 경우

①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기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체 수강 기간 92일중[2016. 3. 1. ~ 2016. 5. 31.] 42일[2016. 4. 20. ~ 2016. 5. 31.]을 미수강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 27만원의 42/92인 123,260원을 반환

②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2016. 3. 1. ~ 2016. 3. 31. : 1개월차 ⇒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16. 4. 1. ~ 2016. 4. 30. : 2개월차(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 19일(2016. 4. 1. ~ 2016. 4. 19.) 동안 19시간 수강하여, 2개월차 총교습시간인 30시간(30일동안 매일 1시간)의 1/2 경과후이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16. 5. 1. ~ 2016. 5. 31. : 3개월차 ⇒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 반환**

▶ **총 반환금액: 9만원**

교습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최초 수강일부터 연장된 교습기간의 말일까지에서 수업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전체교습기간(수강기간)으로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 산출

예) 매일 1시간씩 교습하고 월 10만원인 교습과정을 2016. 3. 1. ~ 2016. 5. 31.(3개월) 수강등록하고 교습비를 할인받아 3개월분 수강료 27만원 납부한 후, 2016. 4. 1. ~ 2016. 4. 13.(13일) 수강 중단하고 교습기간을 13일(2016. 6. 13.까지) 연장하였으나 2016. 4. 20.부터 수업을 중지한 경우

①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기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체 수강 기간 92일중[2016. 3. 1. ~ 2016. 3. 31.(31일) 및 2016. 4. 14. ~ 2016. 6. 13.(61일)] 55일[2016. 4. 20. ~ 2016. 6. 13.]을 미수강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 27만원의 55/92인 161,413원을 반환

②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2016. 3. 1. ~ 2016. 3. 31. : 1개월차 ⇒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16. 4. 14. ~ 2016. 5. 13. : 2개월차(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 6일(2016. 4. 14. ~ 2016. 4. 19.) 동안 6시간 수강하여, 2개월차 총교습시간인 30시간(30일동안 매일 1시간)의 1/3 경과전이므로,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의 2/3인 **6만원 반환**

- 2016. 5. 14. ~ 2016. 6. 13. : 3개월차 ⇒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 반환**

▶ **총 반환금액: 15만원**

감염병 조치에 의한 반환 사례

● 학습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되었을 경우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예) 매일 1시간씩 월수금 주3회 월 15만원인 교습과정을 2022. 3. 1. ~ 2022. 3. 31.(1개월) 수강등록하고

① 3월 29일(화) 확진으로 격리 기간이 3월 29(화)~4월 4일(월)까지인 경우

- 전체 수강료 15만원 중 격리시작 전일(3월 28일)까지의 수강료인 135,480원(15만원×28/31)을 제외한 14,520원 반환(4월 재등록 시 4월 격리기간 4일분을 제외한 수강료 징수)

② 3월 10일(목) 확진으로 격리 기간이 3월 10일(목)~3월 16일(수)까지이고 격리 후 다시 등원하는 경우

- 전체 수강료 15만원 중 격리기간인 7일간의 수강료 33,870원(15만원×7/31) 반환

교습비등 반환의 기준

● 학원비를 환불할 때 1/3경과 전이나 1/2경과 전으로 계산하여 학원비를 환불하여 준다는 것과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학원비를 환불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따라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 학원법시행령이 개정(2007.3.23)되면서 이전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업을 중단할 경우 1~2회만 수강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월”의 교습비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교습비 반환기준이 개선되어 앞으로 남은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원 측에 본인이 수업을 포기할 것을 학원 측에 분명하게 의사표시하면 학원 측에서는 수강 포기한 시점부터 교습비 당해 월의 징수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환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징수기간 1개월, 1일 2시간씩, 월 20일 교습이 이루어 졌을 때

◎ 총 교습시간 계산 : 2시간×20일 = 40시간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고,
- 1시간부터 13시간 20분 전까지는 1/3 경과 전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2를 반환 받을 수 있고,
- 13시간 20분 이후부터 20시간까지는 1/2 경과 전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를 반환 받을 수 있고,
- 20시간 이후부터는 1/2 경과 후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27)

총 교습시간의 1/2 시점에서의 교습비등 반환의 기준

- ❏ 1개월 총 교습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시간 교습을 받고 11시간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 해지 신청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 교습비 반환 기준에 의한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이라 함은 10시간 교습을 받고 11시간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해지 신청한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10.15.)

교습비등 반환 처리 기한의 기준

- ❏ 학원법 시행령에 보면,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5일이라는 것이 영업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휴가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만약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내 반환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 학원법 제18조, 동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습비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학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6.13.)

할인된 교습비등에 대한 반환 기준

-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적용에 관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 올립니다. 학원법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비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기준으로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수강료보다 할인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강생이 장기간 강좌(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좌)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수강 등록을 하는 경우 학원과 수강생 간 환불에 관한 약관을 체결합니다. 약관 내용은 수강생이 환불을 요청하면 할인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학원의 귀속될 수강료를 할인된 수강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학원법시행령 -교습비 반환기준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정상금액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6.2.3.)



학원과 학생이 체결한 교습비등 반환 합의의 적법 여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학원과 학생사이에 별도로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가 적법한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별표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학습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0.1.23.)

(참고) OO교육지원청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회신 내용

1. OOOOOO(주)의 OOOOOOOOOOOO학원의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에 관한 귀 청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약관법상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산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결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그러나 현재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8조 및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이 별도의 환불규정을 둘 수 있다고 허용하지 않은 이상 모든 학원은 당해 법률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의 질의와 같이 개별 학원의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는 학원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학원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환불규정을 둔 학원의 환불규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2011.4.21.)


참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원격교습의 경우(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수강기간 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일할(日割)계산
○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독서실 제외한 학원 등>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독서실의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고지된 1일 교습비 등×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일할계산 하여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취소	
2.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이 늦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 해지일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사업자에 전달한 날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유료청구금액 환급	* 잔여기간 = 계약기간(유·무료 서비스 기간을 합한 총기간)-이용일수
○ 무료 이용기간 경과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 청구금액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월회비, 가입비, 교육자료비, 포트폴리오비, 종목비 등)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인 경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인 경우 7일 이내
4.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 중요사항은 아래 내용을 말함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업자에 관한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서비스의 명칭·종류 및 내용
-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서비스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서비스의 제공기간 및 제공방법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내용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 방법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사항
 - 이용자피해보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수익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수익률 산정 방법)

 영수증 미교부·미발급

- 근거 : 학원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 내용 :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부해야 함
 - 영수증 양식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 영수증에는 학습자의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기재해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별점		
		1차	2차	3차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교습소에서 불법 개인과의 운영 사례

- 🕒 2024. 7. 24.부터 2024. 10. 6.까지 교습자 000은 본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미신고 개인과의 교습을 한 사실이 있으며, 교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영수증을 미교부 하였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개인과외는 교습자의 주거지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교습소 시설에서 개인과의 교습을 하며 영수증을 미교부한 행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습소 신고시설을 이용한 불법 과외(고의·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별점 35점, 교습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진행함. 미신고 개인과의 운영 시 영수증 미발급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 통보함

☘ 무자격 강사 채용

- 근 거 : 학원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 내 용 : 강사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3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자격(학력, 체류자격 등)되지 않는 강사를 채용하여서는 안 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50	등록말소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50	등록말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100	200	300

☘ 강사 인적사항 게시

- 근 거 : 학원법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 내 용 : 강사의 인적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학원 설립·운영자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도 강사로 등록·게시하여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	거짓으로 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 근 거 : 학원법 제16조제2항, 조례 제8조,
- 내 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
※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습시간 연장 가능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등록말소 (폐지, 중지 1년)
	2시간 초과 이상	50	등록말소 (폐지, 중지 1년)	

🔑 자습의 교습행위 해당여부

- ❓ 교실에서 강사 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능한가?
- ❓ (교습행위가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 하는 것은 합법인가?

☞ 「학원법」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 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5.23.)

학원 교습시간 제한 대상

● 성인만 남아서 수업을 할 경우에도 심야교습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제16조 (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한 시·도에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6.19.)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근거 : 학원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6조
- 내용 :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해야 함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방식도 가능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별표2]

장 부 및 서 류 명	서 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 속

☘ 보험이나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기준미달

- 근거 : 학원법 제4조제3항, 조례 제2조제1항, 교육규칙 제2조
- 내용 :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
- 한도액 :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는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배상범위 :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교육규칙 제2조 제3항)
 - 의료실비 : 치료실비 또는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 ※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시 학원 외 교육활동 보상이 안됨(반드시 구내외 치료실비로 가입)
- 가입·제출기한

구분	신규 설립·변경 등록	휴원(휴소)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
가입기한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일
제출기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 행정처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별점		
		1차	2차	3차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등록말소(폐지)
	기준미달	20	40	60

위반행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 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제4호의4
- 내 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의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매 2년마다 정기교육 이수
- 행정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제160조제2항제4호의5
- 내 용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행정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8만원		

학원 등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목적 및 내용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의6
교육 대상	학원(독서실)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학원(교습소)의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휴직자 제외		
교육 시간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홈페이지(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 자료 활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사이버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 경기도 지식(gseek.kr)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 내 교육자료 활용 · 경기도 지식(gseek.kr)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학대' 키워드로 검색
미이행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교육결과 제출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 관련 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1항
- 교육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미해당)의 어린이와 접하는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보호동승자 등)
- 교육 내용 :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의 안전 교육 이수(실습교육 필수)

이론과정(2시간/온라인교육)	실습과정(2시간/대면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영·유·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결과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 결과 제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 교육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교육방법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

- 교육 시기

신규교육	정기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 결과 :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교육결과 입력 및 교육확인증 업로드
교육확인증 학원 시설 및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비치
- 미이행 시 제재 : 과태료 8만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의거 학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9인승 이상, 자가용자동차 공동소유 및 전세버스 가능)

학원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학원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17조제2항제7호 교육규칙 별표4)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 통학버스 포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말소(폐지)

*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2022.1.11.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과료 부과기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시·도경찰청장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과태료 3만원	시·도경찰청장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시·도경찰청장
통학버스 운전자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법 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 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과태료 6만원	시·도경찰청장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벌점 30점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 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교통안전법(2021.7.27.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만원)			과료 부과기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위반	
통학버스 운영자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법 제55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근거 : 학원법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

○ 내용

- 학원(동 시간대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는 곳)과 교습소(초·중·고등학생 또는 입시 준비생 등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 교습을 하는 자)는 교육청에 등록(신고)해야 함

○ 위반사항 발견 시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

☞ 예시

1.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10명 이상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2.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학부모를 동반한 고등학생 또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를 하는 경우
3. 상가에서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3명의 학생에게 악기를 교습하는 경우
4.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대여한 스터디룸 또는 주거 중인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등 중학교의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스터디카페 형태 시설의 독서실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스터디카페 관련) 회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233, 2017. 12. 19.))

【질의요지】 학습장소로 제공됨과 동시에 다른 목적(식음료 이용, 음악감상, 직장업무 등)으로도 제공되는 스터디카페 형태의 시설이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회답】

- 「학원법」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두 관할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 후 운영해야 함.
- 다만,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 독서실 해당 여부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점검방안】 ((일명)스터디카페 관련 교육부 질의회신 및 조사시 유의사항 안내 (평생교육과-24493, 2017. 12. 21.))

-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 학습장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가구, 비품 등이 다른 기능보다 학습환경을 최적화하도록 구성된 것인지, 광고 등에서 다른 기능보다 우선하여 학습장소 제공 홍보에 주력하는지, 주인 혹은 직원이 정숙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언행을 하고 있는지, 학습목적이 아닌 손님 of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지, 학습장소제공업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

2 학원 불법운영 사례

학원강사 관련

☑ 사례

1. 위반내용 : 무자격 강사 채용 ·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
2. 확인사항
 - 무자격자(학력 미달 등)를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교습함
 - 어학원에서 적절한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교습함
3. 시정보고 : 자격이 있는 강사를 채용(재발 방지 확인서 제출)
4. 행정처분
 - 벌점 20점(시정명령) 부과
 - 과태료 1,000,000원 부과(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시)

교습과정의 운영 관련

☑ 사례

1. 위반내용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2. 확인사항(예시)
 - 학원 강의실에서 22시 40분경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함
 - 학원 강의실에서 22시 30분경에 학생들이 자습함
3. 시정보고 : 22시 이전에 교습을 마치도록 지도(확인서 제출)
4. 행정처분 : 벌점 20점(무단연장 시간에 따라 벌점부과) 부과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의무 위반

☑ 사례

1. 위반내용: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의무 위반
2. 확인사항: 개인과외교습장소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미부착
3. 시정보고: 개인과외 표지 부착
4. 행정처분: 벌점 30점(시정명령) 및 과태료(500,000원) 부과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관련

🔍 사례

1. 위반내용: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아닌 다른 비용 징수
2. 확인사항: 학원에서 교재비를 징수함
3. 시정보고: 교재비 징수 금지 또는 학원이 아닌 별도 시설에 별도의 사업자로 출판업 또는 서점업 신고 후 교재비 징수
4. 행정처분: 벌점 10점(경미한 사항) 부과

☪ 학원에서 서적(교재) 판매

🔍 근거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2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내용 :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한정함에 따라 이외 경비는 일체 징수할 수 없으므로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교재를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학원과 별도 시설에 서점업으로 신고한 후에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하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각 시·군·구청에 출판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법률에 따라 교재의 정가를 표기한 후 간행물로 발행하여 판매해야 함

🔍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과태료)
- 출판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 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프랜차이즈 학원 교재비 징수 가능 여부

[2013.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p339]

【질의요지】 프랜차이즈 교재(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는 일반 시중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회답】 2011. 10. 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설립·운영자와의 계약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 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영수증 발급)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교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행정처분 · 과태료 · 벌칙

참고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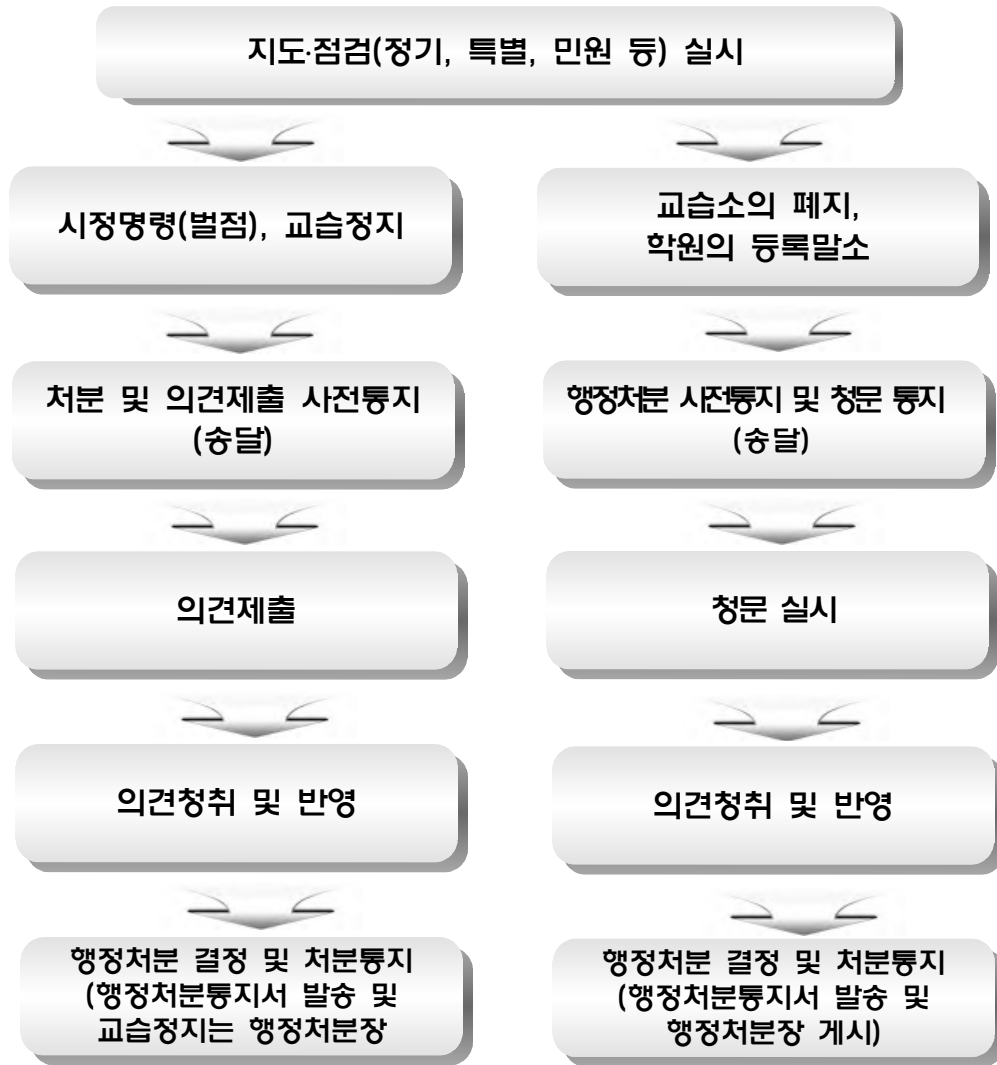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학원법”
 - 학원법 지도·점검 관련 조항

내 용	참 고 조 항
지도·점검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학원법 제23조(과태료)
고 발	학원법 제22조(벌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학원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이하 “조례”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 이하 “교육규칙”
- 기타 참고 법령

내 용	참 고 법 령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처분 절차 등	행정절차법
과태료 (부과, 징수, 독촉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이하 “재무회계 규칙”)
채납처분 (압류 등)	지방세징수법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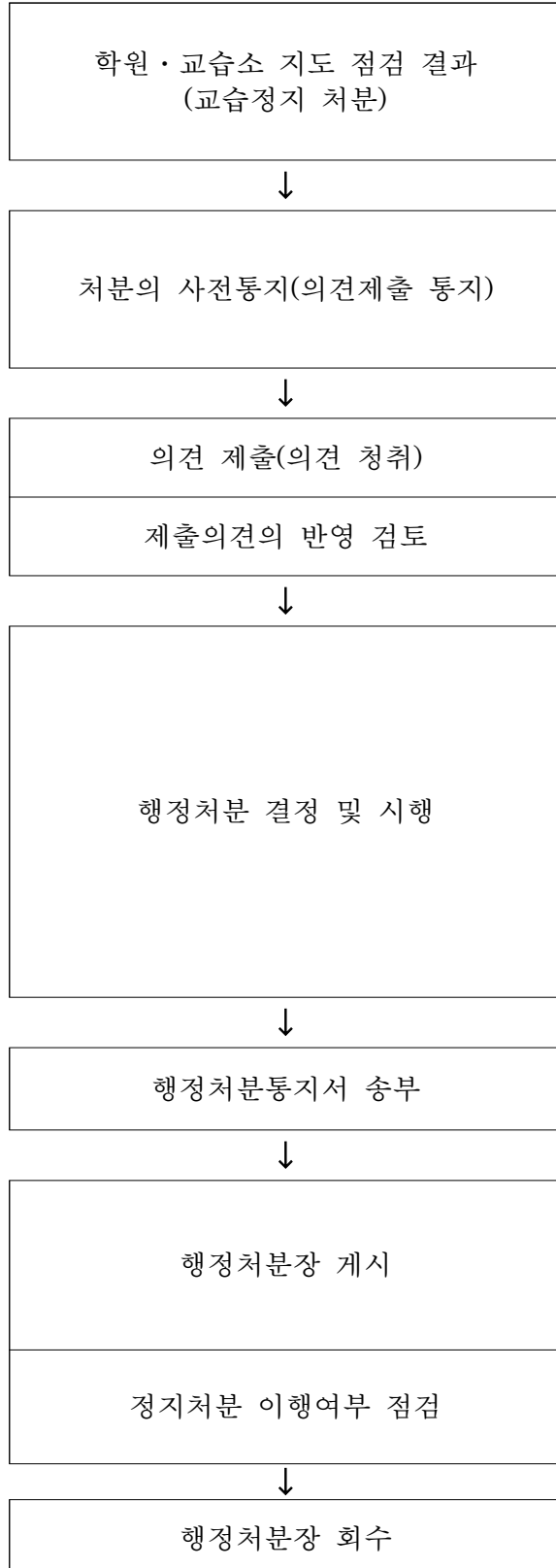


처분 시 참고사항

- 행정조사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할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함【교육규칙 제22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학원법 제20조】
- 청문 시 청문시작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로 청문을 종결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기타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행정절차법 제35조의2】
- 행정처분 기준【조례 별표 6】 및 세부기준(벌점)【교육규칙 별표 4】

학원·교습소 행정처분(교습정지) 절차 표준

◀행정처분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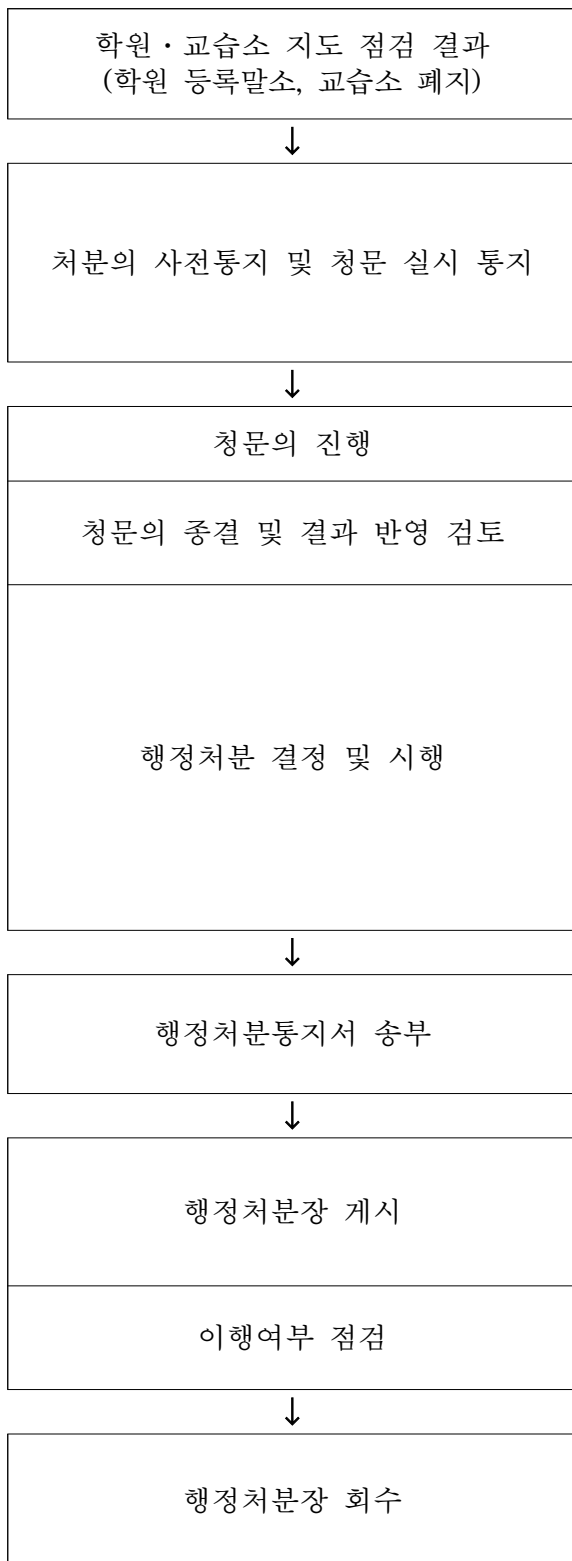


◀관련 규정 및 해설▶

- ▶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 ▶ 조례 제13조(행정처분)
 - ▶ 교육규칙 제21조(행정처분 기준)
 - ▶ 벌점 31점부터 정지 처분
-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
- ▶ 조례 제13조(행정처분), 교육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행정처분절차 등)
 - ▶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 반드시 행정처분의 감경·조정이 필요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 ▶ 교습정지 시작일은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 교육규칙 제23조(행정처분 통지)
-
- ▶ 학원법 제19조, 교육규칙 제24조(행정처분장 게시)
 - ▶ 처분통지서 송부 후 교습정지 시작일에 방문하여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
-
- ▶ 학원법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 ▶ 교습정지 처분 기간 중 점검
-
- ▶ 학원법 교육규칙 제24조
 - ▶ 교습정지 처분 종료 후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 절차 표준

◀행정처분 처리 절차▶



◀관련 규정 및 해설▶

- ▶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 ▶ 조례 제13조(행정처분)
 - ▶ 교육규칙 제21조
-
- ▶ 학원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견청취)
 - ▶ 청문실시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
 - ▶ 청문 실시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
- ▶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
-
- ▶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
- ▶ 학원법 조례 제13조, 교육규칙 제21조, 제22조
 -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 반드시 행정처분의 감경·조정이 필요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
- ▶ 교육규칙 제23조,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 ▶ 학원등록증·교습소신고증명서 반납
-
- ▶ 학원법 제19조, 교육규칙 제24조
 - ▶ 처분통지서 송부 후 행정처분일에 방문하여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
-
- ▶ 학원법 제19조
 - ▶ 등록말소·폐지 처분 후
-
- ▶ 학원법 교육규칙 제24조
 - ▶ 시설 철거 등 교습 재개 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 관련 참고 조항

<행정처분 일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조례 제13조 및 별표6, 교육규칙 제21조 및 별표4)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 및 의견제출 당사자에 대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견제출 관련>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제출의견의 반영 등)

<청문관련>

-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주재자)
-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
-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처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준용한다.

✧ 청문 및 의견제출 당사자에 대한 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관련(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청문 관련(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주재자)

-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주재자의 자격

1.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

-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들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들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들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들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들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들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행정절차법 제37조)

-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조례 제13조 및 별표6, 교육규칙 제21조 및 별표4)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별점제 운영

- 별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별점 (점)	31 ~ 35	36 ~ 40	41 ~ 45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이상
행정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함

※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

○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별점은 교육규칙의 위반사항 별점표에 따름

-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
- 별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최하 5점, 최고 66점)

<해설>

- 학원법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별점부과 대상인 “위반사항” 으로 구분하되, 별점은 위반사항 하위에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를 세분화하여 반복 위반 횟수별로 부과

-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 별점은 5점, 최고는 66점으로 한다.(66점 이후부터는 등록말소)

< 예시- 교습시간 위반 >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등록말소 (66)
	2시간 초과 이상	50	등록말소 (66)	

○ 행정처분의 적용례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별점 합산
-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별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별점 부과(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

<해설>

- o 벌점은 2년 동안 관리함. 즉, 2년 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적발 차수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예시> 영수증 미교부로 적발된 자가 2년 내에 영수증 미교부로 다시 적발되면 2차 적발 벌점(40점) 부과
- o 2017.4.26.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 즉, 2015.4.26.의 다음날인 2015.4.27.부터 2017.4.26.까지를 벌점 관리기간으로 함

<해설>

- o 같은 적발일에 위반사항 하위의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2개 이상 위반한 경우 각 벌점 합산
 <예시> “영수증 미교부”와 “무자격 강사 채용”으로 적발되는 경우(1차 적발시) ➡ 벌점 30점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50	등록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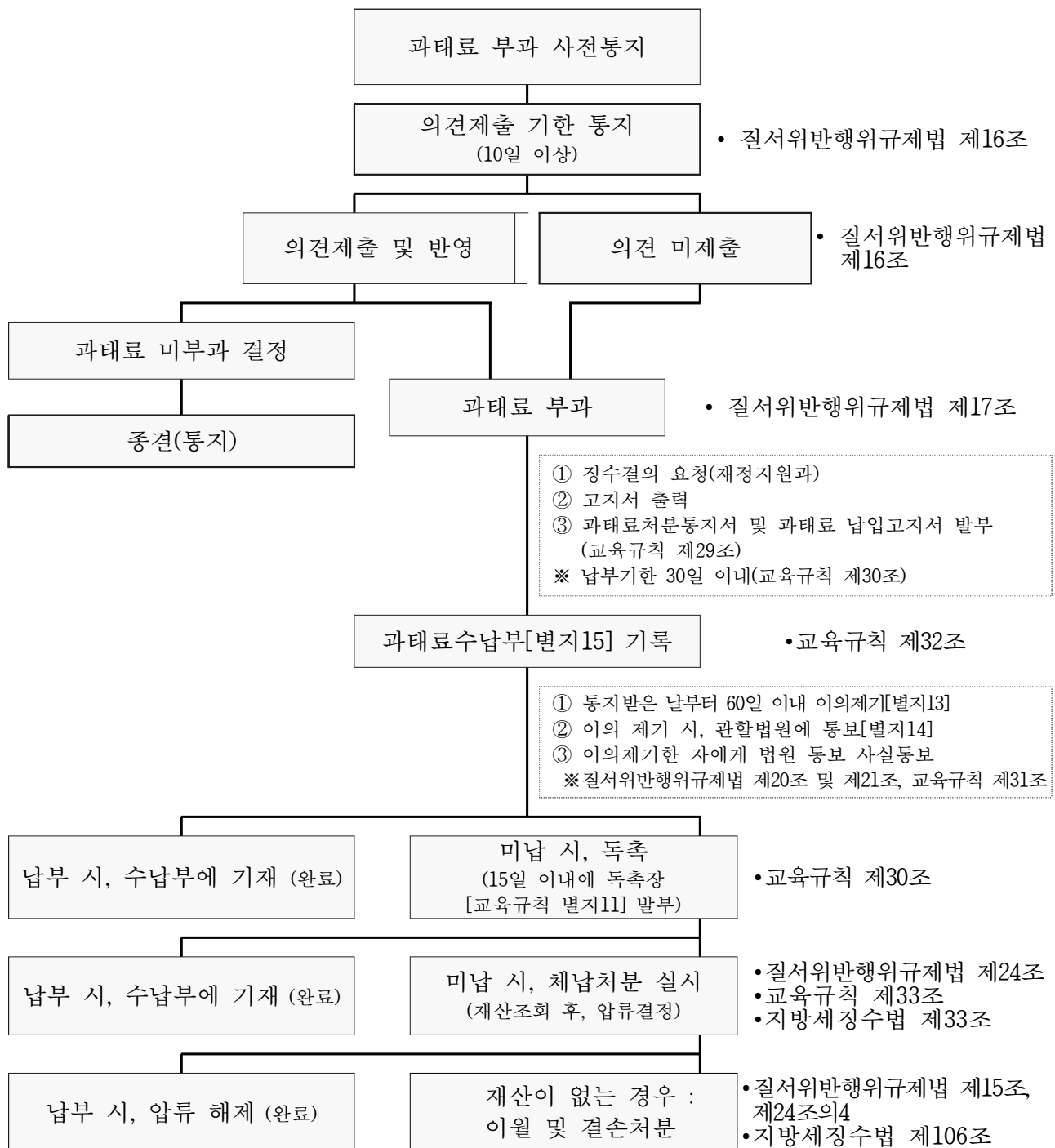
<해설>

- o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달라도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내 있는 행위를 위반하면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함
 <예시>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2년 이내)
 최초에는 “1시간 초과”, 두 번째는 “1시간 이내 초과”로 적발되었을 경우
 - 최초 적발 : “1시간 초과” 벌점 : 35점
 - 두 번째 적발 : “1시간 이내 초과” 벌점 : 20 40 → 50점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등록말소 (66)
	2시간 초과 이상	50	등록말소 (66)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는 동일한 형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절차 표준 (법 제23조, 영 제21조, 교육규칙 제29조~제33조)



과태료 부과 시 참고사항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위반행위와 과태료의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 관련 참고 조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와 제척기간)

-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 일반기준(반드시 개별법률의 시행령별로 확인, 다음 일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의 내용임)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6호의2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7]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500	1,000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2호	300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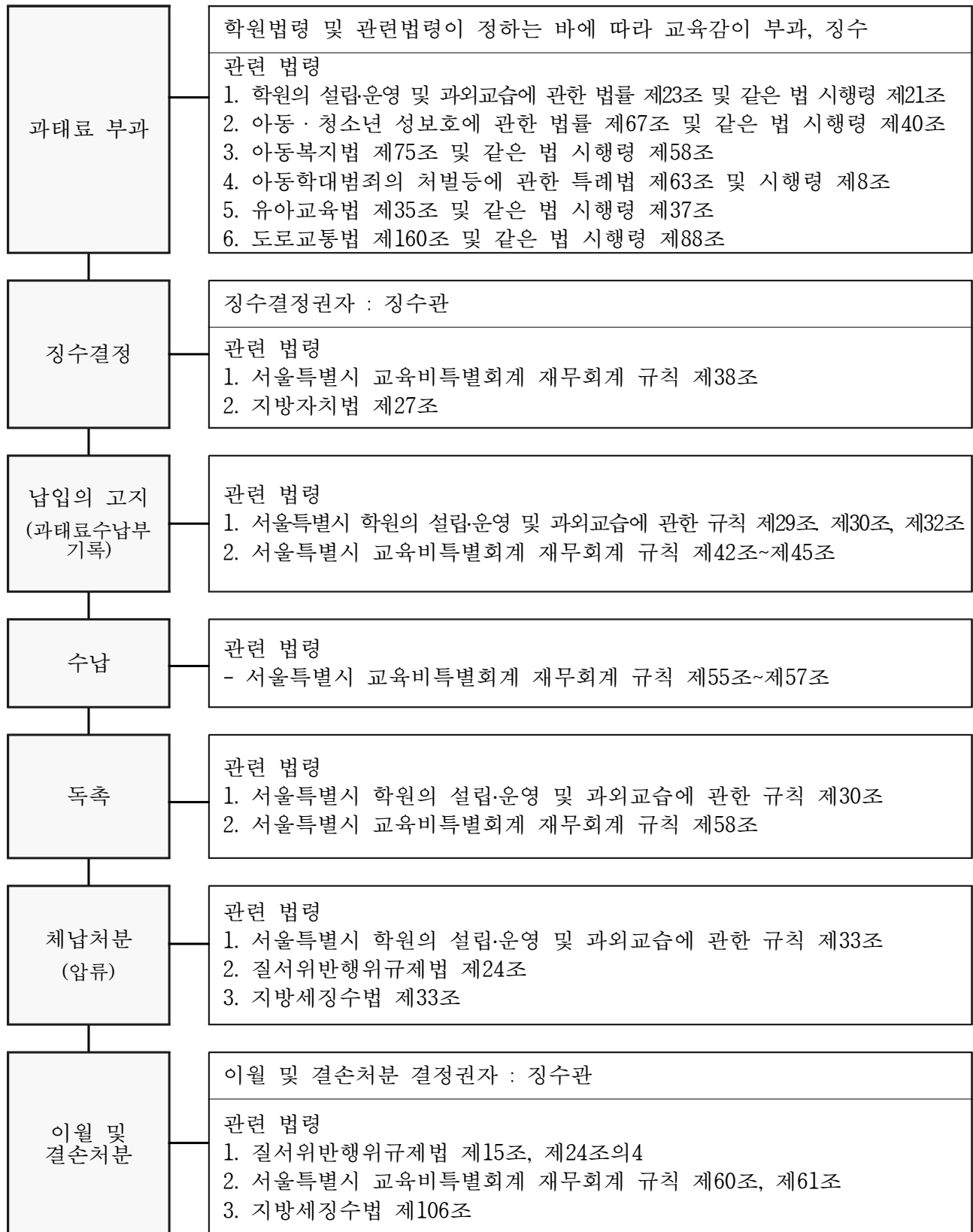
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4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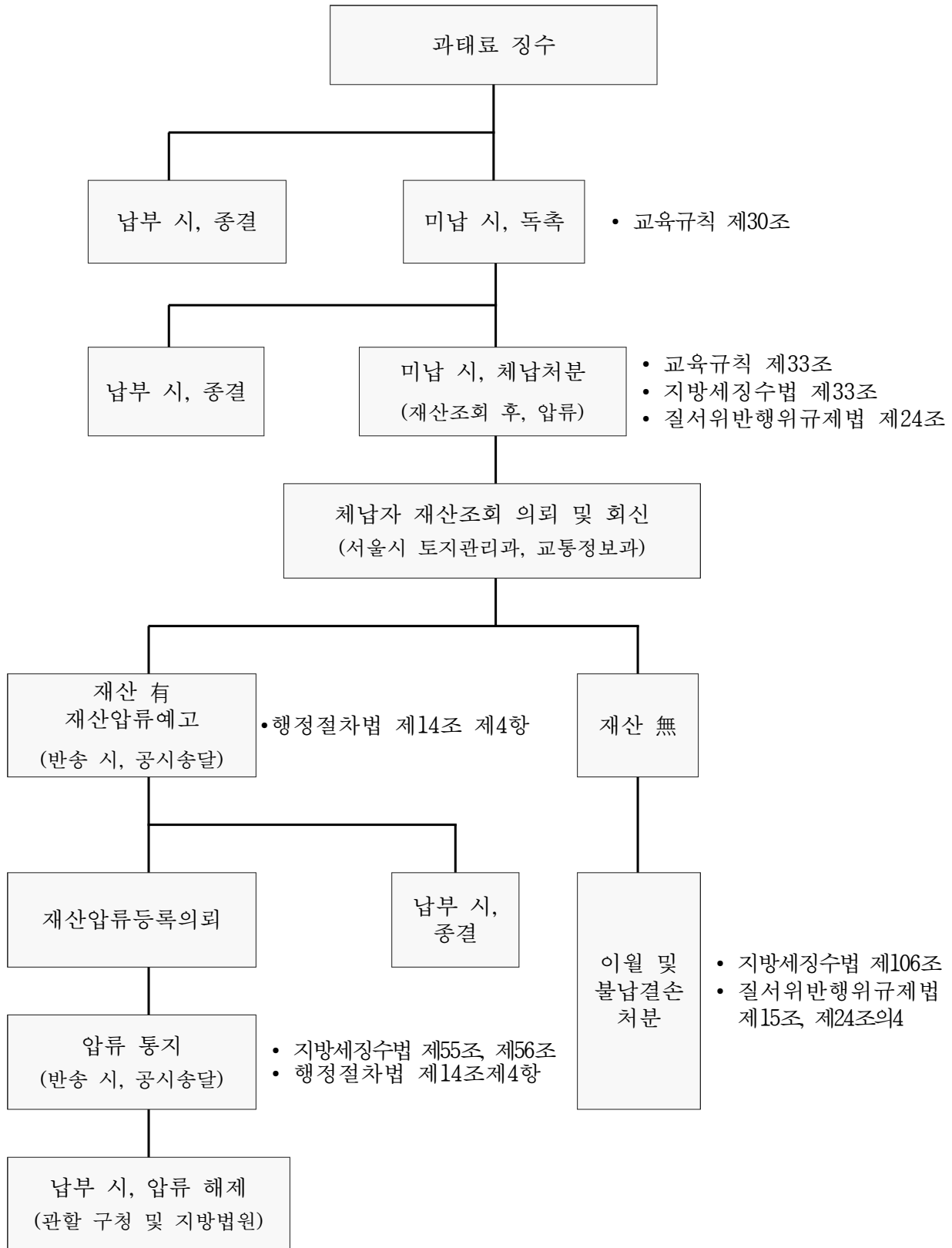
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1의4. 법 제53조의 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4호의5	8만원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4호의3	8만원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4호의4	8만원		

과태료 징수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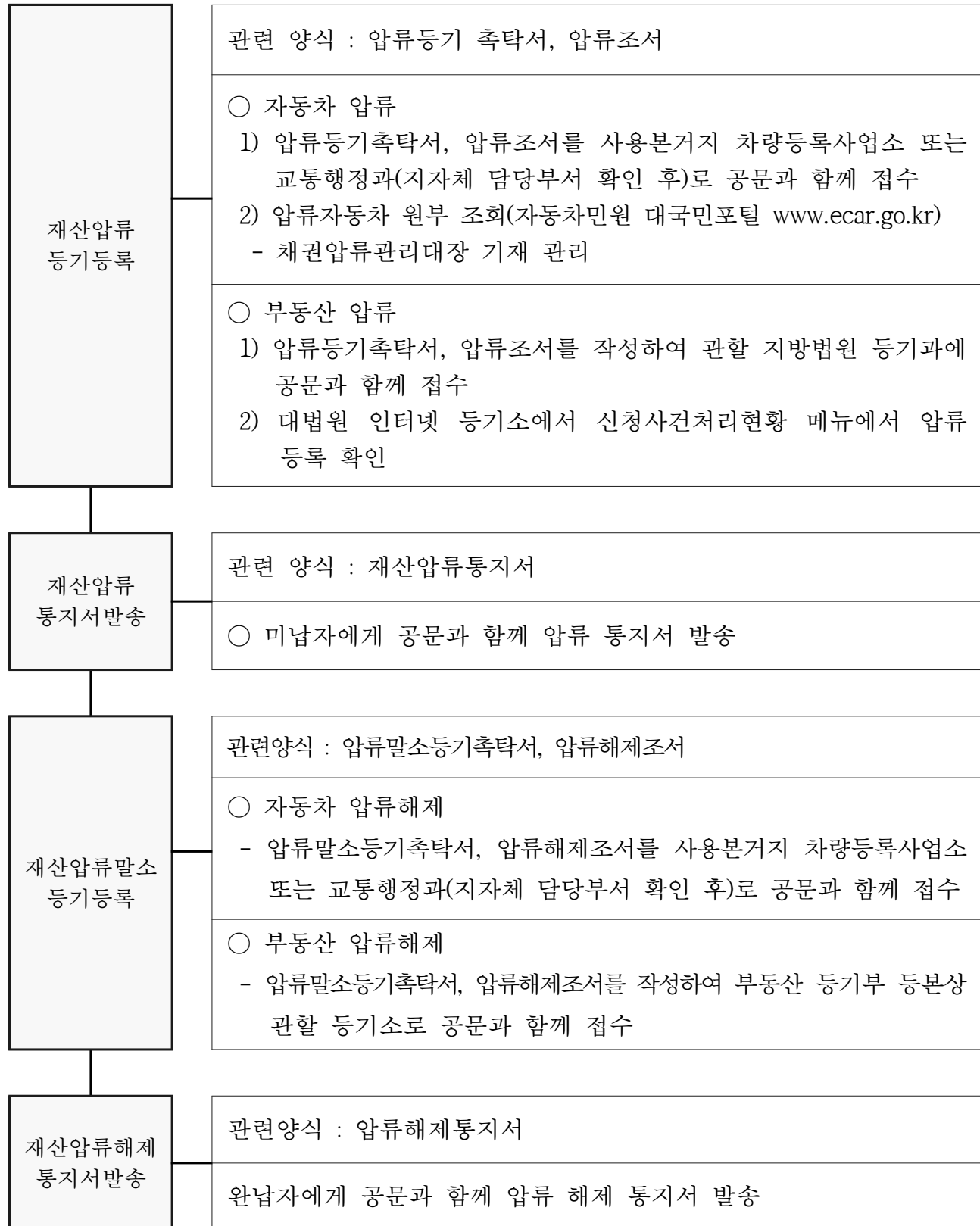


🌿 재산 압류 절차 흐름도



체납처분 재산 압류 세부 흐름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체납처분 요령 참고: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1120(2016. 5. 26.)호



체납처분 관련 조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지방세징수법 제64조(압류의 해제)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관련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지방세징수법 제64조(압류의 해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 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채납자(채납자와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채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채납처분 유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과태료 부과관련 법령해석

해석 1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법제처 09-0365, 2009.11.27.]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해 해당 세무관서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런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해도, 해당 개인정보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격하게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정보 특성과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국세기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활용은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과태료 부과 감경 관련

①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

- 학원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다항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개별법 상 감경과 중복하여 자진납부 감경 가능

예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000원일 경우

①항에만 해당하면 1,000,000원 $\times$ 50%=500,000원 감경(500,000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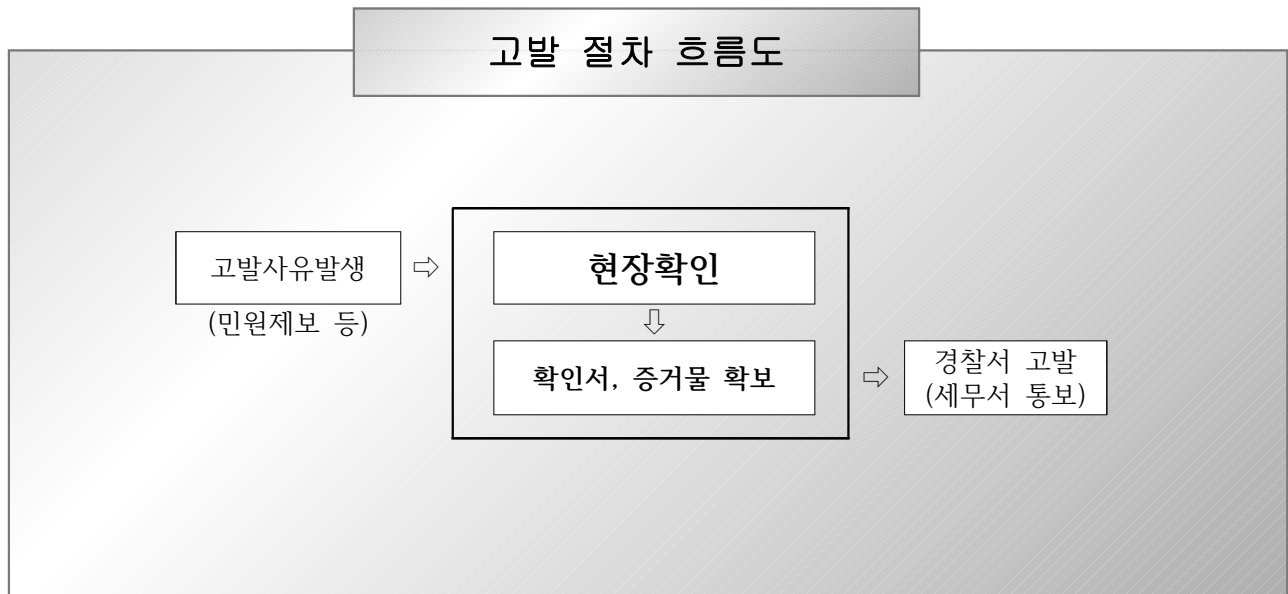
②항에만 해당하면 1,000,000원 $\times$ 20%=200,000원 감경(800,000원) 납부

①,②항에 모두 해당하면 400,000원 납부

☞ 1,000,000원-500,000원(50% 감경)=500,000원

500,000원-100,000원(20% 감경)=400,000원(최종납부)

고발 업무처리 절차



고발 관련 참고 조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원	1. 학원법 제6조(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한 자
교습소	3. 학원법 제14조제1항(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개인과의 교습자	4.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외교습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학원법 제19조제2항(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4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학원 ·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 내 용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의3을 위반하여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
- 점검방법: 지도 혹은 설립 담당자가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접속
 - * 기초 시스템 활용방법은 누리집 접속 > 공지사항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2024. 2. 16)참고
 - (교육이수현황) 관리자 메뉴 진입 후 교육현황 > 수료(만료) 및 미수료 숫자 클릭 → 미이수 학원 확인 후,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메뉴에서 검색 → 확인 후 조치
 - (안전운행기록) 관리자 메뉴 진입 후 안전운행기록 제출 현황 > 미제출 숫자 클릭 → 미제출 학원 확인 후,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메뉴에서 검색 → 확인 후 조치

【관리자메뉴 진입】

	전체	수료(유효)	수료(만료)	미수료
기관장	927	927	0	0
운전자	3,739	3,739	0	0
동승자	3,962	3,962	0	0

【교육현황/안전운행기록제출 현황 점검】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전수점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전수 점검(연 1회)

- 내 용: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연 1회 이상 범죄 전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점검을 해야하는바, 4~5월중 계획 시행하여 10월말까지 점검

< 취업제한 제도란? >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성범죄 전력자)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780(2013. 6. 1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834(2014. 10. 2.)

○ 대 상

- ①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 ② 학원·교습소 강사·교습자(보조요원 포함)
- ③ 학원·교습소에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일체)

* 사실상 노무 제공자: 일회성 강사, 생활지도사, 청소근로자, 차량 운전원 등 기관에서 금전 대가를 받고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대상별 점검방법지도 혹은 설립 담당자가 실시)

- ①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② 학원·교습소 강사·교습자(보조요원 포함)
 -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나이스를 통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추출
 - 법인 운영자의 경우, 임원 개개인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나이스를 통해 추출이 불가하므로, ③과 같이 임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
- ③ 학원·교습소에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일체): 학원·교습소에 서식을 안내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자료제출요구권),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 불필요

- 나이스 추출 및 학원·교습소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점검 대상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의뢰하며, 외국인 강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조치가 불가능하기에 관할 경찰서 공문 의뢰 [참고]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매년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요청 공문에 첨부하므로, 공문 검색 후 숙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의뢰 후 결과 회신까지 기한이 1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 점검 후 조치사항
- 적발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으로 인한 취업제한자를 다음과 같이 조치
 - 폐쇄가 어려운 경우 시설 양도 등을 통한 운영자 변경 안내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폐쇄’ 인정 범위: 해당 기관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교습자
운영자	폐쇄 요구		폐쇄 요구
종사자	해임 요구		

-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직접 조치

위반사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요구 거부 혹은 1개월 이내 미이행	폐쇄 요구	등록 말소	폐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
	해임 요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제2항제2호, 「아동복지법」 제75조제1항제2호)		



참고 규정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학원법 제16조

● 관련사항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 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¹⁾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 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학원 등에 사전 통지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점검은 제보사항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조사대상자에게 방문목적을 통지하고 현장점검 가능

1)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내용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위반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소득세법 2018.12.31.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7호

❖ 내용

1.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 (도로교통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유상운송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불가.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으로 허가 받은 경우는 운행 가능 → 관할 구청에 유상운송 허가 신청(경찰서에 신청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별도로 신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및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22호, 2015.7.20.>제3조)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령은 9년(처음 허가 신청 시 차령은 3년, 차령기간 만료 전의 정기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나 최대 11년까지만 가능)
- 학원에서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8. 12. 31.까지 차령 요건 미적용. 다만,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8. 12. 31.까지 차령요건을 갖추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22호, 2015. 7. 20.>

제3조(유치원·어린이집·학원 또는 체육시설 통학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동승보호자(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학습자)를 태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시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실시
- ☞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 운행 중 교통사고(사망,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운전자의 안전조치(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어린이가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

6.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신설 2018. 10. 16.>)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본조신설 2019. 3. 21.]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위와 같이 어린이 하차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이는 버스가 정지 또는 자동차 열쇠를 제거하는 경우 차량 가장 뒤편에 확인버튼을 누를 때까지 경고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려 가면서 차량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지를 확인하게 하는 원리임. (2019. 4. 17.자로 설치 의무화)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30점 처함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운영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됨

8.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행정기관

- 국토교통부(유상운송 허가)
- 경찰청(어린이통학버스 신고)
- 도로교통공단(안전교육)

9.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통학차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정리

구 분	내 용	위반 시 처분
신고 의무화(제52조)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과태료 30만원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제53조)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과태료 6만원
보호자 탑승의무 (제53조)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어린이하차장치 설치 의무(제53조)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는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함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별점30점
안전교육 의무규정 (제53조의3)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 교육 미이수: 과태료 8만원 * 미이수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 과태료 8만원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제53조의4)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	2015.1.29. 이후 위반행위부터

※ 참고사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5호)

❏ 집단 급식소 신고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 ❏ 내용 : 학원 내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집단급식소)을 운영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함.
-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이며, 1회 50명 이상이란 시간을 달리하더라도 급식 대상인원이 50명 이상임을 의미
- ❏ 과태료 :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는 연 1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
- 위반 : 연수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내용 :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는 연 1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내용 :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는 연 1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1항
- 내용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미해당)의 어린이와 접하는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보호동승자 등)는 연 1회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의 안전 교육 이수(실습교육 필수) 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 근거 : 학원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17조

☑ 내용

1. 신고내용 및 포상금액

신고내용(근거법령)	포상금액	비 고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20만원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의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행위 (학원법 제15조 제4항)	10만원	학원,교습소는 보통교과, 외국어교습비 초과 징수로 한정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 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2. 신고처

구분	교육부	국세청
방문, 서면, 전화 신고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
온라인신고	교육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국세청 홈페이지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3. 신고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

4. 지급방법

가. 지급기관 : 신고 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나. 지급시기 : 신고 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다.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라.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국세청 신고 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5. 지급제외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 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나.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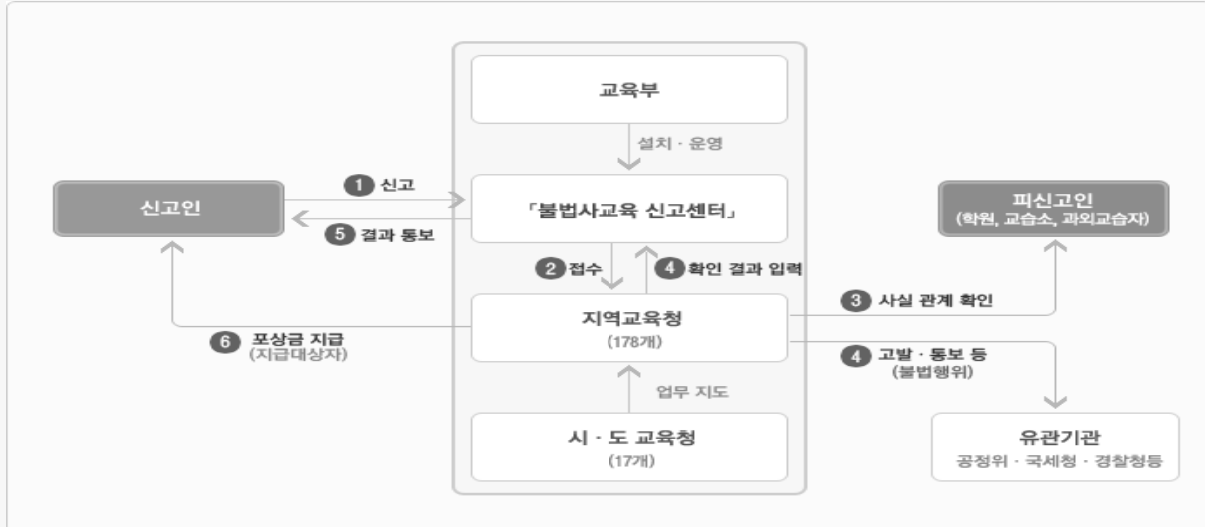
다.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라.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적용시기 2010.04.05. 신고부터)

6.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건이 반려되는 경우

- 가. 학원비 관련 부당행위 또는 위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인 경우
- 나. 제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7. 처리 절차



🔍 개인과외(신고포상금제)

- 🔍 대학생 과외도 금액한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또 한밤 10시 이후 과외 건은 신고대상인지, 과외 구인광고 업체는 신고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2의(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관할 교육감에 신고대상이 아니며, 교과부 및 교육청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강료 초과징수, 조례에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
- 학원의 설립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7.1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

-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오피스텔에서 교습자가 관할교육청에 신고 없이 학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시간대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1:1방식의 고액의 과외교습을 해오던 중,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관할교육청이 불법과외교습을 적발했다면, 이 경우는 불법사교육 신고포상 사유 중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원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피스텔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주거여부·교습형태·동시간대 학습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해 주신 위 사례에서,

오피스텔이 교습자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동시간대 1명에게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학원법」상의 ‘개인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교습자는 학원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포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법 적용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현지 점검을 통해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013.7.16)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 ❏ 국민신문고로 불법 사교육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하여야 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항에서는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포상금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013.7.)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 ❏ 근거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교육규칙 제17조
- ❏ 구성
 - 위원장: 평생교육건강과장
 - 위 원: 각 과 공무원 중 1명
-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심의대상
 -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 포상종류
 - 포상금 지급액
 -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 ❏ 출석요청: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7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무는 아니나, 실제 포상금 신고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각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습자의 인권 보호(체벌 및 인권유린 행위 금지)

- ❏ 근거 : 학원법 제17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조례 제2조제3항, 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6호, 제57조,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 내용
 1.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 교육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3. 생활지도 철저히 학원 내 학생 폭력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 위반
 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경중에 따라)에 의한 벌점 부과
 2. 청소년 보호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
 3. 아동학대 행위의 경우 등록말소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개념

- **아동학대** :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범죄** :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벌 또는 수강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 수강명령 등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으로 형벌과 병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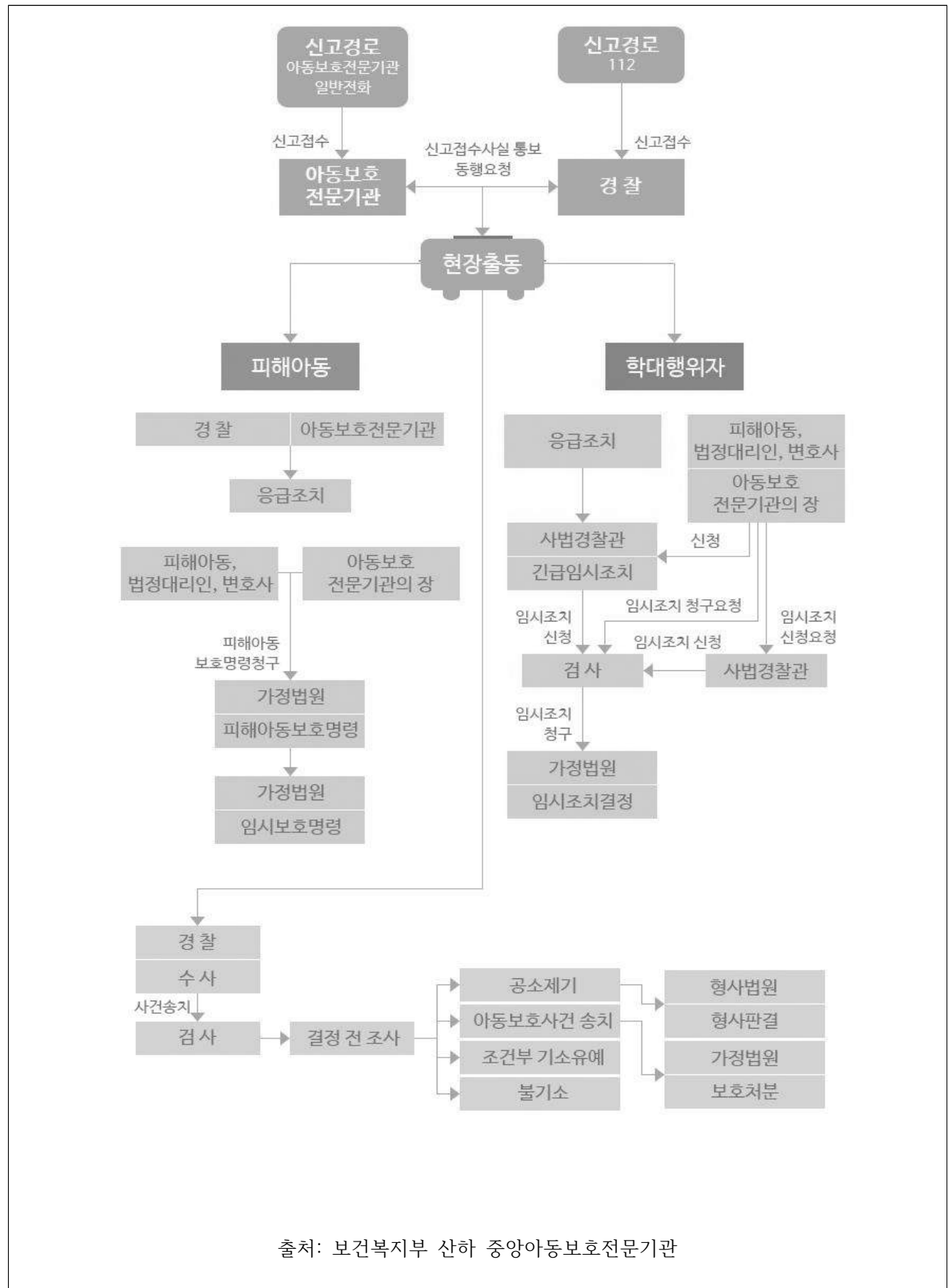
☑ 아동학대 범죄의 종류 및 내용(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구분	업 종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상해 / 특수상해 / 폭행 / 특수폭행 / 폭행치사상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	유기 / 영아유기 / 학대 / 아동학사 / 유기 등 치사상
체포와 감금의 죄(형법 제29장)	체포, 감금 / 중체포, 중감금 / 특수체포, 특수감금 / 미수범 /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협박의 죄(형법 제30장)	협박 / 특수협박 / 미수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31장)	미성년자 약취, 유인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 인신매매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미수범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	명예훼손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모욕
주거침입의 죄(형법 제36장)	주거·신체수색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형법 제37장)	강요 / 미수범
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9장)	공갈 / 특수공갈 / 미수범
손괴의 죄(형법 제42장)	재물손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제6조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기타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아동학대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민간자격 표시의무

-  최근 학원 등에서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육(교습)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표시의무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표시의무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원 등 운영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의 시험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표시의무 준수 사항을 꼭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A. 네. 표시의무는 소비자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시의무 사항은 주 표시란을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표시란'이란 무엇인가요?

A. 주표시란은 소비자가 민간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상, 민간자격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자격 소개란(메뉴)'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도 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민간자격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격에 대하여 표시의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A. 네. 표시의무 준수 사항은 자격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자격 수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한 화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연결 또는 파일(한글, PDF 등) 탑재를 통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쇄물 등을 통해 자격을 광고한다면 앞서 안내한 '권장표시사례의 인쇄매체 지면광고'를 참고하여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기재란이 협소한 경우(휴대전화 문자 혹은 팸플렛, 포스터 등에 광고), 표시의무 사항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광고 기재란이 협소하더라도 표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 실시 전에 표시의무 명시 분량을 감안, 광고 매체 및 면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 4. 25.)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개인정보 처리방침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목적 : 학원 교습소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기 위함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본사항
 - 학원 교습소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하며,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안내해야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을 위한 동의 획득 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내용이 일치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 및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정보주체가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이 지침은 온라인·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운영하지 않는 등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1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함
 -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립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 영 제31조 제3항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함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의 교육 이수하여야 함
 - 위반 :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9
 - 내용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임
 - ※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삭제 <2020. 8. 4.>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서식

※ 법규상의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서식명	관련 법규 서식
1	학원 지도감독 증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이하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3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행정처분통지서	교육규칙 별지 제7호 서식
5	행정처분장	교육규칙 별지 제8호 서식
6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7	청문조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8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
9	문서열람(복사)신청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0	과태료 처분통지서	교육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1	과태료 납입고지서	교육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12	과태료 납부 독촉장	교육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교육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교육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5	과태료 수납부	교육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6	압류등기 촉탁서(안)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17	압류조서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18	재산압류 통지(기안)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19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20	압류해제조서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21	압류해제 통지(기안)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참 고 예 시 문

연번	서 식 명	비 고
1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예시	별지 1
2	학원 행정 처분(기안) 예시	별지 2
3	지적사항 시정결과 보고(서식) 예시	별지 2-1
4	청문 실시(기안) 예시	별지 3
5	청문내용(안) 예시	별지 3-1
6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안) 예시	별지 4
7	과태료 부과(기안)	별지 5
8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기안) 예시	별지 6
9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조치 알람(기안) 예시	별지 7
10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등기 의뢰(기안)	별지 8
11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 등기 의뢰(기안)	별지 9
12	무등록 학원 고발(기안)	별지 10
13	고발장	별지 10-1
14	무등록 학원(형태)시설 조사표	별지 10-2
15	무등록 학원 세무자료 통보(기안)	별지 11
16	무등록 학원 교습중지(기안)	별지 12
17	확인서	별지 13
18	성범죄·아동학대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전력 조회 요청(외국인)	별지 14

※ 서식은 업무참고용이며 각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사용

[별지 1-1]

학원 지도·점검표(예시)

1. 현황

학원명	운영자	위치	전화번호

2. 지도·점검 내용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 말소					
제2호	숙박시설 기준 미달	숙박시설 기준 미달		35	등록 말소				
제3호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25	50	등록 말소			
		설비(교구 포함) 기준 미달		10	20	30			
제4호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제5호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폐원)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폐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1개월이상 50만원	2개월이상 100만원	3개월이상 200만원	6개월이상 300만원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변경 미등록		10	15	20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 말소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20	40	6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15	20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5	50	등록 말소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제7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35	등록 말소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등록 말소				
			50% 이상 100% 미만	40	50	등록 말소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제8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제8호 의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을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과태료 부과 (유아교육법 제35조제1항)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제9호	거짓·과대 광고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삽지광고 등	거짓	35	등록 말소				
			과대	20	40	등록 말소			
제10 호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거짓 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과태료 부과 (미게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게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과태료 부과 (미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고지 위반	교습비등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으로 고지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고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고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일부 미반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부 미반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50	등록 말소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50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	거짓으로 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등록 말소			
		2시간 초과 이상		50	등록 말소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제10 호	원칙 세부내용 위반	기 타				5	10	15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20	40	60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 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5	10	15			
	등록증명서 게시 위반	등록증명서 미게시				10	20	3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록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비치·미관리)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10	20	30			
		과태료 부과		1개월이상	2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같은 시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초과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 ~ 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등록 말소			
		기준미달				20	40	60			
		과태료 부과	10일 이하	11일~ 20일	21일~ 30일	31일~ 60일	61일~ 90일	91일 이상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 원	150만 원	300만원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등록 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거부·방해·기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명령 불이행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정지 처분 일수의 2배*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 말소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과태료 부과 (미보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보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70만원		150만원		300만원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등록 말소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35	등록 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11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등록 말소					
제12호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2호의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위반)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직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미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위반)		250만 원	5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법 제53조의3제1,3항을 위반	8만원					
비고								
1.“구분”은 위반사항이 해당하는 법 제17조제1항의 해당“호”를 말함								
2.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함								
3.“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을 부과함								
4. 4차 이후의 “반복횟수별 벌점”은 다음과 같음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2024.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학원 직 _____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학원의 (정기, 특별, 민원)실태점검 결과 벌점의 합계가 _____점으로 행정처분 () 및 과태료 부과(₩)에 해당됨을 보고합니다.

조사자 : 소속 00교육지원청 직 지방교육행정00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00교육지원청 직 지방교육행정00 성명 (서명 또는 인)

담 당	팀 장	과 장	결 재

[별지 1-2]

교습소 지도·점검표(예시)

1. 현황

교습소명	운영자	위치	전화번호

2. 지도 · 점검 내용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제2호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폐지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 변경 미신고		30	60	폐지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10	15	2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10	15	20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폐지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폐지				
			50% 이상 100% 미만	40	50	폐지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4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폐지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제4호 의 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소를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제5호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거짓 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과태료 부과 (미게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게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과태료 부과 (미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고지 위반	교습비등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으로 고지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고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고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폐지			
		과태료 부과 (일부 미반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부 미반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폐지			
		2시간 초과 이상		50	폐지				
제5호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5	10	15			
	신고증명서 게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게시·미제 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고증명서 내용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10	20	30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표시 위반	미표시·거짓 표시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비치·미관 리)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개월 이상 휴소 미신고	1개월 이상 휴소 미신고				10	20	30				
		과태료 부과 (휴소·폐소 미신고)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같은 시간에 해당시설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초과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 ~ 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폐지				
		기준미달				20	40	60				
		과태료 부과	10일 이하	11일~ 20일	21일~ 30일	31일~ 60일	61일~ 90일	91일 이상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 원	150만 원	300만원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폐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폐지					
		과태료 부과 (거부·방해·기 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 명령 불이행 (*2배 해당 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폐지)				정지처 분의 일수의 2배*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폐지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보고(제출)				35	50	폐지				
		미보고(제출)				15	30	45				
		과태료 부과 (미보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보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70만원		150만원		300만원						
계산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 거				40	50	폐지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30	60	폐지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포함)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제5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교습소 시설이용 불법과외, 교습소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35	폐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폐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6호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폐지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위반)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직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미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위반)		250만 원	5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법 제53조의3제1,3항을 위반	8만원					
제7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 스 운행 중 사고	폐지					
비고								
1.“구분”은 위반사항이 해당하는 법 제17조제2항의 해당“호”를 말함								
2.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면 이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함								
3.“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을 부과함								
4. 4차 이후의 “반복횟수별 벌점”은 다음과 같음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2024 . .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 교습소 직 _____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교습소의 (정기,특별,민원)실태점검 결과 벌점의 합계가 _____점으로 행정처분
() 및 과태료 부과(₩)에 해당됨을 보고합니다.

조사자 : 소속 00교육지원청 직 지방교육행정00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00교육지원청 직 지방교육행정00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1-3]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예시)

1. 현황

개인과외교습자명	위치	전화번호

2. 지도·점검 내용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제2호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중지 1년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10	15	20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중지 1년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중지 1년	중지 1년			
			50% 이상 100% 미만	40	50	중지 1년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4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중지 1년	중지 1년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제5호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과태료 부과 (미게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게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5	10	15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 (미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고지 위반	교습비등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고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거짓고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중지 1년			
		과태료 부과 (일부 미반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부 미반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중지 1년			
		2시간 초과 이상		50	중지 1년	중지 1년			
	신고증명서 게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게시·미제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과태료 부과 (미비치·미관리)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중지 1년	중지 1년				
제5호	중지 명령 불이행	중지 명령 불이행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과외교습중지 1년)		중지처 분 일수의 2배*	중지 1년	중지 1년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중지 1년			
	신고증명서 제시 위반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10	20	3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벌점 부여	과태료	점검 결과 (위반사항)	
				1차	2차	3차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보고(제출)		35	50	중지 1년				
		미보고(제출)		15	30	45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30	60	중지 1년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30	60	중지 1년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35	중지 1년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6호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3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위반)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비고										
1.“구분”은 위반사항이 해당하는 법 제17조제3항의 해당“호”를 말함										
2.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함										
3.“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을 부과함										
4. 4차 이후의 “반복횟수별 벌점”은 다음과 같음(단, 3차시가 “중지1년”인 경우 4차 이후는 모두 “중지 1년”으로 함)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2024 . .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개인과외교습자의 (정기, 특별, 민원)실태점검 결과 벌점의 합계가 _____점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해당됨을 보고합니다.

조사자 : 소속 00교육지원청 직 지방교육행정00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00교육지원청 직 지방교육행정00 성명 (서명 또는 인)

◇ 교습비등 징수 현황

과 목 별	교습비등				초과액 (원)	초과율 (%)	수강 인원 (명)	비 고
	등록		실제					
	교습시간 (분)	등록액 (원)	교습시간 (분)	징수액 (원)				
기타경비내역)								

강사	■ 채용등록 : 명 ■ 채용등록 강사명단 :	■ 현재인원 : 명			
		■ 채용 미등록자수 : 명 ■ 해임 미등록자수 : 명 ■ 무자격 강사수 : 명			
현 강사현황					
담당과목	성 명	최종학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비고

[별지 2]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00보습학원 (설립·운영자 000) 귀하

(경유)

제목 학원 행정 처분

1. 귀하께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에 의하여 [붙임1. 행정처분통지서]와 같이 행정처분하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학원운영을 정상화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20 . . () 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3. 위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교육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부.

2. 시정결과보고서식[별지2-1] 1부. 끝.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2-1]

학원(교습소)

20 . . .

수신 서울특별시OO교육지원청교육장

참조 평생교육건강과장

제목 지적사항 시정결과 보고

1. 평생교육건강과 - (20 . . .)의 관련입니다.
2. 우리 학원(교습소) 실태점검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지 적 사 항	시 정 내 용

붙임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학원(교습소)

성명 : (인)

[별지 3]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문 실시

1. 우리 청의 실태조사 결과 별점 00점으로 확인된 00보습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정처분)에 의거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며,
2. 행정처분(등록말소) 이전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 실시 내용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일시 : 20 . 00. 00() 오전 10:00

나. 청문장소 :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1) 소속 : 00교육지원청 00과 0000
- 2) 직위 및 성명 : 지방교육행정00 000

-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청문내용(안)[별지 3-1] 1부.
3. 청문조서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4. 청문주재자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4]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자 ○○보습학원(설립·운영자 ○○○)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우리 청에서 귀하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금○○,○○○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니,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 . . ()까지 우리 청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준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5]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00보습학원장(설립·운영자 000)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1. 관련: 평생교육건강과-000(20 . .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20 . . . ()까지 농협중앙회 지점에 납부하시고 납부한 영수증의 사본을 우리 교육청으로 제출 (우편, 전송 등)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징수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실 경우 [붙임 3]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과태료 처분 통지서[교육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2. 과태료 납입고지서[교육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1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교육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6]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서울00지방법원장(민사신청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같은 규칙 제31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하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00보습학원 설립·운영자 000
2. 생년월일: 1900. 00. 00.
3. 주 소:
4. 처분일자:
5. 처분사유: 교습비등 미게시
6. 처분근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 붙임 1. 과태료처분시행문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3. 과태료 납입고지서 사본 1부.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7]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자 00보습학원(설립·운영자 000)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조치 알림

1. 관련 : 평생교육건강과-0000(20 . .) 「과태료 부과」
2. 귀 원은 교습비등을 미게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우리 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8]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00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 등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5조, 제56조)에 의거해 불임과 같이 재산(자동차) 압류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재산압류등기 촉탁서[(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1부.
2. 재산압류조서 [(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9]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00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압류 말소(해제) 의뢰

1. 관련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000(20 . .)
2. 위 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지방세징수법 제64조에 의거, 불임과 같이 재산 압류말소(해제)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1부.
2. 압류해제조서[(준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1부. 끝.

서울특별시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0]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서울00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무등록 학원 고발

- 1. 평소 교육행정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고발하니,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조사일)	운영자	생년월일	자택주소	운영장소	위반 사항	처분근거
0000 (20 . .)	000	00.00.00.	00구 00로 000-0	00구 00로 00길 000-0	무등록 학 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 붙임 1. 고발장[별지 10-1] 1부.
2. 실태조사표[별지 10-2] 1부.
3. 증거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협조자
시행
우
전화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별지 10-1]

고 발 장

1. 고발인

- 성 명 : 서울특별시OO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로 000

2. 피고발인

- 성 명 : O O O(생년월일 : 00.00.00.)
- 주 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로 000

3. 위반사실 및 적용법규

구 분	종별	명 칭 (분류)	운영자	운 영 장 소
		00000 (무등록학원)	000	서울특별시 OO구 OO로 000 (Tel.)
내 용	위 000은 상기 장소에서 무등록학원을 운영하고 있기에 형사고발함. 1. 운영기간 : 20 . 월 ~ 20 . 월 경 조사일 현재 2. 수강생수 : 00명 3. 교습과정 : 보습 4. 수 강 료 : 100,000원~200,000(90분/1일, 5회/1주일) 5. 모집대상 : 초·중학생 6. 강사 및 직원 : 운영자 외 2인 7. 운영형태 : 위 000은 상기 장소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습계열을 교습함.			
처 벌 근 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20 . . .

서울특별시OO교육지원청교육장

OO경찰서장 귀하

[별지 10-2]

무등록 학원(형태)시설 조사표

명칭			연락처	Tel)	
				HP)	
소재지					
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습과정					
수강생현황 (대상, 인원)					
수강료 (교습비등, 교습시간)					
강사현황					
시설현황	강의실 :	실	사무실 :	실	기타시설 :
운영기간	20 . . . ~ 20 . . . 조사일 현재				
기타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직명 성명 (인)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직명 성명 (인)

결 재	담당자	평생교육학원 관리팀장	평생교육 건강과장
			전결

[별지 11]



서울특별시OO교육지원청

수신자 OO세무서장(소득세과장)
(경유)

제목 무등록 학원 세무자료 통보

- 1. 평소 교육행정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무등록 학원에 대하여 세무 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구분)	운영자 (생년월일)	자택주소	교습장소	위반사항 (현지 확인사항)
OOOOOO (무등록학원)	OOO (00.00.00.)	OO구 OO로 OOO	OO구 OO로 OOO	○ 무등록 학원 운영 - 기간 : 20 . 월~ 조사일 현재 - 대상 : O명(초·중학생) - 과목 : 보습 - 교습비등 : 10만원~20만원

끝.

※ 참고 법률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OO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2]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

수신자 000000(000님)

(경유)

제목 무등록 학원 교습중지 알림

1.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하고 교습을 하여야 하나, 귀하께서는 우리 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하는 해당 시설에서의 **교습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 담당자(☎02-0000-000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해당 기관의 간판(표지물 등)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② 해당 기관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끝.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
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별지 13]

확 인 서

직 급 :
성 명 :
연 락 처 :

위 사실을 정히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_____ (서명)

결 재	담당자	평생교육학원 관리팀장	평생교육 건강과장
			전결

[별지 14]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수신 ○○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2024년 성범죄·아동학대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전력 조회 요청
([외국인]학원·교습소 종사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4년 연간 취업제한 점검을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 종사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조회 요청내용
 - 학원·교습소 종사자 : 성범죄 경력(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취업제한 명령)
 - 개인과외교습자 : 성범죄 경력(취업제한 명령)
 - 요청 사유 : 행정공동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 불가(외국인)
 - 조회 대상 : 총 000명, 세부 내역 [붙임] 참고
 - 회신 기한 : 202○.○○.○○(월)까지

붙임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평생교육학원관리팀장

평생교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우
전화



학원 등 시설 안전관리

1.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285
2. 화재 발생시 행동 요령	287
3.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288
4. 중대 재해 처벌 안내	289
5.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291
6. 안전대처를 위한 도움자료	294



1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 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내용

1. 시설 관리

- 비상대피로를 평소에 확인하고 비상구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 소화기는 실별로 구비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둔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전기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코드)를 빼두고 실내 냉, 난방기는 꼭 끄고 퇴근한다.
- 난로 1-2m 이내에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안전 관리 의무

○ 안전관리 방안

- 수강생에게 사전에 비상구 등 대피로를 안내해 주고 화재에 대비한다.
-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 발생 시 대피하여 모이는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
- 강의실 및 복도에 비상 탈출 경로 안내 표시물을 부착한다.
-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안내문을 게시한다.
-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갖추어 놓는다.
- 학원 구조 및 비상구 위치 등 건물 현황 숙지
- 소화기 등 초기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

○ 학원 운영자·직원 등의 안전관리 의무(다중이용업소 및 기숙학원)

- 학원장 및 직원(강사 등)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영업개시 전)
-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 다중이용업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19신고 및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행동요령 숙지

※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학원

- 시설면적 570㎡ 이상
- 시설면적 190㎡ 이상 ~ 570㎡ 미만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두 학원의 시설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학원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 단,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3. 화재 발생 대비 비상 조직

- 화재 발생 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재 대응 역할분담이 중요
- 화재 발생 시 조직표를 사무실 등에 부착하여 개인별 임무 숙지



4. 화기책임자 지정

- 각 실별로 화기책임자를 지정
- 화기책임자 임무
 -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 유지

[화기책임자 지정 예시표]

층 별	실 별	화기책임자	서명(인)
1층	강의실1	김사 000	
1층	강의실2	김사 000	
1층	강의실3	김사 000	
2층	교무실	최영 000	
2층	휴게실	최영 000	
-	-	-	
-	-	-	

5.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 학원(교습소) 현황

학원(교습소)명	학원(교습소)명(간략)			FAX
전화번호	주소	지점	연락처	

※ 사고 현황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간	분
사고장소					
사고인원					
사고사망	인명피해	재산피해	대피인원	피해인원	피해재산
사고사망	인명피해	재산피해	대피인원	피해인원	피해재산

(학원(교습소)장) _____

※ 사고자 현황(학생)

이름	성명	학급명	학번명	사고일시	사고

※ 사고자 현황(직원 등)

이름	성명	소속	사고일시	사고

※ 사고발생 후 조치 내용

※ 기타 사항

20__년__월__일

학원(교습소)장

[서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학원(교습소)은 사고 발생 즉시 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결과 보고

2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0 화재가 올릴 때

1.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0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비상구 활용]



[완강기 활용]



[경량칸막이 활용]

3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0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1. 튼튼한 책상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튼튼한 책상의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책상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2. 강의실 등 학원에서 나갈 때는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3.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4.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5.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4 중대 재해 처벌 안내

❶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❷ 내용

1. 적용 범위

- (중대산업재해) 바닥면적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학원
- (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업소에 속한 학원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적용 대상

-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구분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별도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사립 중고(이사장), BTL 소속업체는 별도 중대재해법 관련 대책 수립

-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중대재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경영책임자(학원·교습소 운영자)의 주요 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산업재해)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학원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업종이 아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중대시민재해)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1조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수행 ②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④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⑤ ① ~④ 이행점검 ⑥ ⑤결과에 따른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등 ⑦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⑧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구분	경영책임자	기관 양벌규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10억원 이하의 벌금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5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1. 화재 시 행동요령

단계별	학원에서의 화재 시 행동요령
발생 전	·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위치를 익혀둡니다. ·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알아둡니다. · 학원 화재에 대한 위험을 상상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발생 시	· 안전한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 시에는 시설에 익숙한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 자세를 낮추고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 화재 시 연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을 열기 전에는 방화문에 손등을 대보거나, 손잡이를 잡아 뜨거운지를 판단하여 탈출합니다. · 화재현장의 연기 속에는 뜨거운 열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호흡은 짧게 끊어서 쉽니다. · 피난경로 폐쇄 시 - 다른 방향의 계단(층마다 2개의 계단이 있음)을 활용하여 지상층으로 피난 - 지상층으로 피난 불가 시 옥상 층으로 피난(옥상 문은 화재 시 자동/수동 개방) - 화재/폭발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옥상 층 피난은 안전하지 않음
발생 후	· 대피 후 재집결 장소에서는 다시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혹시, 같이 나오지 못한 가족, 동료가 있으면 구조대에게 신속히 위치, 인원 등을 알려주어 구조에 협력합니다. · 가족, 동료들의 안정을 위해 다 함께 격려해 줍니다.
주의 사항	·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 개인소지품을 챙기거나 불필요한 행위 금지합니다. · 고립 시 행동요령 - 고립 시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소방당국에 알립니다. -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창문으로 이동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쉬운 도구 등을 활용하여 위치 표시합니다.

2. 지진 시 행동요령

단계별	학원에서의 지진 시 행동요령
발생 전	· 지진이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알아둡니다. · 학원 이용 전 가족, 친구들과 사전에 연락을 해 둡니다. · 학원 시설에 대한 위험을 상상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발생 시	·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상황 파악 후 행동합니다. · 안내방송 및 대피유도 요원에 따라 질서 있고,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 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천정의 부착물,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지는 지역을 피해서 대피합니다. · 대피 시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건물의 외벽 붕괴 위험성에 대비하여 벽면보다는 건물의 중앙 직선으로 나가야 합니다. · 공원 등 건물 붕괴에서 안전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발생 후	· 스마트폰, 비상방송 등을 통해 재난사항을 파악합니다. · 여진에 대비하여 함부로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구조 활동을 돕습니다.

3. 압사/추락 시 행동요령

단계별	학원에서의 압사·추락 시 행동요령
발생 전	· 학원의 안전시설에 대해 미리 알아둡니다. · 학원 압사·추락에 대한 위험을 상상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 평소 시설관리자 또는 학원 관계자로부터 비상상황 시 요령 등 유의사항을 잘 듣고 위급상황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발생 시	· 양팔을 가슴으로 모아 팔짱을 끼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여 가슴 압박 사고를 대비합니다. · 팔짱을 낀 상황이 안되면 가방 등을 가슴에 대어 완충작용으로 가슴을 보호하여 질식사고를 대비합니다. ·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추락,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발생 후	· 혹시, 같이 나오지 못한 가족, 동료가 있으면 구조대에게 신속히 위치, 인원 등을 알려주어 구조에 협력합니다. ·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구조 활동을 돕습니다.

4. 붕괴 시 행동요령

단계별	학원에서의 붕괴 시 행동요령
발생 전	• 붕괴에 대한 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학습합니다. • 외출 시 가족, 친구들과 사전에 연락을 해 둡니다. • 학원에 설치된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해 둡니다.
발생 시	• 학원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시 -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119, 112, 가까운 주민 센터에 신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 학원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 건축물 붕괴 발생 시 시설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밖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해 확인 • 붕괴된 학원 건축물 내부에 있을 시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계단실,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으로 대피합니다. -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을 우선하여 탈출하도록 합니다.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 붕괴된 학원 건축물에 매몰 시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에 위치를 알립니다. -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발생 후	• 학원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 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붕괴시설 주변에서는 유리 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6 안전대처를 위한 도움 자료

1. 안전점검표

학원(교습소) 안전점검표				
● 학원(교습소)명: _____ ● 점검일자: _____ ● 점 검 자: _____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아니요"세부내용 (위치, 상태 등)
	예	아니오	비고	
① 시설 안전				
· 청문은 열고 닫는에 힘들지 않나요?	☐	☐	☐	
· 내·외부 및 현장 마감재는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은 없나요?	☐	☐	☐	
· 건물 주변 지반침하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나요?	☐	☐	☐	
· 옥외 간판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있나요?	☐	☐	☐	
· 처단은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나요?	☐	☐	☐	
② 전기 안전				
·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적 정기검사(점검)를 받았나요?	☐	☐	☐	
· 전원 차단장치(스위치)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나요?	☐	☐	☐	
· 분전반, 콘센트, 전기제품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은 없나요?	☐	☐	☐	
· 누전차단기 알람의 황색 또는 적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거나 내려가나요?	☐	☐	☐	
· 전선, 플러그, 콘센트의 외부에 손상된 부분은 없나요?	☐	☐	☐	
· 분전반은 잠금장치로 잠가져 있나요?	☐	☐	☐	
· 옥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의 콘센트는 방수 덮개를 사용하고, 미사용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 두었나요?	☐	☐	☐	
· 퇴근할 때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있나요?	☐	☐	☐	
· 비인가 전선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나요?	☐	☐	☐	
③ 가스 안전				
· 가스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점검)를 받았나요?	☐	☐	☐	
· 가스렌지 등 연소기 사용전후 충분히 환기를 하셨나요?	☐	☐	☐	
· 배관 이용부에 바닷물을 받았을 때 거품이 나는지 확인했나요?	☐	☐	☐	
· 가스기구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배관 끝 부분을 씌워 플러그로 막았는지 확인했나요?	☐	☐	☐	
· 배기통은 이탈되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고 내열 실리콘으로 붙어 없어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요?	☐	☐	☐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의 설치부 전원 절단에 불이 붙어있고 있고 열고 닫는 버튼으로 밸브 차단기가 작동 하나요? ※ 배관 끝에 유스톱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연접자가 설치된 가스기구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	☐	☐	☐	
④ 소방 안전				
· 소화기의 압력(충압)이 표색선에 위치를 적정할가요?	☐	☐	☐	
·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는 초과하지 않았나요?	☐	☐	☐	
· 피난유도선은 말아보기 쉽게 설치되어 있나요?	☐	☐	☐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을 항상 불이 꺼져 있나요?	☐	☐	☐	
· 화재용 비상 조명등은 정상 작동하나요?	☐	☐	☐	
· 비상구는 견책을 바람막이로 열리며,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없어 있지 않나요?	☐	☐	☐	
· 화재시 자동문을 열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나요?	☐	☐	☐	
⑤ 보건·위생 안전				
· 매년 공기 질을 측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청소 환기를 자주하고 있나요?	☐	☐	☐	
·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수시로 알른, 소독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즉시 폐기하고 있나요?	☐	☐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비치하였나요?	☐	☐	☐	
⑥ 화재·안전 특성 안전				
· 화장실 안에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었나요?	☐	☐	☐	
· 강의실의 조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x 이상인가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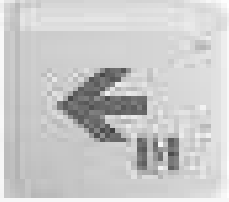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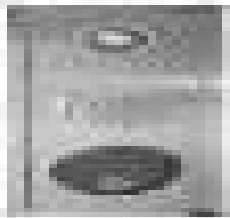
2. 피난안내도

- 해당 학원에 부착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비상 출입구 등을 학원 이용 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유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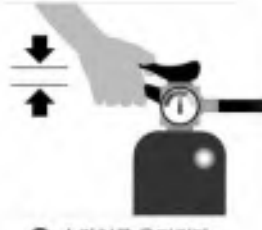
- 해당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등의 종류를 파악하고, 비상시 작동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발신기 / 비상벨]	[시각경보기]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직통계단의 계단실에 설치되어 있다.	파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 및 계단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를 알릴 수 있는 시설로 화재 시 벨이 울려 화재를 인지할 수 있다	창·장애인을 위한 비상벨을 대산하여 화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이 깜빡거린다.

4. 소화기 사용법

- 해당 학원에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소화기 설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꼭 움켜쥐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5. 완강기 사용법

- 해당 학원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위기상황 시 이용자들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용법 교육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6.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해당 학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며 사용법 등을 교육



심장충격기 켜기

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장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합니다.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 완료 시 음성지시를 실시합니다. 심장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압박됩니다. 압박하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합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7. 소화전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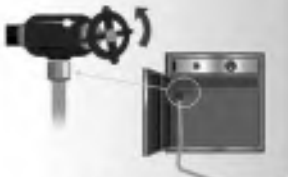
- 해당 학원의 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해 교육



① 문을 연다.



②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③ 밸브를 돌린다.



④ 불을 향해 쏜다.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8. 심폐소생술

- 위기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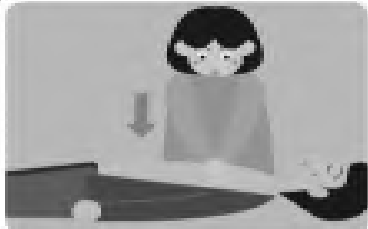
환자의 반응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119 신고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호흡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쪽지를 쥔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압박깊이: 5cm, 압박속도: 분당 100~120회)



기도 개방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회복자세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놓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가슴압박 위치
성인과 소아 심경지 환자에서
가슴압박의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1/2입니다.



질의응답

1. 학원(독서실) Q&A	301
2. 교습소 Q&A	343
3. 개인과외교습자 Q&A	358
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73
5.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393



학원(독서실) Q&A



학원 설립·폐원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학원 등록 관련 문의

❓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검도학원이 학원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하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이며,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검도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교습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체육시설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23)

☙ PEET 기숙학원 개원 가능 여부

❓ PEET(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은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등 4과목을 시험칩니다. 일종의 약학대학입학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학원분류상 검정고시 분야로 봐도 되는지요? 또 이와 관련하여 기숙학원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정되며, 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인·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ET과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12.5.)

❧ 지자체 설립, 민간업체 위탁운영 중인 평생학습시설의 학원시설 전환등록

❶ “영어마을”이라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민간법인이 위탁받아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우에도 교육청에 해당 시설을 학원시설로 수정 등록해야만 하는 것인지?

- 1) 등록의무가 있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면 현재 위탁받은 시설물이 학원시설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제재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2) 추가로 전환등록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현 위 위탁협약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금년 중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 위탁협약 기간이 유예기간에 포함되니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인이란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운영 중인 영어마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였다면 학원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12.3.)

❧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프로그램의 학원 등록여부

❶ 최근 지자체 주민센터 내의 자치활동-문화센터, 요가, 등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런 주민센터 내의 자치활동을 할 경우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강사료와 실비 명목으로 저렴하게 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주민이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활동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 따라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인(私人)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학원법상의 학원의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7.10.)

✎ 지자체 공모,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원법 적용 여부

❶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법이 사인에만 해당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비영리단체에 지원되고, 지원받은 비영리단체에서 만3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학원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학교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고, 아파트 관리비로 아파트 주민(만3세~고등학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원법에 적용이 되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 사인(私人)이란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인(私人)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보조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원법 제2조 제1항 사목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6.8.11.)

✎ 작은도서관 내에서의 교습행위 학원법 위반 여부

❶ 문화센터의 도서관 내 영어·수학 등 교과목 교습행위가 학원법 위반인지?

☞ 학원법 제2조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관할 구청 유관 부서로부터 ‘작은도서관’ 허가를 받은 사립도서관이라 할지라도,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상 교습을 실시하였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5.18.)

국립대 강사 학원 설립자 등록 가능 여부

❓ 국립대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학원 사업을 병행하고 싶은데, 강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대학의 강사의 경우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원법」 제3조에 따라 대학의 강사의 경우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에도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의 강사가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설학원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12.4.)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의 학원 설립자 등록 가능 여부

❓ 형사사건으로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이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3호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한 동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2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5.5.13.)

스터디카페 형태의 시설의 학원(독서실) 등록 대상 여부

❶ 학습장소로 제공됨과 동시에 다른 목적(식음료 이용, 음악감상, 직장업무 등)으로도 제공되는 스터디카페 형태의 시설이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최근 ‘스터디카페’라 일컫는 학습장소와 카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 이에 대한 학원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바, 독서실에 대해 학원법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관할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 후 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의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 학원법상 독서실 해당 여부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12.19.)

참고

※ 스터디카페 불기소결정서

❶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2017. 3. 20.부터 2017. 7. 17.까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도서관’이라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중략)

○ 하지만 피의자는 위 시설은 소위 ‘스터디 카페’로서 이용자들로부터 음료, 다과 등을 판매하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용자들은 공부, 영화,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학습장소 제공만을 목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독서실은 운영자에 의해 학습목적으로 그 이용이 제한되는 반면 위 ‘스터디 카페’의 경우
①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는 점, ② 이용요금은 자유이용 또는 월정액제로 선택적인 점, ③ 이용고객은 학습 외 영화, 음악감상, 게임 등 다양한 목적의 고객인 점, ④ 지정좌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⑤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점, ⑥ 학습관리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객의 선택에 따라 학습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여 학원법 제정 당시 상정한 ‘학습목적으로 학습자에게만 제공되는 학습공간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서울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8399호 2017.12.6.)

✧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등록 가능 여부

❶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RN)에 응시하기 위한 교습과정을 교습을 하는 시설에 대한 학원 등록이 가능한지?

☞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2014두42179, 2016.7.2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시한 바,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준비를 위한 시설로 학원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의료와 관련된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준비를 위한 시설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간호업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습내용상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2의 교습과정상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이 ‘간호보조기술’ 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 간호사 면허 과정의 교습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향후 학원법 시행령 개정시 교습과정의 신설 등을 통해 동 문제점을 개선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9.6)

✧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대상

❶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 시 고3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 소유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만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은 입학이 불가능한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는 직업기술분야에 속하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09.23.)

❧ 학원 내 강의를 녹화하거나 실시간 송출할 경우 원격학원 등록 여부

❶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에서 소속강사의 강의를 녹화 혹은 실시간 송출하여 해당 학원 강의실의 학습자가 교습을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운영해야 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방법에 대한 사항은 학원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강의를 녹화 또는 실시간 송출하여 학원 내 강의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습 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갖춘 강의실 내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 이러한 학원을 원격교습학원의 형태로 볼 수는 없으며 일반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8.10.)

❧ 독서실의 동영상 강의 또는 학습자료 제공 시 학원 등록 대상 여부

❶ 독서실에서 동영상 강의 또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독서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의 동영상 강의 제공시 단순한 학습장소 제공이라면 학원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나, 독서실에서 제작·제공하여 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원격교습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시설로 등록·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습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단순한 자료 제공이라면 학원법상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이 이루어질 경우 학원으로 등록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 온라인 학원의 오프라인 평가(시험) 가능 여부

📌 온라인 학원 운영에 있어 온라인상에서 강의나 수강은 사용자 편의성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자체 시험이나 평가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해야만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오프라인 강의장을 통해서 업무 제휴 또는 파트너 계약을 준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 등록 시 시설, 설비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학원으로 등록될 장소의 면적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원격교습학원은 학생들의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업소, 시설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한정하며, 학습자를 집합하여 이루어지는 교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12.16.)

📌 학원의 휴원과 폐원의 차이점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원 및 폐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의 휴원과 폐원은 어떻게 다른지 학원법 소관 중앙 행정 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원은 학원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학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운영 중단의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시설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원은 기존시설에서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장소 변경하지 않고 학원시설을 종국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6.11.)

☎ 폐원 신고가 안된 학원 소재지의 학원 신규 등록 가능 여부

❏ 6월 전 경매로 근린시설을 낙찰 받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학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전 학원 운영자가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장소에서 학원 운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 학원 설립운영자의 소재 파악 및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학원 운영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 현재 위치에 학원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원을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학원 법령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학원 설립운영자가 고의 또는 미숙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하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학원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12.30)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종합학원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 성인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원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국어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어과정을 각각의 교습과정으로 보아 종합학원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 2에 따라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원의 종류를 교습대상으로 구분하고, 유아 및 초·중·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시간제한, 교습비 조정명령 가능, 유해시설과 동일 건물 내 입점 불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하나의 학원으로 등록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후 학원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4.11.)

✎ 요일을 달리할 경우, 취미반일 경우 학원법 적용 받는지

❶ 학원법 관련 10명이상 초중고에 대한 월, 수, 금 운영 후 나머지 일수에 대한 성인대상 수업 일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요? 교습과정이 아닌 운동, 취미수업일 경우의 10명이상 수업 시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요?

☞ 학원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월·수·금 동시 교습인원 5명, 화·목·토 동시 교습인원 5명일 경우 교습소로, 월·수·금 동시 교습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학원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 시 교습소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교 입학 시험 준비생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9인 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 또는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내용은 별표 1의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 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교습 대상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무용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현대무용 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취미반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12.2.)

✎ 드론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 등 설립(신고) 처리 안내

❶ ‘드론’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 등 설립(신고) 처리 안내

☞ 현행 법령 상 ‘드론’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말하며, 이를 활용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운영 시 벌칙 부과)

* 농약살포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 조종교육 등 - 향후, ‘드론’을 활용한 조종교육 등 학생 또는 성인 대상 교습과정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등록·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3.26)

🌿 댄스학원 설립 문의

❶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려는 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등록 요건을 갖추어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려는 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등록 요건을 갖추어 설립을 신청하는 때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용’ 교습과정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댄스’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함. 댄스스포츠, 평생직업교육 둘 다 가능함

*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국제표준무도’로서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아울러,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직업교육(취업)을 위해 예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댄스스포츠 포함) 교습이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 ① 성인과 분리하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습과정(반) 별도 운영
- ②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 준수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학원장과 강사 등 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의무적 실시
- ④ 댄스(댄스스포츠 포함)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관리를 통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

참고로, 성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2015두48655, 2018.6.21. 선고/ 대법원 판결(2013두15774, 2018.6.28. 선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07.26)

🌿 본관 이외에 별관 학원의 설립절차 문의

❶ 본관 이외에 별관 학원의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물을 달리하여 2관, 3관 등의 별관 학원을 운영할 때는 법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존 학원의 확장이 아닌 신규학원 설립으로 보며, 그 절차는 신규로 학원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학원설립 시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한 설립자(법인 또는 개인)가 여러 개의 학원을 설립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06.19.)

유학원 등록 문의

❏ 유학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무슨 법령에 의거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 유학원은 교습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알선' 하는 곳으로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 등록을 한 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학원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자유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9.05.01.)

학원 설립자 변경 시 행정처분 승계 여부

❏ 작은 보습학원 하나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인수자에게 행정처분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인수받으려고 하니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원설립자가 변경되면 행정처분도 승계되니까?

☞ 1.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임의변경, 수강료 초과 징수, 설립자 및 강사연수 무단불참 등의 여러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인이 아닌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으로써, 학원의 설립, 운영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인수하는 자가 해당 학원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전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당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질의응답, 2018.06.01.)

학원 명칭

학원 명칭이나 홍보물에 “영재·교육원”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로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입니다.
1. 학원 명칭이나 홍보에 “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2.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 학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선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는 고유명칭으로 사용가능하나, “교육원”은 학원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영재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학원 법령의 적용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2.18)

❧ 학원 명칭으로 대한민국 국호 사용 가능 여부

❶ 학원 명칭을 국호인 대한민국 ○○학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학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학원명칭은 ○○학원 등 사용하고자 하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원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고유명사 등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10.5.)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학원 종류 병행 표기 가능 여부

❶ 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병행표기가 가능한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각각의 학원 종류별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하나의 학원에 대하여 두 가지 학원 종류의 등록·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학원에 두 가지 학원을 병행 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12.10.)

❧ ‘스쿨’ 또는 ‘아카데미’의 학원 명칭 사용 가능 여부

❶ ‘스쿨’ 또는 ‘아카데미’ 등 학교를 뜻하는 영어단어를 사용하여 학원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의 입법취지는 각 학교가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어 학생들로부터 추후 졸업 시에 학력 미인정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이런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임에 따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교’ 명칭 사용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보통명사로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으며, 학원명칭에 ‘스쿨’ 또는 ‘아카데미’ 등을 사용하여도 학교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건축물 용도



수평거리의 측정 방법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서 “수평 거리” 측정방법은?

- 1) “수평 거리” 측정 시 출발점은 학원의 출입문부터인지 아니면 학원의 칸막이(벽체)로부터인지?
- 2) 수평 거리는 보통 물체 또는 사람의 이동 거리라고 볼 때,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계단을 통해서 아래층 “유해업소 출입구” 까지로 측정 가능한지?

☞ 문의하신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 은 학원이 2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를 2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학원과 유해업소 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6.30.)



학원의 내부 실측 방법

❓ 학원의 시설 규모에서 면적은 기둥과 복도를 제외하고 내부를 실측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내부실 측으로 한다면 칸막이도 제외되는지? 책장도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학원의 강의실 면적 측정시 실내의 내벽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원법 집행을 위한 시·도 학원 담당자 학원업무편람, 업무 지침 등을 통해 기둥이나 강의실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실의 최소 면적을 확보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강의실의 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은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를 놓고 강사의 교습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이며, 내벽 이외에 기둥 또는 벽면에서 돌출되어 실제 교습에 이용될 수 없는 부분 등이 있다면 제외하고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1.7.)

✎ 학원의 용도 분류

- ❶ 3층에 독서실(300㎡)이 영업 중인 기존 5층 건축물의 4층에 새로이 300㎡규모의 학원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학원과 별도로 독서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용도로 보아 신설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지목에 의거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여,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충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독서실은 학원과 별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시설로서 신설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로 보아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2013.12.11)

✎ 건축물 용도 산정 방법

- ❶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3호, ‘14.3.24) [별표1]에 따라서 근린생활 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면적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과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는 임차인으로 본다)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 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용도의 규모와 이용 상황을 감안한 것이므로,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건축법 시행령」 관련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 ②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아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국토교통부, 2014.5.8.]

✧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 부분 포함 여부

- ❶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 ☞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 부분 (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포함(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2013.12.10)

✧ 학원 설립 시 학원 용도 관련 문의

- ❶ 학원법 2조1호 및 2조2호의 「시설」은 학원법 및 그 관계법에 의할 때, ① 학원용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만을 의미하나요?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기재가 「공동주택 (아파트)」로 명시된 학원법 제2조3호가목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학원의 설립·등록」이 가능한가요?
- ☞ 질의하여 주신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6.5.)

✧ 원격학원 설립 시 허용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 관련

- ❶ ‘14.10.14.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을 통해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되었음.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설립시 허용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고,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학원의 설립시 허용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현행 오프라인 학원의 건축물 용도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7.10.)

☘ “생활편익시설” 용도 건축물의 학원 설립 가능 여부 관련

❶ 과거 건축물 대장 상 생활편익시설 용도 건축물에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 1999.9.29.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생활편익시설’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9.9.29. 개정 시 삭제되었으며, 제5조제1호의 기타 복리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10.17. 개정 시 삭제됨.

‘생활편익시설’로 표기된 대부분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울시청 건축과 유선답변과 아래의 국토교통부 최근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건축물대장상 ‘생활편익시설’로 표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확인 후 필요시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정리함.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2018.5.18.)

☘ 변경 등록 시 건축물 용도 적용 여부

❶ 구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학원에서 변경등록신청(위치, 교습과정, 시설·설비 변경 등) 시 “건축물 용도 등”을 신법에 의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위치, 시설·설비 외 건축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을 요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11.19.)

☘ 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 문의

❶ 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 건축법시행령 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면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세부용도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중장비학원이 건설기계 관련 운전학원을 말한다면,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과 함께 건축법령 상 같은 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2020.01.1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0.01.14.)

**유해업소****☘ '바'의 유해업소 범주 포함 여부**

- ❓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하려는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프집은 유해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술먹는 곳으로 바텐더들이 있는 곳)가 유해업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학교보건법상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입니다. 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업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다방 등), 일반음식점(음식, 한정식, 호프집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학교보건법의 적용이 되는 것은 이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운영하시고자 하는 “바”(술 먹는 곳으로 바텐더들이 있는 곳)가 노래를 하면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유해업소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노래를 하면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학교 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술을 판매하면서 노래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형태라면 유해업소에 해당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8.22)

☘ 성인콜라텍이 학교보건법 상 유해업소인지 여부

- ❓ 학교교과교습학원 설립 시 성인콜라텍이 유해업소에 해당되는지요? 유해업소가 아니라면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무도장이라고 표시되면 「학교보건법」의 무도장과는 별개로 인정이 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가까운 장소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하며, 귀하가 말씀하신 성인콜라텍이 무도장이라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해업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학생안전건강과, 2008.01.18.)

 강사 등

 음악학원에서 수학교육전공자를 강사로 채용 가능한지 여부

❓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음악학원 강사분이 수학교육전공자인데 이럴 경우 음악학원에서는 적법하게 강사를 채용한 것일까요? 음악학원에서는 음악관련 전공자가 채용되어야하지 않을까요?

☞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강사의 기준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강사 채용의 기준은 학력에 관한 기준이며, 그 기준을 만족할 시에는 적법한 강사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강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강사))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질의 응답 2018. 06. 22)

 외국 대학 휴학 중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

❓ 내국인으로 외국 대학 휴학 중입니다. 학원 강사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이 가능하다면 성적증명서나 수료증(수료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지요?

☞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대학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국인 강사 채용 관련 서류는 학원 등록 권한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학원 등록 관련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어 학원 강사 채용 및 관련서류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20.11.05.)

☪ 대학 재학생의 강사 자격 기준 충족 여부

- ❏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대학 재학 중인 자가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1.8.)

☪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충족에 대한 문의

- ❏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있어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재학 중인 자도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던데요. 한 대학 2학년에 중퇴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여 1학년을 마쳤을 경우 두 학교의 학점을 합해야 80학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동등학력이라 함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 내지 3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이수라 함은 단순한 학점의 합산이 아니라 순차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학생의 경우 대학 2년을 중퇴하고 다른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후 80학점을 이수하였다 할지라도 동등학력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1.25)

참고

※ 학원강사 학력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 사설학원의 영리추구와 결합한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학원 강사의 학력 제한은 정당성이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원강사 자격

-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속셈학원에서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자가 보습학원 강사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 학원 강사 자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제6호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라는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강사자격 기준에 학력요건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졸업으로 강화되면서,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부터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강사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96년 1월 1일 이전 학원 강사를 하였고 그 당시 2년 이상 전임의 교습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83호, 1995.12.30. 제3항>]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10.13.)

✎ 행정처분 받은 학원장이 학원 강사 등록 가능 여부

- ❏ 무등록으로 불법학원을 운영하다 벌금형을 받아 1년간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타 학원의 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지요?
- ☞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20)

✎ 방송통신대학교 2학년 수료 및 전문대학 산업체위탁 학사 취득 인정 여부

- ❏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4년제로 2학년까지 수료하면 이곳도 일반 대학교처럼 2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공업대학의 산업체 위탁(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졸업하면 이 또한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학원강사 자격기준 2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산업체위탁생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하였다면 학원강사 자격이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5)

✎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의 기준

- 현재 강사 기준에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교육청에 가지고 가면 강사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4년 과정 중 2년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는 강사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정의 이수는 개별대학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동 기준을 만족했다면, 현재의 신분이 재학, 휴학, 자퇴생 신분이어도 모두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10.13.)

✎ 기능대회 입상 경력에 따른 강사자격 부여 여부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미술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사자격과 관련하여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3에서는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강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법 제2조 제1항에,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원법시행령 제12조 학원강사 자격기준 [별표3] 제8호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법령에서는 기능과 예능을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시행령 제12조 학원강사 자격기준 [별표3] 7호의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으로 봄이 타당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술대전에서의 입상실적은 기능대회 입상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6.12.)

🌿 1회성 강사의 등록 여부

❓ 학원에서 워크숍세미나 등의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1회성의 특강, 작품 피드백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강사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학원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교습’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습’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고, 또한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와의 고용 관계에 따라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의 교습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와 학원설립·운영자의 고용관계 여부, 소득활동으로서의 교습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강사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세미나·워크숍 등의 경우까지 강사등록을 해야 한다면,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일시적·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익한 강좌가 위축될 수 있고 학습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에서 워크숍·세미나 등의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자 또는 일반인에게 별도의 비용 징수 없이 1회성의 특강, 작품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 자는 학원법에 따른 강사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6.8.10.)

🌿 원어민(중국인강사) 채용시 구비서류

❓ 원어민(중국인) 강사 채용시 구비서류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범죄사실 증명서와 역시 공증 받은 졸업증서 그리고 한국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다면 구비서류 중에 공증 받은 졸업증서 대신 한국 대학원의 수료증서 및 수료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강사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다면, 한국의 대학원 입학 시 중국에서의 대학교 졸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학원 수료증명서로 학력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사의 채용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오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9.17.)

🌸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학원강사 가능 여부

❏ 저는 외국인 아내(중국인 한족)와 결혼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국어 전문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만 합법적으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건가요?

☞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배우자 분이 외국인 국적인 경우는 대학졸업자 우리나라 국적인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동 규정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학원강사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4.17.)

🌸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 안녕하세요.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학력증명서에 자국 정부의 확인(apostille)을 받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에게도 해당 대학이 소재한 정부로부터 확인(apostille)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도 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강사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을 임의로 한국인 강사에게 적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공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에서 그 졸업증명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공증을 통해야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7.1.자 “외국서류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 따라 Apostille(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된 나라간의 공문서에 대하여 간편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아포스티유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및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영사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7.15.)

D2(유학비자)로 S3(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강사로 채용 가능 여부

- ❓ D2(유학비자)를 받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외국어 학원강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채용허가가 가능한지요?
- ☞ D-2비자 소지자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구자료를 갖추어 S-3(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며(법무부지침), 전공분야와 밀접한 분야의 외국어 강사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3.15)

외국인이 F-2-1 자격으로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 가능 여부

- ❓ 2005.9.25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되어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2-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리핀 여성이 F-2-1 자격으로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 하였습니다.
- ☞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동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며, F-2-1 체류자격 소지자가 학원강사로 활동할 경우 그동안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의 절차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학원강사 취업이 가능합니다.
- ※ 2011.7.25 학원법 개정으로 외국인강사의 채용시 서류(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 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10.26)

🌿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지 않는 외국인 강사의 검증 필요 여부

- ❶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지 않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규정에 따라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에 의하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지 않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규정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점 및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음

(서울시교육청, 2016.10.21)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는지,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탈북자의 강사 채용 시 증빙서류

- ❶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강사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학원등록을 하면서 본인이 학원의 강사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북에서 넘어올 당시 아무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강사채용을 할 시에 어떤 확인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일반 강사를 채용할시(내국인):주민번호, 주소, 성명,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문대졸이상)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어떤 확인을 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 새터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등에서 제반 사실을 확인하고 통일부 주관으로 일정 적응교육 등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은 새로이 신고 또는 부여받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원강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새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 통일부에서 개인별로 학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2006.7.7)

✎ 강사채용 시 성범죄조회에 관한 질의

-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학원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 2006.6.30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6.30 이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6.30 이전의 성범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6.30일 이전의 범죄는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범죄 및 대상기관의 종류·적용시점은?
- ☞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5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일 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2010.4.15일 부터는 대상범죄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 및 개인과의교습자까지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단시간(1일 강사, 1주일 강사) 근무자도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까?
- ☞ 단시간 강사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제도 안내책자, 2012.7.11)

✎ 교습 과정

✎ 법학과 관련된 교습과정 개설 가능 여부 질의

- ❓ 법학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항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평생직업 교육학원 > 인문사회, 자연 > 인문 사회, 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의 교습과정이 있습니다.
- ☞ 말씀하시는 ‘법학 관련 내용’은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담당하고 있어 학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0.01.10)

🌸 미술심리 상담의 학원법상 교습과정 포함 여부 질의

- ❶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을 매체로 한 “미술심리상담”의 학원법 상 교습과정(예능) 포함 여부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는」 교육과정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① 미술심리상담이 「학원법」에 교습과정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술을 통해 지식·기술을 향상을 위한 교습행위 인지, 심리 상담을 하는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리에 맞게끔 판단 되어야합니다.
- ② 아울러, 위 판단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시설로 등록해서 「학원법령」에 보호받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2.02.04)

🌸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❶ 보습학원에서 유치부(유아:만3~7세) 교습과정 등록 및 교습행위가 가능한지?

☞ 현행,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교습과목만 또는 대상을 포함한 교습과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습학원 교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대상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예능, 기타 분야의 학원에 유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모든 분야 학원에서 유아 대상 교습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12.10)

✎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습과정 가능 여부

❓ 어학원이라 하면 보통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습학원의 경우는 어느 곳에 속하는지 애매합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습대상과 상관없이 어학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교습과정의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국제화분야에 속하며 동 교습과정에 한국어를 포함하여 등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27)

✎ 만36개월 미만의 유아의 학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가능 여부

❓ 유아를 대상으로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만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 등)에서 영아(만3세 미만)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학원법」상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과정은 학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좌는 법령상 제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9.4.)

✎ 학원법상 진학지도상담(입시컨설팅)의 범위

❓ 학원법에 규율되어 있는 “상급학교 진학목적을 위한 진학지도/상담”의 교습과정을 선택하여 학원을 개업(등록)하고자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목적의 입시컨설팅은 꼭 고등과정에서 대입으로 가는 입학전형절차에 대한 컨설팅만을 의미하는지요?

☞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진학상담·지도가 있으며, 이 과정은 대입에 필요한 진학상담·지도만이 아닌 지식·기술·예능에 관하여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지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4.9)

오프라인학원에서 학습온라인콘텐츠 제공 시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오프라인학원에서 교습의 일환으로 학습온라인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온라인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때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법상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한하는 시설·설비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교습에 필요한 서버 등 구축이 필요하고, 건축법에 따른 학원으로써의 학습자에게 상담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 등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학원 내부에서 교습의 일환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콘텐츠는 학원법상 원격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원에서는 학습자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질의응답, 2018.6.1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 대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 과정명 : 미리 듣는 대학 강의(청소년을 위한 수사학(리더의 사고와 표현원리)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외한 문화과정등)
- 강좌일시 : 2일 16시간 과정(단기과정)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1.7.25)으로, 동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제1항 1호 다목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해 교습을 하려고 하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MOU 체결, 예산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8.2.)

✎ 보습학원에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가능 여부

- ❶ 진학지도계열의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별도의 시설면적 추가 확보 없이 입시학원에서 “진학상담지도” 과목 추가만으로 교습비 징수가 가능한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A, B 둘 이상의 교습과정 등록·운영 시 A 교습과정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B 교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A 교습과정 시설면적 만으로 B 교습과정 강의가 가능한지 여부?

☞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할 것인 바, 입시학원에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진학상담·지도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시설면적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이란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자이고, 학원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에서 행하는 교습행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어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4.25)

✎ 음악학원에서 피아노와 성악 등 2개 교습과목 운영 가능 여부

- ❶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음악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성악과 피아노를 교습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별표1과 같고,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습하는 피아노 및 성악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음악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11.3.)

✧ 태글리쉬(태권도+영어)의 교습 가능 여부

❏ 최근 태글리쉬(태권도+영어)라고 하여 태권도를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학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별도의 영어회화를 강사를 채용하여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태권도 동작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상황은 없고 광고만 하였을 때 무등록 운영 광고로 처벌대상이 되는지와, 태권도만 배우는 학생과 태권도+영어를 배우는 학생을 차별하여 수강료를 별도로 받을 경우 영어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광고만 하고 아직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기술한 것처럼 태권도만 배우는 학생과 태권도와 영어를 함께 배우는 학생을 차별하여 수강료를 받은 이유로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학원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습과정과 관계없이 태권도를 가르칠 경우 체육시설로 신고하면 될 것이나, 태권도를 매개로 하여 영어(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하고 있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11.25.)

✧ 교습행위 범위

❏ 수학, 역사 등의 교습과정을 강사가 놀이, 스토리텔링(동화구연), 체험활동을 통해 사고력, 표현력 등 확장, 통합적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학원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시설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수업방식을 동화구연,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6.10.)

✎ 미용학원의 교습과목 등록 여부

- ❶ 미용학원에서 의료법상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교습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 ☞ 미용학원은 주로 국가자격의 일종인 ‘미용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그 교습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미용업’의 정의인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영업’ 행위 내의 지식, 기술을 교습하는 것이므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위한 물리적 시술 교습과정을 운영함은 부적절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피부미용’과 ‘안마’의 구분 〉

구 분	피부 미용	안마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목 적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업 무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 관리.제모.눈썹 손질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을 통한 물리적 시술행위
교습시설	미용 학원	안마수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7.17.)

✎ 학습지관련 보조교육에 대해 문의

- ❶ 저는 ○○편입과외라는 학습지 출판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학습지를 구입한 학생에게 부가용역으로 보조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모든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보조교육행위를 행하기가 몹시 번거롭고, 대다수의 학생들 역시 집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보조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장소를 임대하여 학생들의 보조교육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같이 장소를 임대한 보조교육행위가 교육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민원요청을 합니다.
- ☞ 학습지 배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보조교육 활동의 허용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습형태와 유사하거나 구별되지 않을 만큼의 교습 활동이 이뤄진다면 이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하고 교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4.17.)

학원 등록 대상자

❏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고자 한다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12.5.)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 수강이 가능한지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기 위하여 학교교과와 평생직업의 2개의 학원을 등록해야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 노동부 지원을 받기 위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개설함

☞ 현행 학원법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습에 대하여 학생의 수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의 성인 수강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이 중복 (컴퓨터, 웬변, 부기, 속독 등)되고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10.4.)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대상

- ❶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을 한 곳이고,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고등학생을 교육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대상이지만,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이나 취업을 위하여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학습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종류에 따라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교육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학원 운영과 관련 질의

- ❶ 예능 계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에도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주된 교습대상일 경우 (예를 들어,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강생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소수의 기타 연령층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며, 외국어, 독서계열 뿐만 아닌 진학지도, 예능, 기타 교습과정의 대상도 상위법령 (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대상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성인 수강가능여부는 유아와 성인의 비율로 판단함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을 교습 받기 위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 국제화, 미술, 실용음악 등의 교습과정이 있으므로 성인은 원칙적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9.13.)

**교습비 등****학원 교습비 감액 징수 가능 여부**

- ❶ 학원법상 실습비의 징수와 관련하여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상 가능한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습비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교습비보다 낮게 징수하는 경우에도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8조4항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질의응답, 2018.05.03.)

**학원 홈페이지 광고 시 교습비등 포함 여부**

- ❶ 학원 홈페이지 광고 시 교습비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3항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 제3항에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으로 되어 있으므로 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습자를 모집할 경우 교습비등,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등을 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06.15.)

감면 교습비등의 교습비등 등록·신고 의무

-  형제·자매 할인, 장기수강생 할인 등 감면 교습비 등을 등록·신고 후 징수해야 하는지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상 교습비 등의 감면은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습자나 학부모에게 이익이 되는 거이고, 교습비 등의 등록·신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불편해소가 가능하며, 교습비 등의 변경 미등록·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교습비 등의 감면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습비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 학원 원칙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구매 비용에 대한 징수 가능 여부

-  교습소 및 학원의 온라인 콘텐츠 구매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  학원 등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구매 비용은 교습비에 포함하여 징수 가능하며, 기타경비로 징수 불가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구매비용은 교습비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며, 교습비 외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온라인 콘텐츠라 함은 PC나 태블릿에 설치하여 말하기, 듣기 연습이 가능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4.14.)

레벨테스트를 위한 경비를 기타경비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학습자 등록 전 학원에서 실력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레벨테스트에 필요한 경비를 학원법 제3조의2 기타경비(모의고사비)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학원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학습자’를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별표1]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 중 ‘모의고사비’를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등록 전 레벨테스트’는 학원 등을 등록하려는 학습자가 사전에 자신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의 한 종류로서 학습자로 등록된 이후 실시하는 레벨테스트와 달리 동법 시행령 상 ‘모의고사비’로 등록하여 관리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기타경비인 ‘모의고사비’로 등록할 수 없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6.6.)

✧ 교습비등 변경등록 수리 전에 신청한 교습비 징수하는 경우

- ❶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등을 변경등록 신청하였고, 교육장이 변경등록 신청한 교습비등의 과다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에서 학원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신청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장에게 교습비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장에게 변경등록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장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수리하기 전까지는 변경등록 신청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안 되고, 이전의 등록(통보)된 교습비등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신문고 회신사항, 2012.4.19.)

✧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의 판단 기준

- ❶ 학원에서 징수한 교습비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가 동일하나 등록된 교습비등과 다를 경우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과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 ☞ 학원법에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 첫째,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징수한 교습비등과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 다른 경우
 둘째,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셋째,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징수한 교습비등과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 동일한 경우는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이 다른 경우에는(감면 제외)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할 것입니다.

(2017년도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 지입차량의 학원통학차량 사용가능 여부

❓ 학원통학을 지입차량을 통해 제공하면 불법인가요?

☞ 현행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다수가 지입차량(제3자임차계약)을 통해 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제4의2호에 따르면 학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입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13세미만)의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게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조항도 신설하였으므로 통학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2018.6.28.)

✎ 프랜차이즈 학원 교재비 징수

❓ 학원사업을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어 교습비와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재료비)만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교재 (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이므로 일반 시중 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여, 우리학원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카드단말기 (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 11.10.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 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 첨삭 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 설립·운영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 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 (영수증 발급)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 (교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4.9.)



기타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 ❓ 교습학원이나 음악학원에서 오전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세법 또는 교육관련법 상의 문제가 되는지?

☞ 현 공간 임대 등 추가 사업자등록 및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학원법」의 소관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 관련 법령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학원의 시설 내에서 다른 사업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0.4.20)

고등학교의 대학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학원법 위반 여부

- ❓ 본교는 고등학교로서 법인 내에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생명과학 관련)할 수 없는 것을 법인 내 대학에서 여름방학기간 중 4일간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인 내 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4일간만 시행되는 1회성 행사입니다. 위 사항이 학원법을 위배하였거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시행된 ‘방학이용 불법·편법 학생대상 교습자제 협조 요청’에 해당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으로 교습일수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학원법 제2조의 교습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운영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7.17.)

✎ 대학교의 방학 중 외국 대학시설을 이용한 영어캠프 학원법 위반 여부

❏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에 위탁을 통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어학캠프 운영은 가능하나 사인이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주립대학교와 협정을 통해 한국의 대학교에서 어학캠프를 운영을 하는 경우, 사인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보아 운영이 허용되는지요?

☞ 방학기간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영어캠프의 위탁 운영을 위한 MOU 체결이 필요하며, MOU 체결의 상대방으로 외국교육기관인 외국대학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6.29.)

✎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 최근 특목·자사고 등에 대한 고액 입시캠프 논란이 주기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관련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등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알려주세요.

☞ 대부분 학교가 지자체 협약 체결 후 외국어활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는 입시준비로 오인할 수 있는 활동이 확인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보입니다. 따라서 어학캠프란, 영어 능력 향상 및 다양한 주제(예체능·진로·인문학 등) 교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토론, 체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된 운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주 요 항 목
캠프비	수익자부담경비: 산출 근거 및 사후 정산 공개, 10% 간접비 인정
운영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등 입시 연계 활동 제한 구체화
관리·감독	기준 위반 시 시정 명령 - 미이행시 위탁기관에 계약 해지 요구

- (캠프비) 캠프비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교습비 조정기준 단가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수익자부담경비(정산재원)로 운영
 - 시설 보수 및 시설물 감가상각 보전 비용 등의 간접비로 정산재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학교운영비 회계로 전출 허용
 - ※ 정산재원의 10%를 초과하는 비용은 학부모에게 10일 이내 반환
 - 캠프비용 산출 근거 사전 공개 및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정산서 공개
 - ※ 다만,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무료 운영시 산출내역 및 정산서 공개 의무 배제
- (운영관련) 외국어활용 중심 프로그램 운영, 입시 연계 오인 소지가 있는 활동 및 홍보 제한*, 선행학습 유발할 수 있는 활동 제한**
 - * 자소서 및 소논문 작성 방법, 고입·대입 성공사례 소개, 캠프 홍보물 내 해당학교 입학 연계성을 나타내는 표현
 - ** 캠프대상자 선발 시 영어 에세이 요구 금지(필요시 한글로 지원동기 요구)
- (관리·감독)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불응시 위탁기관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여 위탁계약 해지 요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8.9.)

별점 부과와 처분성

❶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별점 부과가 행정처분인지?

☞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등록말소와 교습정지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6]에서 별점제도는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며, 별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점 31점 이상의 ‘정지 7일’ 부터 별점 66점 이상의 ‘등록말소’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습정지 등 학원·교습소 운영에 객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30점 이하의 별점 자체만으로 처분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그러나 별점을 부과할 경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법 제16조(지도·감독 등)와 조례 제11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의 처분성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부인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별점 부과시의 시정명령은 법16조3항에 근거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학원법 17조에 명령 위반 시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침익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 피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최근 판결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인천 지방법원 판결) 별점의 부과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제3항에 따른 명령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5.18.)

2 교습소 Q&A



교습자 자격



고졸학력 및 전국대회 수상경력으로 교습소 운영 가능 여부

- ❏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전국대회 수상 경력으로 86년~92년까지 교습소를 운영해오다가 폐소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서예교습소를 개소하고자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전문대, 대졸 학력이 있어야 교습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2항 6번, 7번과는 무관한가요?

- ☞ 교습소 설립자격은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 중 제6호의 기준은 종전('96.1.1.)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96.1.1.이전에 기 고졸자로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될 것이며, '96.1.1.이후인 최근에 학원 등에서 강사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 강사로 간주되며, 현행 규정상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호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이므로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12.19.)



교습소 설립 시 교습자 자격 인정

- ❏ 한자서당교습소 신규 설립 신청 시 교습자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한자교육진흥회에서 발급한 한자실력-등급(사범))만으로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있나요?

- ☞ 교습소 설립자(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을 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그 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강사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능 분야 교습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 조례 등에 교습과정별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원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2.26.)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교습소 개설 가능 여부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07년도 8월)는 교습소 개설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제5호에 의거 상위 3, 4호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갖추고 계신 자격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4.19.)

외국인의 교습소 설립

❏ 외국인이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령이 2005년 9월 25일자로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하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자격이 F-2(거주), F-4(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는 그동안 학원 등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E-2(회화지도), F-4(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있어야 했으나, 동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F-2-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F-2-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다)는 체류자격외 별도의 허가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체류자격 소지자가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동 체류자격외 별도의 허가 없이 강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10.2.)

☞ 학원법령에 교습소 설립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동 기준에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의 투자제외업종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가 직접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투자와 거리가 있으며, F-2(거주), F-4(재외동포)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 법령에서 취업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1.23.)

✎ F-4(재외동포) 비자로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입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을 위해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F-4 비자 소유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교습소 설립 인가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허가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1.9.)

✎ 재외국민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 국적이 대한민국인 재외국민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재외국민 국내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대한민국 여권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외국민이 교습소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지한 여권에 F4(재외동포) Visa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Visa는 외국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할 때, 그 외국인의 나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그 외국인의 여권에 부여하는 Vis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교습소 설립신고를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자는 학원설립과 개인과의교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동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교습소 신고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교습소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고하려는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11.11.)

📌 자기주도학습으로 교습소 또는 학원 개원 문의

❓ 자기주도학습 코칭으로 교습소 또는 학원 개원이 가능한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주도학습 코칭으로 여러 과목을 교습하는 때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가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국어 자기주도학습으로 교습소를 신고하실 경우는 국어교습소로 설립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과목을 자기주도학습의 방법으로 교습하신다면 학원은 보통교과에 해당되어 해당과정의 강의실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설립 운영의 신고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7.25.)

📌 교습 대상

📌 교습소 교습대상 관련 질의

❓ 교습소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나요?

☞ 성인이라 하더라도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인 경우 교습소의 교습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10. 16.)

❓ 교습소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는지? 유아만을 교습하려고 하면 교습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법 제2조에 따라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습한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이 아니며, 9인 이하로 교습한다면 교습소의 신고 대상도 제외됩니다. 다만, 미취학 유아와 초·중등학교 학생을 함께 교습한다면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유아만 10인 이상을 교습할 경우 학원의 등록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2.18.)

☎ 성인 소수 대상 교습소 가능 여부

- ❓ 성인을 대상으로 설탕공예(슈아트)를 가르치고 싶다는 민원이 있어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가르치고자 하는 인원이 4-5명으로 소수여서 교습소로 하고자 한다는 민원을 제기,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교과목이 아닌 과목을 9명 이하로 가르치고자 할 때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하고 과외교습이란 동법 제2조 제4호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교습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 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교 입학시험 준비생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질의한 성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9인 이하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 또는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합니다.

[참조: 대법원, 1981.08.11. 81도610, 대법원 1984.04.10. 84도322]

(교육부, 2009.10.21.)

☎ 교습 과정

☎ 교습과목으로 국악교습 가능 여부

- ❓ 국악교습소가 가능한가요? 중·고 음악교과 중 하나인 국악이 교습소로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국악교습소에서 장구, 판소리, 가야금 등 국악과 관련된 교습을 다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1인 1과목으로 국악 중에서 장구나 판소리, 가야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지요?

☞ 교습소 운영은 1인이 1개소에서 1교과목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관할 교육청에 교습 교과목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타악기를 1개 과목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특정 타악기만을 1개 과목으로 볼 것인지는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시도 조례 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예능 분야는 그 범위가 넓고 그 교습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악기별로 1과목으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8.18.)

✧ 교습소의 교습과정으로 연극 가능 여부

- ❏ 교습소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곳인데요. 바둑교습소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교습소로 등록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극교습소도 등록할 수 없는지요? 학생을 대상으로만 가르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교습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교습소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연극을 재학생, 학교 입학생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가르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9.29.)

✧ 바둑교실의 교습소 신청

- ❏ 바둑교실을 교습소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 학원법 제2조제2호에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학생 대상으로 바둑을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9.16.)

✧ 음악교습소 가능 여부

- ❏ 그동안 교육청에선 교습하는 악기별로 신고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습소나 기타 교습소처럼 음악교습소로도 가능한지요? 음악교습소로 할 경우 한 교습소에서 여러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데 문제없나요?

☞ 교습소의 교습과목 설정의 적격여부 등 학원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 포함)업무는 관할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질의하신 교습소의 가능 여부의 판단은 관할 교육청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습소는 1개의 교습과목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악기로 교습을 신청하였을 경우 당해 악기만 교습이 가능할 것이나, 관할 교육청에서 교습과목을 음악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았다면, 초·중등 교육과정의 음악으로 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악기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일시수용인원은 9인 이하, 교습자는 1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습과목의 허가 및 교육과정의 운영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13.)

참고

※ 서울시교육청 음악관련 교습소 신고 시 지침사항

- ☞ 음악과목으로 교습소 신고 시 : 여러 개의 악기 교습 가능
(피아노 포함하여 다른 악기 교습가능 - 일시수용인원 9인 이하
단, 피아노 교습 - 일시수용인원 5인 이하)
- ☞ 특정악기로 교습소 신고 시 : 특정악기만 교습가능
- ☞ 특정악기로 기신고 된 교습소 : 음악교습소로 명칭변경 신청 가능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3075, 2007.5.4.)

🌸 국어논술에 대한 과목 구분

❶ 국어논술 교습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어논술을 국어논술 한 과목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국어 과목과 논술 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 학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교습과정을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으로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단위교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2]에서는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통교과의 계열은 학교교육과정의 교과 교습과정과 논술 교습과정으로 나뉜다는 것이고, 논술 교습과정은 대학 진학에 따른 논술을 대비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에 추가한 것으로서 교습방법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는 국어 교과가 속하는 학교교육과정과 논술을 구분하고있고, 교습과목은 교습과정의 하위 개념에 해당하므로 국어 과목과 논술 과목은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법 제14조제5항에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논술 교습소’와 같은 명칭표기는 교습과정의 구분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습소의 ‘1과목’ 교습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어논술 교습소’가 아닌 ‘국어 교습소’ 또는 ‘논술 교습소’로 신고하여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17.12.)

종이접기교실 교습소 신고 여부

❓ 종이접기교실이 학원법에 저촉되어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학원법 제2조제1호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교습소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동일 시간에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위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3.15.)



교습소 설립

교습소 명칭 표시

- ❓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가요?
2. 학원 역시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상호/학원 을 표기하여 ‘○○○학원’으로 학원명을 지어야 하며 그 외 아카데미 학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표기와 / 잘못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할수 있는지요 예1. ○○○○아카데미/○○○국어교습소 , 예2, ○○○ 국어 아카데미/○○○국어 교습소 이렇듯 학원에 신고된 교습소 명칭과 신고 안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이나 ‘교습소’ 외에 다른 명칭 표시 및 공용 표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7조(행정처분)에 따라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5.2)

영어교습소 명칭

❶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규정하여 학교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교습소 명칭 사용 시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라는 단어만으로는 교습소가 학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습소 명칭 사용에 대해 수리 관할청과 협의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8.20)

고발된 미신고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

❶ 미신고로 운영하던 교습자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을 경우,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습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신고를 할 수 없는 교습소는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폐지처분을 받은 교습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있고, 폐지처분이란 신고된 교습소에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 중 고발되어 처분중에 있거나 처분이 내려진 교습자도 법 제14조에 의거 신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11.18.)

☪ 교습소 조건부 설립 가능 여부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조건부 설립 등록)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동법 제6조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시에도 동법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을 유추 적용하여 조건부 설립이 가능한가요?

- ☞ 학원법령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학원설립·운영은 등록사항, 교습소의 설립·운영은 신고사항으로, 학원은 조건부 설립등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습소는 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2012.11.19.)

- ❏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미등기된 건물에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 ☞ 학원법령에서 학원은 ‘조건부등록’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교습소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등기된 건물에서 교습소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 2004.10.30.)

☪ 공동주택 내 교습소 설립 및 변경 가능 여부

- ❏ 공동주택에서 교습소 설립 및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 “행위”와 같이 기본의 주택용도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용도 제한의 대상이 아니나, 교습소나 학원과 같이 “장소” 개념을 가진 특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소는 소규모 교육시설이므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나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교육부, 2004.6.11.)

1인이 2개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3층에 수학교습소를 하나 더 신고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하나 이상의 교습소는 신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피아노교습소, 3층에 수학교습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동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피아노와 수학교습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1.23)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교습소 설립

❓ 노래연습장이 건물 1층에 있는데 이번에 2층(202호)에 신규로 교습소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를 보면 1층 노래연습장 벽과 2층 교습소 예정부분의 벽이 붙어 있습니다. 학원법시행령 제4조의 3항 규정에 의거 수평거리를 6m가 떨어져 있도록 교습소 예정부분의 일부만 임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까?

☞ 학원법 시행령에서 교습소의 장소는 학원의 장소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에서는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없으며, 1,650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서는 같은 층의 경우 수평거리 20미터,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인 경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서는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내용을 제외한 지역에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건축물 도면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2.15.)

✧ 교습소 강의실 인정 여부

- ❏ 학원법 제14조제2항의 한 장소의 의미는 1개의 강의실을 의미하나요?

학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교습소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실은 몇 개까지 인정이 가능한가요?

지역교육청의 담당자에 따라 적용의 범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학원에 비해 과중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경우는 1제곱미터 당 1명인데 비해 교습소는 3.3제곱미터당 1명인 셈입니다. 최소한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5인 이하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 “한 장소”의 의미는 교습자 1인이 2개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학원법령에 강의실 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또는 규칙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학원법령에 단위시설 기준이 제곱미터당 1.2인 이하이지만 전체면적은 1개의 강의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는 최소면적이 3.3제곱미터X9명=29.7제곱미터로 학원에 비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면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현재는 단위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6.13.)

✧ 석유 소매점 인근 도예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 ❏ 교습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동일 건축물(연면적 1,650㎡미만)에 석유 소매점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6조에서 규정한 유해업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교습소 신고를 수리해도 무방한지 의문이며, 교습소는 초·중·고 교과목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교습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미술(공예)과목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대상만 학생으로 한정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가능한가요?

-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등에 액화가스 영업을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유판매소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의 문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음악, 미술 등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은 다양한 세부과정이 있습니다. 도예의 경우도 넓게 보면 미술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습소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교습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습소가 아닌 학원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3.10)

✎ 특정목적 (교회 등)으로 기사용 중 시설 내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 ❶ 교습소를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의 교육관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같은 건물은 아니고 교회 바로 옆 건물이고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일요일에만 한정해서 10~20분정도 공과 (성경공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 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교습소에서 종교목적의 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나 학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별도의 시설이나 면적을 독립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회 등 특정목적으로 이미 사용되는 시설에서는 교습소 설립이 어렵습니다.

(교육부, 2004.6.23.)



교습소 운영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 ❶ 학습자에 대한 교습중단 사례 방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교습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습소에 두는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기준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 ☞ 교습소의 보조요원은 강의실 내에서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임시 교습자	✓ 교습자가 출산, 산후조리, 육아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교습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보조요원	✓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학습자 등.하원 지도, 화장실 동행,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역할
	✓ 교습종료 후 학습자 임시 돌봄, 교습 중 학습자 안전사고 예방 지도
	✓ 시험문제 채점, 시험문제 출제 관련 자료 조사.수집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제반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보조요원의 단독교습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 안내 요망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5.21.)

✧ 한 교습소에서 2인 이상의 수업 가능 여부

❓ 친구와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된 교습소에서 2인 이상의 수업이 가능한지? 또 교습소 설립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교습소는 1인 1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이 함께 교습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의 설립자(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을 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3]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3.02.14.)

✧ 학원법상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라는 뜻은 예를 들어 60제곱미터의 상가를 빌려 강의실을 3개로 나누어 사용할 시 3강의실을 인정하여 일시수용인원이 되는지, 아니면 큰 강의실 1개만 인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1인이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강의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단 예능분야는 이동하여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인 1개소가 아닌 1인 1실로 변경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습소에 대한 인원설정은 학원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수에 관해서는 학원법령에 강의실 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6.15.)

✧ 교습소의 교습비등 감면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으나 학원은 학원원칙에 감면사항을 적시하는 경우 별도로 교습비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교습비등의 변경미등록이나 거짓 표시·게시·고지로 처벌받고 있지 않는 반면에 교습소는 학원원칙과 같은 서류가 없어 감면사항을 기입할 수 없는데 만일 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교습비등 (변경)신고를 하고 감면해야 하는가?

☞ 학원의 경우 원칙이 있어 교습비등의 감면으로 인한 제15조제4항(거짓 표시·게시·고지에 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교습소는 학원의 원칙과 같은 문서가 없어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학생, 학부모, 또는 담당공무원 등이 교습소의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교습소 시설 내부 등에 감면사항을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동일하게 교습비등의 신고 없이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 사례집, 2007.12.)

✎ 교습소의 일시수용인원 의미

❓ 피아노교습소의 경우 일시수용인원을 최대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수용인원이 교습소 한 시간당의 수용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습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 시간에 5인을 교습 중에 다음 시간대의 학생 2명이 와 연습을 하거나 혹은 교습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일시수용인원초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질의하신 피아노교습소의 경우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인원이 5인 이내여야 합니다. 일시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안정 때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레슨을 받기 위해 대기중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일시수용인원초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2007.1.16.)

✎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 「학원법」상에서 교습소의 교습자(운영자)를 변경하려면, 교습소를 폐소 후 그 장소에 새로 교습소를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습자의 인적사항의 범위에 현재 운영중인 교습자가 아닌, 인수인계를 받은 다른 교습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인적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및 변경의 권한이 있는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10.5)



3 개인과외교습자 Q&A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F-2(거주) 비자 소유자의 개인과외 신고 가능 여부

❏ 신랑은 캐나다 사람으로 현재 거주비자인 F-2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학을 전공하여 캐나다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과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가 직접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와 거리가 있으며, F-2와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2006.10.19)

참고

※ 외국인의 개인과외 가능 자격

⇒ E-6(예술홍행),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E-2 비자 영어 원어민 강사의 과외활동 가능 여부

- ❏ E-2비자를 가진 사람이 과외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F-2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과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 불법 과외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중 외국어학원강사(E-2)비자는 개인과외교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불법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4.16)

✎ 외국인 중 H-1, D-4 비자 소지자의 과외교습 가능 여부

- ❏ 외국인 중 H-1, D-4 비자 소지자의 개인과외활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외국인은 본인이 소지한 비자 종류에 맞는 활동만을 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에게 개인과외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종류는 없음. 따라서 말씀하신 H-1비자나 D-4비자 소지 외국인도 개인과외활동을 할 수 없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심사15과, 2018.6.20.)

✎ 현직교사의 개인과외 가능 여부

- ❏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한 수학교사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장은 없는지요? 그 교사는 예전 은사님이고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현직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2006.9.2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문의

❏ 고등교육기관(사립대학)의 교원이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타 대학원생(박사과정)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과외교습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법 해석(법 위반 유무, 벌칙 등)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말씀처럼, “학원법” 제3조를 통하여 교원의 과외교습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과외교습’은 동법 제2조 제4호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교원이 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 제3조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2조제2항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1.28.)

외국인에게 한국어 과외교습 가능 여부

❏ 외국인 친구로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습 장소는 카페를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친구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저는 현재 사이버대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만약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외를 하게 된다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여 주신 성인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 재학생의 교습행위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1.28.)

🌿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 화상영어가 학원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행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직접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어민이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민원인께서 교습을 보조하는 등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본인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대면교습만 허용하고 맘스영어 공부방의 경우에는 등록 교습과정에 1:1 원어민 화상교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청에 등록하지도 않은 무등록 및 무자격 강사에서 학생들이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원 법령 및 시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9.21.)

🌿 개인과외 신고 대상 해당 여부

❓ ○○대학교사회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정은 학점은행제이고 전공은 피아노 4년 과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생이니 안 해도 되나요. 학점은행 과정에 다니는 대학생도 대학생에 해당되는지요?

☞ 개인과외신고대상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이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입니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민원인의 경우 개인과외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3.13.)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 대학생 개인과외신고 여부

❏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현행법상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생과 방송통신대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개인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에 대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므로 사이버대학생과 방송통신대학생은 교육청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2.28)

부부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남편은 수학과목을 아내의 영어 과목을 각각 교습할 경우 이들 각각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개인과외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 명도 학원법상의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의 신고를 필하고 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교습소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편법·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4.17.)

✎ 신고하지 않은 교습과목을 무료로 교습할 경우 신고 여부

- ❏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신고(교습과목 : 피아노)를 득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학습자로부터 피아노 교습료를 받고 개인과외 교습을 하면서, 신고 되지 않은 교습과목(초등 수학)을 5~6명의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경우,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 학원법 제2조에 의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행위는 수강료/교습료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거 등록 후 교습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교습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학습자의 초·중·고교과목에 대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9.25.)

✎ 성인(유아)에 대한 과외교습 가능 여부 및 신고의무 유무

- ❏ 성인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이 가능한지, 이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이 가능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9명 이하의 유아 또는 시험준비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없이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은 과외교습 대상이므로 그 시험준비생이 성인인 경우도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어 교습소 설립·운영이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 시험준비생이 아닌 9인 이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교습을 할 수 있고, 유아의 경우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9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신고없이 교습을 할 수 있으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대상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와 유아 또는 성인을 동시에 교습을 하려는 경우에도 유아 또는 성인을 포함한 교습 인원을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하면 교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12.)

🎹 피아노 방문 레슨 관련 문의

❓ 음악 관련 법인 회사입니다. 향후 피아노 방문 레슨 사업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소속 강사가 교육청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피아노 강사와 계약을 맺음
2. 레슨받기를 원하는 각 가정으로 강사를 파견 파견한 후 레슨비는 회사로 입금
3. 회사가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상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도)에서 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이 소득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하는 등 개인의 교습에 대한 신고수리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파견형태로 교습하거나, 교습비등을 회사로 입금하는 형식은 불법입니다.

강사를 채용하고 교습비등의 영수증을 회사가 발급한다면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원은 등록된 장소(강의실, 실습실)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8.6.)

🎨 방문미술(유아~성인대상)교습의 학원설립 여부

❓ 방문 미술 교습을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세무소에 면세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학원 설립을 먼저하고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문 미술하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업을 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각각의 선생님들이 개인과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건물에 강의실 면적 및 교구, 교육환경을 갖추고 학생이 방문하여 교습을 받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문 미술교습을 하는 강사를 관리하는 시설은 학원의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방문교습을 행하는 강사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문의는 소재지 관할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4.3.12.)

❧ 과외중개 알선업체 합법 여부

❏ 저는 1달 전쯤에 다음 과외 구하는 사이트에서 과외를 구하다가 과외 구한다는 글이 있어 만나서 보니 알선업체더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과외업체 광고를 통해 학부모에게 연락이 오면 이걸 연결해주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의 과외비가 50만원이면 50%인 25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25만원은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식으로 운영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아예 제 학교와 나이, 과외경력 등을 학부모에게 속이고 과외를 알선해주더군요. 전 곧 양심에 찔려서 그 알선자가 가고 나서는 학부모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이런 중개업체가 합법인가요?

☞ 과외알선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과외의 경우,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교습행위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역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과외알선업체라는 곳은 교습과 관련 없는 일종의 직업알선소개업의 일종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신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알선 수수료의 적정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학 재학생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외교습이 자유로운 만큼 되도록이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알선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2006.10.10.)

※ 과외알선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과외중개업체를 통하여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1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 학생(휴학생 제외)이 아닌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함

❧ 피아노학원 용도변경하여 개인과외교습 가능 여부

❏ 피아노 학원을 30년 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용도 변경하여 개인과외도 가능한가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서, 현재 학원 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경상남도교육청, 2018.6.29)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개인과외 교습료 설정 및 절차

- 3명으로 구성된 아이들에게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한두 시간씩 비어 있는 일반 사무실에서 외지인을 초빙하여 고액과외가 아닌 월 20만원 정도의 교습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일반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개인과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 과외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원에 따른 신고 등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신 후 교습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교습장소는 상가, 오피스텔 등이 아닌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하면 가능하나 필요시 교육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교육청 관련부서에 문의하시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8.10.)



아파트에서의 피아노 개인레슨

- 아파트에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려면 우선 해당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방음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이 아파트 주거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 피아노 개인레슨이지 신고해 놓고 피아노학원처럼 운영하고 있고 피아노 몇 대가 동시에 울려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원을 제기해 보아도 법이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다고만 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아파트에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도록 할 땐 관련된 법으로 방음시설을 꼭 갖추도록 하게 한 후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행 규정상 개인집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에 대해 일일이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용된 개인과외를 못하게 금지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1.21.)

개인과외 교습료 규정

❏ 학원의 경우는 교습비등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료의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 현행 학원법령의 규정에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관할교육청에 교습료 등 신고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과외 교습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고액과외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3.9)

개인과외교습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과외교습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칭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만, 학원법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2의(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신고자의 성명, 주소,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에 대하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과 교습소처럼 명칭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만 알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3.28.)

개인과외교습자의 간판 이름 형식

❓ 개인과외교습자가 간판을 사용할 경우 간판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명칭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명칭등록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별도의 등록없이 임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법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별개이므로, 개인과외교습자 간판에 ‘학원’ 또는 ‘교습소’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간판과는 별개로 교습장소의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18.6.22.)

개인과외교습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여부

❓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날이 추워지다 보니 학습자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셔틀버스로 귀가시켜 달라고 하는데 개인과외교습자도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다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도로교통법에 다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질의응답사례집, 2022)

 개인과외 교습장소

 개인과외교습의 장소인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관련

- ❏ 현행 「학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신고된 거주지 이외의 장소도 포함이 되는지?
 - ☞ 2001.4.7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4.3.22일 「학원법」 및 2004.6.5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원법」상 ‘개외과외교습’의 장소인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습자 또는 학습자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함
 - 따라서,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할청에서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 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학원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 참고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항임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10.12.)

 상가에서의 개인과외교습 가능 여부

- ❏ 2005년 3월 21일까지만 허용되었던 대학재학생의 상가에서의 개인과외가 2005년 3월 21일 이후에 대학생(재학생)이 상가에서 개인과외를 할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 ☞ 2005. 3. 22. 이후부터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능하며 상가에서의 개인과외교습은 할 수 없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가 계속해서 상가에서 교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4.19)

✎ 개인과외 교습 시 교습장소

❗ 개인과외로 미술교육을 학습자 집을 방문하여 교습을 하거나, 컴퓨터교육을 학습자 집을 방문하여 교습할 경우 교습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잠시 머물러 지도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교재를 판매하며 지도할 경우(학습지 포함 보습, 미술, 컴퓨터)는 전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등 수업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개인과외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교습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고대상 인지를 물으셨는데, 현행 규정상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행위가 과외 교습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정해진 교습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2006.2.7)

✎ 오피스텔의 개인과외 신고 가능 여부

❗ 개인과외신고 시 구비서류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아파트처럼 생긴 거주용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기 전엔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데, 외관상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건축물용도를 일일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첨부라는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개인과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신청자는 좀 난감합니다. 명쾌하게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던지, 아님 거주용으로 일반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 같은 곳은 허용해야 할 것 같아요.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취지가 주로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 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위와 같이 규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양자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미신고,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4.11)

개인과외 신고 시 거주지(지층) 가능 여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지층) 또한 같은 경우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2.7)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해당 학습자 외 학습자에 대한 개인과외교습 가능 여부

❏ 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그 주거지의 학습자 외에 다른 학습자도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그 주거지의 학습자만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함

☞ 상기 질의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 그 주거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교습이 가능한지 또는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하여 해당 주거지 학습자 이외의 학습자와 함께 교습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하는 자’로 이때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학습자는 해당 주거지의 학습자만을 의미합니다. 만일 해당 주거지의 학습자 이외에 다른 학습자에 대한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학원 형태의 운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의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해당 주거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교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



행정처분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과외교습 가능 여부

-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생의 신분으로 되면 개인과외교습을 해도 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상 대학교 재학생의 과외교습행위는 동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6.21.)



과외교습 중지명령에 따른 신고사항 말소

- ❓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중지명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으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폐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 학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17조제3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신고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폐지와 같이 신고사항을 말소해야 하나 이외의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입니다.

☞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중지명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시설이나 교습행위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거지에서 교습행위를 하므로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만 해당하므로 과외 교습중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12.)

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6-0544, 2017.1.12.]

- ☞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학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교습장소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본문),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는 경우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이전하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 본문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장소에서 과외교습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바(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64호로 일부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그 개인과외교습자의 친족이 아닌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해 추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 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가목, 이하 “유아”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나목, 이하 “장애인”이라 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목, 이하 “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수영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6-0546, 2016.11.2.]

- ☞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인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수영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제1호)과 평생직업교육학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법은 제2조제1호에서 학원을 정의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원의 종류를 그 특성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육환경의 정화 의무를 부과하고(제5조제2항)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습비(제15조제6항)나 교습시간(제16조제2항)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결정 2011헌바227 결정례 참조).

따라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면 예외 없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습과정은 지식·기술·예능에 한정되며,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결정 2011헌바22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중 하나로 “체육”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체육시설법 부칙에 따른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습과정에서 “체육”을 삭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과정에 “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육 교과 중 하나인 “수영”도 같은 규정에 따른 교습과정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가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구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사설강습소법의 개정 취지는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바(법제처 2010. 2. 5. 회신 09-0410 해석례 참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는 유아, 장애인, 학생 등 이용자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이상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2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❶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1-0793)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나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등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치산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였는바, 위 조항 취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학원을 사인(私人)이 통상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제1호)과 평생직업교육학원(제2호)으로 구분하여, 이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뿐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그 교습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이나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던지 모두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생교육법」과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한 취지가 학원법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자체에서 제외하여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서 학원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학원법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학원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했는데, 그 입법취지는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외국인강사의 경우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검증 필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습비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학원법에 따른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위의 학원법 각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우선, 학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2조의2에서 위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정의에 포함되는 학원을 다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취하였으므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범위에 일단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평생교육시설”을 학원 개념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입법취지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을 학원법으로 규율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계속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학원 등록이후에는 위와 같은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고, 이는 앞서 살펴본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과 제2조의2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해석과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6-0101, 2016.5.30.]

- ☞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제2호),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제3호),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제4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1호),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2호),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3호),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제4호), 같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제5호),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6호)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6조제6항에서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불법적인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 인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포상금제도가 학원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의 단속에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의무와 지급시기를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체계와 포상금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신고인이 학원등의 불법교습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교육공무원 대신 같은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였고, 교육감이 그것을 교육공무원의 단속결과와 동등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학원등을 단속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행위가 별칙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참조), 신고 내용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그 정도 의심에 미치지 못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서는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신고행위가 곧 포상금 지급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지급사유별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은 신고한 행위에 부과되는 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사유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인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것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고발한 사안이 수사기관의 개별적·구체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이어지는 재판의 결과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신고행위가 무용한 것이 되어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산점을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특정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

- ❶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학원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안전번호 15-0561, 2015.11.2.]

- ☞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업 중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학원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학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다중이용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두 경우 모두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호 가목은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단독으로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같은 호 나목(2)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둘 이상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한 결과 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 여부를 나누고 있을 뿐 각 학원들의 운영자가 동일인이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학원이 같은 목 (2)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운영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2)는 학원의 운영자가 동일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성격과 화재위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단지 그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❶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5-0196, 2015.5.12.]

- ☞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

- ❶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안전번호 15-0061, 2015.3.17.]

- ☞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설립·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통근·통학 목적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세버스는 본래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비록 학원의 운영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해당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지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러 다니는 것”이고, “통학”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임을 고려하면,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통학”이란 “회사 소속원의 통근, 학교 소속원의 통근·통학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의 통근·통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직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소속원으로 보고 전세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도 회사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어린이집의 소속원에 포함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같은 목 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의 소속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와 제10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은 학원 및 교습소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적 시설을 의미한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교육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건번호 14-0646, 2014.12.1.]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본문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은 학원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바, 학원법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용어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일정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반드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법령상의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❶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신학원은 1981년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 교습과정을 가르치는 사설강습소로 인가받았는데, 이후 해당 법률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그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신학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다른 교습과정(대학 편입)을 추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자 학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서 “종교”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원의 교습과정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건번호 14-0553, 2014.10.14.]

- ☞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법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모두 인가된 학원이 되었고, 이후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학원의 인가·등록이 학원의 등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 사설강습소 및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종교”가 분류되어 왔으나,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의 교습과정의 분류에서부터는 제외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 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에서 “본다”라는 문언은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인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종전에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학원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학원법의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의해 인정된 학원의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한 학원에 대하여 그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 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한 교습과정이 개정 법령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과조치를 통하여 종전의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편입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 법령에서 제외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이러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 법령에 규정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학원법의 취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원 설립·운영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자 종전에 등록과 인가로 나뉘어져 있던 학원 제도를 등록제로 일원화하는 것인데(개정 학원법 제·개정이유서 참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은 기존의 교습과정에 한하여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 개정 이후 등록한 학원과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학원의 운영을 더욱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자 한 개정 학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전에 구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시설강습소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 인정 되었다면, 종전에 인가 받은 교습과정이 현재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강사 자격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 교육학원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각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9-0265, 2019.7.11.]

☞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하여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같은 표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아울러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2에 따른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에서는 외국인(제9호)과 동일하게 내국인(제2호)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그 자격기준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448 결정례 참조) 정책적으로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상 독서실의 건축물대장 용도

- ❶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각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함.)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안건번호 19-0162, 2019.5.20.]

☞ 이 사안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학원법령에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독서실에 관해서는 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서실은 학원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독서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 학원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각주: 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545 해석례 참조)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❶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도의 조례로 휴강일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를 하던 중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전번호 17-0468, 2017.11.20.]

- ☞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 외교습자(이하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이라 함)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례 참조),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정하는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강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습일”을,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교습시간”을,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5호에서는 “휴강일”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의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야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의미할 뿐, “교습시간”의 개념에 특정 요일이나 주말에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휴강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습시간에는 교습을 하지 않는 휴강일도 포함되므로 학원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시·도의 조례에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시·도의 조례에 휴강일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근거인 학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를 학교교과교습학원등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학원법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건번호 17-0695, 2018.3.14.]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교습소”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제2호)을,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교습비등”이라 함)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제3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등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이하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이라 함)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령을 구성하는 개별 조문은 전체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입법 의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러한 개별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대상 수범자, 해당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학원(제1호)”, “교습소(제2호)” 및 “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에서는 이러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를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학원설립·운영자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한 학원등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과 필수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개별적 의무규정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의무(제4조제3항),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의무(제13조제2항), 신고한 대로 교습비등을 징수할 의무(제15조제4항) 등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고 운영하는 학원등의 영업 행태에 관한 규율이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의무 및 교습비등의 반환 의무는 학습자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등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통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건번호 19-0584, 2020.3.20.]

☞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각주: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제4호, 제5호 및 제7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건번호 18-0549, 2018.11.16.]

☞ 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

- ❶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안건번호 20-0058, 2020.4.21.]

☞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에서는 310-01(보상금)목에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각주: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각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으로 인한 교습정지 취소

✎ 행심 2012-7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3.]

[주문]

피청구인이 2012.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교습소 영업정지 14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4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소를 운영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2. 3. 5.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를 현장 조사하여 2012. 3. 26.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의 설비, 교구기준 위반 및 강사 임의 채용과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5항, 『학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별점 20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소를 운영한다는 민원이 재차 제기되자, 2012. 4. 17.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의 교습행위를 사진 촬영하고 ○○○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2012. 5. 7. 청구인의 강사채용과 관련하여 『학원법』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25.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전에 운영하던 학원의 비싼 임대료로 인하여 이 사건 교습소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다른 상가로 분리하기 위해 2012. 2. 25. 새로운 장소에 대한 교습소 설립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2012. 3. 5. 이 사건 교습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고, 당시 새로 분리되는 학원장(○○○)이 인수인계를 위해 잠시 와서 학생들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중이었고 그 다음 날 위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는바, 만일 2012. 3. 6.에 현장조사를 나왔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2012. 4. 17. 이 사건 교습소에 대한 현장조사시 이론집을 채점하고 있는 보조요원(○○○)에게 채점도 강사 교습에 해당된다고 진술서를 요구하였고, 피아노 치던 학생이 교재를 떨어뜨려 보조요원이 바르게 다시 퍼주자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혼자 피아노 치는 학생에게 누가 레슨을 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그러나 2012. 4. 10. 청구인의 교습소를 방문한 피청구인의 행정지도 공무원은 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 에 대해 학생에게 직접 피아노나 이론지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신뢰하고 청구인은 채점요원을 채용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 두 번이나 방문하여 문의하였을 때에도 직접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된다고 하였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볼 때에도 보조요원이 청구인을 도와 채점행위를 한 것은 교습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보조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지침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가. 청구인의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2. 3. 5. 청구인의 교습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학원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행위를 하였고,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아노 운영대수는 최대 5대이어야 함에도 9대로 운영하는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 청구 및 처분의 사전 통지에 이어, 설비 및 교구기준 위반,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시정결과를 제출받았다.
- 나. 청구인에 대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교습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강사 ○○○가 교습행위를 하는 현장을 사진촬영 하였으며, 위 ○○○로부터 “연습을 원장님께서 내 주시면 옆에서 연습관리를 해 주고, 이론 교재가 많아서 이론교재 채점을 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조요원이 채점하는 것은 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다만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2012. 4. 20.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에 이어, 2012. 5. 7. 『학원법』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강사채용에 대한 벌점 40점(2회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4일의 이 사건 처분 및 교습소 강사해임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시정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4. 판단

- 가. 청구인은 2012. 3. 5. 이 사건 교습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당시 새로 분리되는 학원장(○○○)이 인수인계를 위해 잠시 와서 학생들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중이었고, 2012. 4. 17. 이 사건 교습소에 대한 현장조사시 이론집을 채점하기 위한 보조요원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보조요원이 청구인을 도와 채점행위를 한 것은 교습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지침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채용한 ○○○가 강사로서 교습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조요원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의 각 기재,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 3. 5. 현장조사시 “강사는 지금 설립중인 학원의 원장이다.” 는 진술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2012. 4. 17. 현장조사 시 ○○○는 “아이들 관리위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작곡과 출신으로 피아노 부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다. 연습을 원장님께서 내 주시면 옆에서 연습관리를 해 주고, 이론 교재가 많아서 이론교재 채점을 했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당시 구실 심리에서 청구인은 학습자에게 연습과제를 내주고 ○○○로 하여금 연습관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나가면, ○○○는 학습자가 위 연습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교습은 ‘가르쳐서 익히게 함’ 즉, 기술이나 기예, 학문 따위를 가르쳐 익숙하게 함, 가르쳐 익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를 채용하여 피아노 레슨에 관한 교습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점부과 및 시정지시를 하여 시정결과를 보고받고, 재차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시 ○○○의 교습행위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로부터 교습소의 학습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내주는 연습과제에 대한 연습관리를 해 주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에게 연습관리를 지시하는 등 교습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밖에 보조요원의 채점행위는 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다만, 청구인이 종전 학원의 임대료가 과중하여 이 사건 교습소로 이전한 경위, 새로운 교습소 설립신고를 하던 상황, 청구인이 보조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및 교육청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한 정황, 교습소의 보조요원에 관한 사항은 학원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니고 자치법규에서 교육감에 대한 단순한 통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보조요원에 대한 규율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교습소의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4일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교습소 신고수리 취소처분



행심 2012-28호 교습소 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4.]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31. 청구인들에게 한 교습소 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 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0. 3월부터 2011. 12월까지 기간 동안 ○○지역 내 제2종전용 주거 지역에 청구인을 포함한 24개 교습소 신고를 수리하였다.
- 나. 위 교습소 인근 주민이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교습소 신고 수리는 위법하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감 [○○○○과장(○○○○담당)] 은 피청구인에게 위 전용주거지역내 교습소 신고 수리 재검토와 향후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 다. 2012. 5. 31. 피청구인은 “교습소가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신고 수리되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지 않음” 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가장 최근 신고 수리된 교습소의 최초 임대차계약일(2011. 2. 20.)을 기준으로 2016. 12. 19.까지 5년의 유예기간 부여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두었다.

2. 청구인의 주장

- 가. ○○지역은 예정되지 않았던 다자녀 가구 입주와 학교의 설립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습소, 학원 등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수리된 교습소를 취소하는 것은 주민의 교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나.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의 안내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수리된 교습소를 처분청이 이를 반복하여 취소 처분하는 것은 교습소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고 있지만 「건축법시행령」은 교습소의 용도를 규정짓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소의 용도를 학원으로 간주하여 교습소 신고 수리 후 이를 다시 반복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위 지역 내의 교습소 신고 수리는 교육청의 실수라고 하며 이를 반복하여 취소한다는 것은 현재 신고 수리된 24개 교습소 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가. 학원 및 교습소가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설립될 경우 다수의 유동인구와 차량이동의 증가, 기타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 뉴타운은 제2종전용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로 학원 및 교습소가 설립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주민의 교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법제처는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학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법률 전문가 6명에게 자문결과 “기 신고된 교습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24개 교습소를 임차인의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반영하여 가장 최근 신고 수리된 교습소의 최초 임대차계약일(2011. 12. 20)을 기준으로 2016. 12. 19.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교습소 신고 수리 취소 처분한 것으로 법률의 해석 적용상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다.

- 다.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보는 이상 교습소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의 교습소의 설립은 불가하다.
- 라.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학원과 동일하게 보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신고 수리된 교습소는 당초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설립될 경우 다수의 유동인구와 차량이동의 증가, 기타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에 신고 수리된 교습소 중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 지정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교습소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판단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습소를 학원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나. 이와 관련하여 그간 내려진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가 등의 의견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교습소의 신고 행위는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다. 이는 “교습소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 등의 정화는 학원 설립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정과 동일”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습소에 관한 행정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원업무편람 43면 참조)
-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교습소의 설치는 부적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며,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댄스스포츠교습소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핵심 2013-79호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4. 1. 14.]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7. 22.자 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 가. 청구인은 2013.7.15. ○○구 ○○동 ○○○-○○, 2층(75.93㎡)에 “댄스스포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댄스스포츠 교습과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므로 동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인 관할 행정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가. 이 사안에서 체육시설업의 일종인 다른 무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 기술, 예능의 교습을 하고자 신청한 것으로, 동법에 따라 등록 신청이 타당하며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청구인의 위 반려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판결(2012구합34822,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누7775,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에 반하는 것이며 댄스스포츠교습소를 학원법에 적용하여 등록 신청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는 무도학원업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 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히 무도학원은 학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댄스스포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구청에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무도학원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을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교습과정의 분류등) [별표 2] 에 의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예능계열 ‘무용’ 교습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기예계열 ‘댄스’ 교습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댄스’ 교습과정은 학원 등록이 가능하나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법에 의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아니한 힙합댄스, 방송댄스, 제즈댄스 등 각종 댄스를 교습할 경우 학원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나,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역시 법령질의 회신에서 댄스스포츠학원에 관하여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 라. 청구인이 댄스스포츠 학원에 관하여 학원법상의 등록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2구합34822)은 2007. 1. 25. 대법원(2005도4706) 판결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마.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원법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학원과 체육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 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고 댄스스포츠가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댄스스포츠는 중·고등학교 체육교과 과정에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 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원고(무도학원 등록 신청자)가 주장하는 ‘다른 예능 또는 체육활동에 관하여 학원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교습활동을 하는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어 부당하다’ 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체육활동 교습과정은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교습소는 학원법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학원의 종류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만 신고할 수 있다.
- 아. 「학원법」 제5조 제2항(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의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수강생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위해 본 사안에 대하여 위 법원 판례를 무조건적으로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4. 판단

- 가.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래의 판단이다.

- 나. 그런데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은 댄스스포츠교습소의 신고를 의도하고 있으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고시 제2011-361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고시〔별책 11〕에 의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 3> 초등학교 5~6학년군 신체활동 활용 예시에 의하면 「여가활동 / (가) 생활 환경과 여가」 영역에 댄스 스포츠가 예시되어 있고, <표 4> 중학교 1~3학년군 신체활동 활용 예시에 「표현활동 / (나) 현대 표현」 영역에 댄스 스포츠가 예시되어 있다.
- 다. 그러므로 댄스 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는 학생들의 체육 교육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댄스 스포츠의 기본적인 동작이 종래의 볼룸댄스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래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은 청구인의 교습소 설치 신청취지나 최근 법원의 판례와는 다르므로 새로운 법의 해석이 요구된다.
- 라.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 내용이 정치하지 못하고, 무도학원이 학교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여 무도학원·무도장이 유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교습소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하기도 어려운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 마. 그렇지만 피청구인은 교육부의 체육과 교육과정과 이를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 법원의 판례 및 청구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댄스스포츠교습소 설립 신고 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판단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소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새로운 댄스 스포츠 교습소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2014. 1. 13.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댄스스포츠(무도) 시설 학원 등록 업무처리 방안 안내」(평생교육과-736)를 참조하여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인한 학원 교습정지 14일 처분 취소

핵심 2014-25호 학원 교습정지 14일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7.]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4. 5. 23.자 학원 교습정지14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5.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원 교습정지14일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 개요

- 가. 청구인은 ○○○외국어학원 설립운영자로 2006. 7. 6.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3.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학원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교습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
- 나. 다음날인 3.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학원 행정원장의 진술과 확인서에 의해 외국인강사는 2014. 3. 17., ○○○ 강사는 2014. 3. 14. 채용되었으나 조사 당시 외국인 강사에 대한 미검증, 강사 2명(○○○, ○○○)에 대한 성범죄경력 미조회, 직원명부 부실 기재 사항이 확인되었음.
- 다. 이에 피청구인은 4. 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교습정지30일, 벌점45점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4. 30. 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직원명부 부실 기재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한 점을 반영하여 외국인 강사 미검증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사항만을 적용, 피청구인은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교습정지 14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2. 청구인의 주장

- 가. 2014. 3. 19. 피청구인의 방문 조사 전 이미 외국인 강사 1인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있었고 강사 2인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중에 있었으며, 조사 바로 다음날인 2014. 3. 20. ‘강사 자격이 있는 강사로 검증됨’과 ‘성범죄경력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나. 또한 청구인 학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성범죄경력미조회 의무가 없고, 피청구인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을 고려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처분하여 위법함.
- 다. 청구인은 강사자격이 없는 강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생들에게 위해를 끼친 사실에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워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
- 라. 또한 성범죄경력 미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결부시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

3. 피청구인의 주장

-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점검일 2014. 3. 19. 다음날 3. 20. 관할 경찰서에 강사 2명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 즉시 회보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외국인강사 검증 또한 점검일 이후인 3. 26. 채용신체검사를 하여 3. 31. 발급되었고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또한 3. 26. 발급받았음.
- 나.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학원장은 강사에 대하여 검증한 후 채용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행정원장의 진술 및 확인서를 통하여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외국인강사 미검증으로 벌점20점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 다. 청구인은 2012. 11. 15. ~ 2014. 4. 21. 약 1년 5개월 동안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운영하였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4. 21.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므로 4. 21.부터 성범죄경력조회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어 3. 19. 점검 당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강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벌점 20점 및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충분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제출일을 연장하고 학습자보호를 위한 정지기간 조정 요청도 반영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한 적법한 처분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4. 판단

- 가. 이 사건 관련기록(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3. 19. 청구인 학원에 대한 점검 당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에 대하여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하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의 확인 없이 강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을 이유로 14일 교습정지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강사미검증에 따른 벌점과 함께 성범죄경력 미확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합산하여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4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확인 미이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에 대한 벌칙으로 제67조에서 과태료의 부과를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역시 성범죄경력 확인의무의 불이행을 교습정지의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제21조 제1항 별표4에서 성범죄경력미조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칙 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 및 조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비로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재량판단에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하여 성범죄경력 미확인까지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호에 따라 외국인 강사자격 검증 내용에는 범죄경력의 조치가 포함되고 범죄경력에는 성범죄경력도 포함되는바, 비록 강사자격검증과 성범죄경력조치의 의무가 각각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여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별개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강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에 있어 각 의무의 불이행을 엄격히 구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독립된 별개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그로인한 결과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이 2014. 03. 19. 청구인 학원 방문 점검 시 비록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과 내국인을 포함한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범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점검일 바로 다음날까지 범죄 및 성범죄경력 조치를 완료하였고(외국인강사의 자국범죄경력조회는 3. 26. 완료됨) 외국인강사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도 3. 31.까지 보완하였으며, 검증 및 조회 결과 강사자격이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외국인강사자격 검증이나 성범죄경력 조치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14일의 교습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불법 기숙학원 형태 여름캠프 행정처분

핵심 2016-113호 학원 교습정지 등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7.]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2,000,000원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학원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11. 청구인에게 한 ‘학원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과태료 2,0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17.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로 ○○○, ○층(○○동, ○○○○○)에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6. 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의 학원이 여름방학 불법 기숙캠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 홈페이지에서 캠프 관련 광고를 확인하고 2016. 6. 7. 청구인의 학원을 1차 지도점검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2016. 6. 17. 청구인에게 불법 기숙학원 형태의 여름캠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2016. 7. 6. 청구인으로부터 학원에서는 방학캠프에 대한 학생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2016. 7. 8. 청구인에게 ‘불법 (기숙)캠프 수강생 모집행위 중지’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과 별도로 1차 지도점검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수강생 대장 부실 기재, 채용 미통보, 성범죄경력 미조회’ 사실을 확인하여 2016. 7. 19. ‘시정명령(벌점 20점)’ 처분(이하 ‘1차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6. 7. 21.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결과 및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수강생 모집행위를 중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정결과를 보고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의 학원에서 모집한 불법 기숙캠프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참가 학부모들의 제보를 받고, 2016. 8. 17. 청구인의 학원을 2차 지도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미이행, 교습비등 허위 게시, 강사 등 성범죄경력 미조회’ 사실을 확인하여 2016. 10. 11. 청구인에게 ‘학원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교습정지 기간: 2016. 10. 25. ~ 11. 7.), 과태료 2,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6. 10. 24. 우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원 교습정지 14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6. 10. 31.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여름방학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 한다)를 이 사건 학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사업 주체를 변경하여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인계하여 학원과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캠프가 학원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홈페이지 수정 누락 등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보통 학원에는 1년에 한 번도 지도점검을 나오지 않는데 청구인의 학원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지도점검을 받았고, 근무 기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학원의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안내문 등에 학원 명으로 이 사건 캠프에 대한 홍보를 한 점, 이 사건 법인과 학원의 주소지와 대표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캠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학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등록지 외에서 불법적인 기숙형태의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캠프를 진행하여 피청구인은 재차 점검하게 된 것이며, 근무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취업 전에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1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나.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관련기록 등의 기재내용, 각 당사자가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을 사내이사로서 하는 1인 법인으로 학원운영업, 기타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7. 6. 설립 등기하였고, 개업연월일을 2016. 7. 1.로 하여 2016. 7. 12.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주소는 이 사건 학원의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로 ○○○, ○층(○동)이고, 사업의 종류로써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교육컨설팅’으로 하고 있다.

- 2) 이 사건 캠프는 2016. 7. 24.부터 8. 14.까지 ○○○○인재개발원에서 ‘○○○○ ○ ○ ○ 캠프’ 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사실은 2016. 8. 3. ○○광역시○○교육지원청의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캠프를 홍보하는 홈페이지(2016. 8. 2.)의 제목은 ‘○○○○학원 여름캠프’ 로 되어 있었으며, 같은 홈페이지 상에서 ‘○○○○학원’ 명의로 여름캠프 질문/답변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었다.
- 3) 이 사건 캠프의 수강료가 입금된 계좌는 2개인데, 하나는 2016. 7. 13. ‘(주)○○○○ ○○○’ 명의로 신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이며, 다른 하나는 2016. 7. 13. 이전부터 사용한 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다. 청구인은 우리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는 현재 이 사건 법인 소속 총무과장의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써 위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까지 이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4) 2016. 8. 17. 2차 학원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 중 시정명령 미이행(등록의 장소 캠프 운영)에 대해 벌점 30점, 교습비 등 허위표시에 대해 벌점 10점 및 과태료 500,000원, 강사등 성범죄경력 미조회에 대해 과태료 1,500,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학원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벌점 합계 40점에 해당하는 교습정지 14일이 결정되었다.

다. 판단

- 1)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과태료 2,000,000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과태료 2,000,000원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학원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학원조례’ 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학원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위반 사항 벌점표’에 따라 산출된 벌점을 합산하여, 벌점 구간별로 교습정지의 기간 및 등록말소 처분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학원 교습정지 14일’은 시정명령 미이행(등록의 장소 캠프 운영)에 대한 벌점 30점과 교습비등 허위표시에 대한 벌점 10점을 합산한 벌점 40점에 근거해 부과된 것인데, 청구인은 시정명령 미이행(등록외 장소 캠프 운영)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학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등 참조). 또한 학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즉 이른바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법령에 따라 숙박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하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운영한 이 사건 캠프는 학원이 등록된 시설(교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학습자를 모집하여 교습하는 것으로, 등록된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할 것을 규정한 학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과 별개인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캠프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페이지 상에서 이 사건 학원의 이름으로 이 사건 캠프에 대한 홍보와 캠프에 대한 질문/답변 게시판이 운영되었고, 이 사건 캠프의 수강생 및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캠프의 운영 과정에서 학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상당 부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동시에 학원의 운영자인 점,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학원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주소지 역시 학원의 주소지와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법인 설립 전부터 이 사건 캠프의 수강료가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청구인의 직접적 지배·관리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법인의 회계와 개인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캠프를 이 사건 법인에 인계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은 학원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캠프를 운영한 것은 이 사건 학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캠프를 청구인이 운영자로 있는 학원의 교습행위인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학원 교습정지 14일’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2,000,000원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학원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처분 취소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학원 교습비등 조정명령

행심 2016-140호 학원 교습비등 조정명령 무효·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17. 3.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9. 청구인에게 한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 가. 청구인은 ‘○○○○○○○○교습소’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교습비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변경 신고한 교습비가 피청구인이 정한 조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 9. 19. 피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임의로 작성된 수기 내역으로 조정위원회의 검토자료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6. 9. 20. 청구인에게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청구인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초 제출자료 및 요구사항에 대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6. 10. 26.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정성적 요소는 개별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기 작성된 자료만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불충분으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0. 28. 청구인에게 교습비를 조정기준액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6. 11. 7. 제출한 의견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개별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2016. 12. 2.까지 제출할 경우 적정교습비를 분석하겠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2016. 11.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교습비등 조정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습자에게 교습비를 책정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교습비에 대한 심의 과정에 있어 수업의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조정기준액과 회계자료만으로 심의하였고,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였다.
- 다. 피청구인이 교습소의 규모, 정원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한 조정기준액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교습비 책정을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정기준액을 초과하여 변경 신고할 경우 교습비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하였으며, 조정기준액은 교습비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교습비가 조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정성적인 요소는 법률에 근거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정교습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적정교습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 다. 교습비 조정기준액은 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전수조사를 통해 왜곡 범위를 제외한 교습비를 토대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고, 청구인은 학원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고한 교습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학원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나.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관련기록 등의 기재내용, 각 당사자가 우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청구인이 2016. 8. 22. 청구인의 교습비 변경 신고에 대해 청구인에게 조정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6. 9. 11. 교습비 관련 자료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16. 9. 20. 청구인에게 신규 학원 기준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016. 9. 30.까지 2016년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에 제출한 자료 및 요구사항에 대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6. 10. 26.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안전에 대해 자료 불충분으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 4) 피청구인이 2016. 10.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11. 16.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6. 11.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16. 11. 22. 청구인에게 교습비등 조정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2016년 재무자료를 2016. 12. 2.까지 제출할 경우 적정교습비를 분석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판단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습비등과 관련하여 학원법 제4조제2항은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강사의 연말정산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습비등 조정명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등에게 그 영업활동의 기초인 교습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통해 개개 학생에게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수강료의 고액화를 방지하여 사교육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습비등 조정명령은 교육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습비의 과다 여부는 우리나라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교육물가 등),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원·교습소 현황 및 수강료 징수 실태 등 개별적 요소를 포함한 교습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하여 산출되는 적정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거나 비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정기준액과 회계자료만으로 심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교습비등 조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요청한 교습비에 대하여 적정교습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내부기준으로 ‘적정교습비등 산정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아 적정교습비를 산정한 후 개별조정을 신청한 내역에 따라 ‘인정·부분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교습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교습비 개별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교습비 산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자료와 질적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인정·부분인정·불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교습비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정한 조정기준액은 2013년 초 관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를 전수 조사한 후 적정교습비를 왜곡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한 실제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조사된 교습비의 하위로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서, 조정기준액 산정을 위한 절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금액 산정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교습비등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조정기준액의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점, 조정기준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조정 심사를 통하여 신청에 따른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해결한다.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인한 학원 교습정지 75일 처분 취소



행심 2019-69호 학원 교습정지 75일 등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9. 8. 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9. 청구인에게 한 ‘교습정지 75일’ 및 ‘시정명령(별점 25점)’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 가. 청구인 주식회사 □□교육(대표이사 ○○○)은 □□독서실(□□구 □□□로 □□□, □층 소재, 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과 □□□□학원(□□구 □□□로 □□□, □층 소재,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 나. 피청구인은 2019. 3. 2.부터 3. 28.까지 이 사건 독서실 및 학원 운영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9. 3. 7.과 3. 15. 이 사건 독서실 및 학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독서실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1차, 별점 35점)’,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2차, 별점 15점)’, ‘독서실 남녀 혼석(1차, 별점 10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이 사건 학원이 ‘거짓·과대광고-인터넷광고(경미한 경우, 1차, 별점 10점)’, ‘시설 및 설비 변경 미등록(1차, 별점 5점)’,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1차, 별점 10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2019. 4. 9. 이 사건 독서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점 60점에 따른 ‘교습정지 75일’ 처분을 할 것이며, 이 사건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별점 25점)’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 교습정지 75일(2019. 6. 17. ~ 2019. 8. 30.)’ 처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시정명령(별점 25점)’ 처분을 통지(이하 ‘학원 교습정지 75일’ 처분을 ‘제 1처분’이라 하고, ‘시정명령(별점 25점)’ 처분을 ‘제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9. 6. 1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제 1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6. 18.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가. 대법원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참조)한 바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은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6]은 별점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교육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하 ‘학원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별표 4]에서는 학원법 제17조제1항 관련이라고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 조례 제13조는 학원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학원 규칙에 재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제 1처분 관련
 -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독서실에서 튜터룸을 운영하여 ‘등록외 교습과정을 운영’하였다고 하며 별점 35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튜터는 이 사건 독서실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볍게 학습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학원법에 따른 ‘교습과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기적이고 단순한 ‘상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

- 2)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독서실은 독서실 이용기간을 1개월과 6개월로 구분하여 1개월의 경우에는 기본 240,000원과 할인된 200,000원을, 6개월의 경우에는 기본 1,440,000원과 할인된 1,200,000원으로 교습비를 등록하여 게시하였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일자과 독서실 이용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시험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1개월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습자들에 한하여 2019년 2월분을 일할(28일 기준)로 계산한 1주일 이용료(60,000원)를 받았던 것인데, 등록된 교습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까지 미등록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3) ‘독서실 남·여 혼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남녀 좌석을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자들이 다른 자리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어쩔 수 없이 남녀 좌석이 만나는 부분에서 일부 남녀 좌석이 섞이게 된 것은, 청구인이 최대한 학습자가 원하는 자리로 배치해주려고 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독서실 등록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좌석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지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독서실 모든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좌석별로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제 2처분 관련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이 ‘거짓·과대광고(인터넷 광고·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별점 10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강사변경을 적기에 업데이트하지 못하였던 것이 거짓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에게는 강사변경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수강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튜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독서실 광고이지 이 사건 학원 광고가 아니며, 영상반과 동영상 강의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이 등록 당시 설치한 칸막이를 제거하여 강의실 면적이 135㎡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칸막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다는 학습자들의 불만 해소 및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칸막이를 제거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칸막이 제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칸막이 제거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3)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과 관련하여, 학원법 제17조에서는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를 행정처분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음에도 학원 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을 위반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학원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강사를 채용한 경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강사를 게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된다. 학원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하게 학원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는 것인바,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제1 처분 관련

- 1) 독서실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며, ‘학습장소의 제공’ 이외의 교습행위는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언제나 질의응답이 가능한 튜터룸 운영’이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고, 튜터를 모집하는 채용공고에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질문에 대한 답변’, 근무조건으로는 ‘과목 당 주2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튜터가 제출한 상담내역에는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독서실에서 학습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는 교습행위를 한 것으로 ‘학원법’상 등록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것이다.

- 2)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독서실의 경우 1개월 교습비가 정가 240,000원, 할인가 200,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된 교습비 외에 1주일 60,000원을 징수한 사례가 6건 발견되었다. 이는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할계산 기준(① 240,000원÷30일=8,000원, ② 200,000원÷30일=6,670원, ③ 60,000원÷7일=8,570원)에도 맞지 않다.
- 3) 학원 조례 제4조제1항의2에서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하고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독서실 출석부를 통해 남녀 좌석이 만나는 중간부분 이외에서도 혼석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제2 처분 관련

- 1) 이 사건 학원에서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생 출신 튜터 2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 설립 이후 2019. 2. 28.까지 튜터 1명이 근무했고, 마지막 튜터는 7급 합격생 출신이 아니었다. 또한 선택과목이 영상반으로 운영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임을 확인하였고, 일부 강좌에서 한국사 강사가 교체된다는 것을 적기에 업데이트하지 않고, 교체되기 전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2) 학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는 강의실 단위면적을 30㎡이상 1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로 칸막이를 제거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시설변경 미등록에 해당한다.
- 3) 강사 인적사항 게시와 강사 채용 등록과는 별개의 건이다. 강사를 채용하여 게시한 후 15일의 기간 안에 등록할 경우에는 ‘강사채용 미등록’으로 처분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9. 3. 15. 현장조사 당시 강사 1명을 강사게시표에 게시하지 않았고, 이는 ‘강사의 인적사항 거짓게시’에 해당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의3, 제7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나.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청구인은 2019. 3. 7. 및 3. 15. 이 사건 독서실 및 학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위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위반사항	민원 세부내용	확인사항	별점	비고
독서실	등록외 교습과정	독서실에서 학습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튜터)	‘자기주도클래스학원 강의와 독서실 패키지 프로그램’-튜터에게 질의응답(교습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 광고, 상세정보와 간판 등에 질의응답사(17사18사) 확인되고, 튜터 채용공고 상 담당업무에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질문에 답변이라고 기재됨. 또한 튜터가 상담내역을 제출함 ⇒ 독서실에서 학습장소 제공 이외의 교습행위	35	1차
	교습비 변경 미등록	1주 6만원 교습비	1주 6만원(4명), 2주 12만원(2명) 존재	15	2차
	독서실 남녀 혼석	남녀별 좌석 미구분	현장점검 시 독서실 출석부를 통해 확인	10	1차

구분	위반사항	민원 세부내용	확인사항	별점	비고
학원	거짓·과대광고	튜터 및 튜터룸 운영	‘7급 합격생 출신 튜터 2명’ 광고문구 ⇒ 일부기간 1명 근무, 튜터 중 7급 합격생 출신이 아닌 자 존재	10	1차
		광고와 다르게 강사 교체	일부 강의에 일정기간 청구외 □□□이 강의하는 것처럼 광고.		
		영상반 운영	선택과목(행정학, 행정법, 사회) 영상반 운영 광고하였으나 영상반 아닌 온라인 동영상 상품.		
	시설 및 설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시설 무단 변경	강의실①(133.24㎡)과 창고(19.49㎡)로 사용하던 부분의 칸막이 제거 ⇒ 152.73㎡	5	1차
	강사 게시위반	강사게시표 미게시	3월 초 청구외 ○○○ 강사 채용 확정 후인 2019. 3. 15. 강사게시표 상 누락 확인 (청구인 보충서면에 따르면 2019. 3. 14. 채용)	10	1차

- 2) 피청구인이 2019. 4. 9.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하여 ‘교습정지 75일(2019. 5. 7. ~ 2019. 7. 20.)’ 을,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시정명령(별점 25점)’ 을 할 것임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9. 4. 29. ‘교습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을 요청하는 한편, 교습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019. 6. 15.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9. 현 시점에서 교습정지 처분을 할 경우 학습자들이 대처할 시간이 약 1달 정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시험일자 이후로 행정처분 기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교습정지의 기간을 ‘2019. 6. 17. ~ 2019. 8. 30.’ 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하였다.
- 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8. 11. 2. 이 사건 독서실에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과 ‘교습비 등 미게시’ 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별점 20점)’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다. 판단

- 1) 청구인은 학원법 제17조제4항이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6]은 별점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교육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학원조례 제13조는 학원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학원규칙에 재위임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이 「헌법」 제107조제2항에 토대하여 소송의 계속 중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위원회에게는 심판의 계속 중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명령·규칙을 당해 사안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원조례 제13조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설령 행정심판위원회에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학원조례 제13조는 별점에 따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학원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제1처분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독서실에 배치된 튜터가 독서실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가볍게 학습조언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독서실’ 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이므로 학습장소의 제공 이외에 교습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언제나 질의응답이 가능한 튜터룸 운영’ 이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고 튜터 채용공고에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튜터가 제출한 상담내역에는 학습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독서실에서 학습 장소 제공 이외에 ‘성인고시’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한 교습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원법 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습자들에 한하여 일할로 계산한 1주일 분 이용료를 받은 것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독서실의 경우 1달에 240,000원과 200,000원의 교습비만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등록되지 않은 1주일에 60,000원의 교습비를 징수한 사례가 6건 발견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지난 2018. 11. 2. 교습비 변경 미등록에 대해 별점을 받았던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교습비 변경 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주일 60,000원의 교습비 징수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독서실에서는 최대한 학습자가 원하는 자리로 배치해준다보니 남녀별 좌석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독서실에 남녀별 좌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음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제2처분 관련

청구인은 강사변경을 적기에 업데이트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수정내용을 공지하고 수강생들에게 강사 변경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하지만, 업데이트가 늦어진 일부 기간 동안 수강생들이 교체되기 전의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오인할만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학원 홈페이지에는 ‘7급 공무원 시험합격생 출신 튜터 2명’이 있다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선택과목이 ‘영상반’으로 운영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강의’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등록 당시 설치한 칸막이로 인해 강의실 이동이 불편하다는 학습자들의 불만 해소 및 안전 문제로 칸막이를 제거한 것은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원조례 제4조 제1항제1호는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 이상 13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강의실과 창고로 사용하던 부분의 칸막이를 이 사건 학원을 등록한 이후 임의로 제거하여 해당 강의실의 면적을 사실상 152.73㎡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강사등 인적사항 게시위반’과 관련하여 학원법 제17조에서는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를 행정처분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음에도 학원 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강사등 인적사항 게시위반’을 위반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체적 규범통제권한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학원등록 말소 처분

행심 2019-140호 학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0. 3.24.]

[주문]

1. 피청구인이 2019. 9. 2. 청구인에게 한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 학원의 영업을 90일간 정지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2. 청구인에게 한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하고, 정정 별점에 따른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 가. 청구인 (주)□□□□□ 대표자 ○○○는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00길 00, 0층 소재 □□□□□□□□□□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7. 16.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료 과다 청구 등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 나. 피청구인이 2019. 7. 22.에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2. 청구인에게 부과된 벌점이 등록 취소 기준 점수인 66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10. 1.부터 등록을 말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9. 9. 20. 우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9.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우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2019. 9. 27. ‘인용’ 결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사건 학원 건물 중 ○층은 여건상 학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치라 평소에 유학원으로 운영하다가 2019. 7월 한 달간 강의실로 사용하였다. 이는 여름 특강이 있는 4주 동안만 사용한 것으로 1년 내 내 상시 사용한 것이 아님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강사 등록과 해지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2019년 강사 해지와 신규 등록을 위하여 학원 직원이 피청구인 소속 평생교육건강과에 방문했을 때 담당 직원이 위임장 지참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가 직접 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바쁜 일정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웠으며 추후 담당 직원의 안내 착오로 대표가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도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
- 다. 제장부 부실 기재는 학원 강사 등록이 늦어지면서 바뀐 강사에 대한 서류를 교체하지 않아 지적된 것으로 정정 지도 할 수 있음에도 벌점을 부과한 것은 과한 결정이다.
- 라. 현재 피청구인 관내 □□□학원 수업 분당 단가는 287원이며 1시간 기준 17,220원이다. 청구인의 여름특강 수업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점심시간 제외 8시간), 19:00에서 22:00(3시간)까지로 하루 수업시간은 11시간이며 하루 수강료는 182,000원(시간당 16,545원)이다. 이는 피청구인이 규정한 단가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학생 한 명의 개인수업을 시간당 5만원으로 영수한 1건으로 전체 수강료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벌점 50점을 부과한 것은 과한 결정이다.
-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해 오는 동안 피청구인의 지도를 따르고자 성실하게 임해 왔음에도 본의 아니게 일부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계도할 목적이 아닌 등록 말소에 목적을 두고 벌점을 찾아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지침에 따라 몇 년째 수강료 단가를 올리지 못해 심한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교습비는 □□□ 교습과목 및 □□□ 과목 분당 286원으로 주 53시간, 월 212시간에 해당하는 3,640,000원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학생의 경우 개인 과외를 진행하면서 16시간에 800,000원(분당 833원)을 징수하여 등록 교습비를 100% 이상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어 벌점 50점을 부과한 것이고 이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징수(블리츠러닝¹⁾, 교재비)가 확인되었다.
- 나.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모두 13명으로 학원 게시표에 게시된 3명 중 2명은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지 않은 강사로 강사 미등록으로 행정처분 하였고 일부 강사에 대한 미게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리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의 직원 명부를 비롯한 각종 장부가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적인 부분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영수증 원부에 수강생 이름 및 교습기간, 교습시간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해야 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징수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였다.

1) 하버드대학교 출신 강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단어암기부터 문제풀이까지 반복 학습이 가능

- 라. 청구인은 ○층 유학원을 강의실로 사용하여 교습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학원에서는 교재를 판매·징수할 수 없음에도 법인의 출판업 등록을 빌미로 교재비를 징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어학원과 유학원을 함께 광고하여 위치를 혼재하게 운영할 뿐 아니라 대학입시를 위한 원서 컨설팅 및 숙박업소와 연계한 여름집중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각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 단기간 불법 운영(○층에서의 교습)으로 민원의 소지가 된 점, 단기간 기숙캠프 운영 등에 따른 □□□ 전문어학원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정·감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나.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학원의 각 법령 위반에 부과된 벌점은 합계 80점으로 확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내역	주요내용	벌점
수업료 과다 청구	· 학원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됨.	· 50점
교재비 징수	· 등록한 교습비는 분당 286원이나, 분당 833원 징수하여 100% 이상 초과 확인	
블리츠 러닝비 징수	·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징수(블리츠 러닝, 교재비)가 확인	
제장부 부실 기재	· 학원법 상 위반 사항이 확인됨. · 직원 명부를 비롯한 각종 장부가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적으로 작성 확인	· 5점
강사 미등록	· 학원법 상 위반 사항이 확인됨. · 등록하지 않은 강사 2명으로 행정처분, 강사 9명 미 게시는 행정지도	· 5점
학원 시설 임의 변경	· 학원법 상 위반 사항이 확인됨. · 5층 유학원을 강의실로 사용하여 교습을 진행 확인	· 20점

-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의 각 법령 위반에 모두 인정하였다.
- 3) 청구인은 개인 강사와 학부모들의 개인수업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수업을 연결하여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학원 계좌로 수강료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

다. 판단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등록 말소는 재량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참조).
-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조사 및 청문에서 ① 등록한 교습비를 100% 이상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점, ②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징수(블리츠 러닝, 교재비)한 점, ③ 직원 명부를 비롯한 각종 장부가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적으로 작성한 점, ④ 등록하지 않은 강사를 채용한 점, ⑤ 등록되지 않은 공간을 학원의 강의실로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3)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벌점 80점에 해당하며, 학원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대상임이 명백하다.

- 4) 다만, ① 수업료 과다 청구는 한 명의 학생에 대한 개인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는 시간당 16,545원으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단가보다 오히려 낮았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외국 대학 지원 학생에 대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에세이에 대한 첨삭지도가 중단되는 점, ④ 청구인이 해당 사안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자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감경함이 공·사익이 비교교량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등으로 인한 교습소 행정처분 취소



행심 2020-228호 교습소 행정처분(교습정지 60일 등)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20.12.1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한 ‘벌점 55점, 교습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 가. 청구인 ○○○이 운영하는 □□□□□□□□□□교습소(이하 ‘해당 교습소’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2020. 9. 14. 유선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 소속 학원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 2명은 피청구인에게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9. 22. 해당 교습소에 방문하였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학원 지도·감독증을 제시한 후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교습 장소(조사 장소)에 착석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교습소에서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벌점 20점),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벌점 35점)’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 나. 피청구인은 2020. 10. 8. 「학원법」 제17조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벌점 55점 및 교습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 10. 2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의 이의제기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20. 11. 10. 청구인에게 ‘벌점 55점 및 교습정지 60일(2020. 11. 23. ~ 2021. 1. 21.)’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 11. 17. 우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우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2020. 11. 20. ‘인용’ 결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운영 중인 해당 교습소에 대한 2020. 9. 22. 현장조사 당시 학원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 2명은 청구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허락 없이 해당 교습소를 무단 침입하여 수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는 등 공무수행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 나. 피청구인이 강사를 임의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채용한 강사가 아닌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교습소 공간을 빌려서 강의를 한 임차인으로 청구인은 관련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두 당사자 간 관계는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학원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 2명은 피청구인에게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9. 22. 해당 교습소에 방문하였고, 「학원법」 제16조에 의거 학원 지도·감독증을 제시한 후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교습 장소(조사 장소)에 착석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2명(수학 수강생 1명 및 영어 수강생 1명)과 관련인은 영어교습 장소(별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적 행위도 없었고 조사 완료 후 담당 공무원들은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서’와 ‘실태조사표’에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또한, 2020. 9. 23.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원 지도·감독 부서 사무실에서 추후 교습소의 정상 운영을 위한 상담을 받을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절차가 시작되자 절차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나. 「학원법」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영 중인 해당 교습소는 수학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로 신고 되어 있음에도 조사 당시 해당 교습소는 공간을 구분하여 관련인이 영어 과목을 교습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수학 과목을 교습을 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영어 과목 교습을 진행하는 공간을 2020. 2. 2. 관련인에게 재임대(전대)하여 해당 교습소와 별도의 교습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인을 강사로 임의 채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교습소 내·외부에 해당 교습소 명칭 외에 별도의 영어 과목 교습 공간을 두고 있다는 표식(간판, 표찰 등)이 전혀 없는 점, ② 해당 교습소는 주 출입구가 한 곳으로 영어 과목 교습 공간이 수학 과목 교습 공간을 통과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독립적이지 아니한 공간인 점, ③ 2020. 2. 2. 재임대(전대) 계약 이후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영어 교습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인이 진행하였던 영어 과목 교습이 해당 교습소와 별도의 교습 공간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해당 교습소를 임대한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3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임대(전대) 계약서에 따르면 5만원의 월세를 관련인이 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의 실제 입금 내역은 매월 상이하게 3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볼 때, 해당 금액이 재임대(전대)에 따른 임대료만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7항,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제17조제2항제2호·제5호, 제17조제4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6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제21조 및 별표4

나.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과 각당사자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해당 교습소 운영자로 교습과목은 수학교육으로 정하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마치고 교습활동을 해왔다.
- 2) 청구인은 2020. 2. 2.경 해당 교습소 중 일부 공간을 관련인에게 재임대(전대)해주면서 월 5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시점부터 관련인은 해당 교습소에서 영어 과목의 교습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관련인의 별도의 교습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습소 변경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3) 피청구인 소속 학원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 2명은 2020. 9. 22. 해당 교습소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면서 「학원법」 제16조에 의거 학원 지도·감독증을 제시한 후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교습 장소(조사 장소)에 착석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서’와 ‘실태조사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학원법」 제16조는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피청구인 소속 학원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 2명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9. 22. 해당 교습소에 방문하면서 학원 지도·감독증을 제시한 후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교습 장소(조사 장소)에 착석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서’와 ‘실태조사표’에도 자필로 서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현장 확인 등은 적법한 공무수행 절차로 보이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 진술거부권 고지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존재 여부

「학원법」 제14조제7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제1항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이 해당 교습소 중 일부 공간을 관련인에게 재임대(전대)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인이 해당 교습소에서 영어 과목의 교습활동을 해온 이상 이는 「학원법」 제14조제7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학원법」 제14조제1항 후단 위반으로서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한지 여부

「학원법」 제17조제2항제2호(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제5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의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학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제21조 및 별표4에 의하면, 신고외 교습과목 운영 시 1차 위반은 벌점 35점,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시 1차 위반 시 벌점 20점으로서 벌점 하계 55점의 경우 정지 60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의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법」의 입법 목적 및 제재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학원 관련 판례

판례 1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9013, 판결]

【판시사항】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2조의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유아 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2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도1268, 판결]

【판시사항】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 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 헌마653, 2015.5.28]

【판시사항】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나.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가.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평화 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을 실효시키고 있고, 법인으로서의 대표자인 임원이건 그렇지 아니한 임원이건 모든 임원 개개인의 학원법 위반범죄와 형사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게 되므로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1.28]

【판시사항】

- 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 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나.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법 (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함)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규정할 경우,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 기회도 제공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삭제해도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으로 인하여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운영을 조금 일찍 금지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당초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다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등록에는 제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과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변경등록’이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제6조에 따른 등록’에는 문언상 제6조 제1항 전문, 후문에 따른 등록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이란 위와 같은 학원설립·운영의 등록과 변경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서 가운뎃점(·)은 대등한 사항을 나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설립과 운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①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 ②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을 하였다가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포함된다. 청구인과 같이 당초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다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등록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충분히 배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결 론】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관하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4도13280, 2017.2.9.]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2011. 10. 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院則)’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의3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제1항),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2]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같은 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하였으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의 6개 분야로 나누고 그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 7. 25.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면서, 개정 전의 교습대상이었던 유아(가)목]와 장애인(나)목]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참조)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정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단순히 “그 밖의 교습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2011. 10. 25. 개정됨으로써, 위 학원법 제2조의2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교습과정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한 취지는 학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위와 같은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들에 대하여 교습과정·내용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학원법상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에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되 하단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이 사건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등학생·중학생 수강생 22명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당에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가르쳐왔고 한자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한자 자체의 습득이라는 교습과정이 아니라 인성 및 예절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당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등은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학생들의 부모들이 지급한 수강료는 교습과정과 학업성적향상의 대가라기보다는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2011. 7. 25. 개정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중국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이나 명구, 유교사상에 기초한 도의관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당은 2011. 7. 25.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게 되어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5. 이후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법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학원법의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정 및 등록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 2011. 7. 25. 이후의 학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2도2744, 2002.9.4.]

【판시사항】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7



사기·고등교육법위반

[대법원, 2001도3003, 2003.6.27.]

【판시사항】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8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974, 2018.6.1.]

【판시사항】

피고가 2017.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90일의 교습정지처분(정지기간 2017. 10. 12.부터 2018. 1. 9.까지)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학원조례 제13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6에서 ‘별점에 따른 교습정지일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이 교육규칙에 재위임하고 있고, 서울시 학원규칙 제21조 제1항은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4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위반사항 중 하나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를 규정하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중 하나로 ‘고의·중과실(항응제공, 학원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교습 등)’을 규정하고, 이에 1회 해당하는 경우 별점 35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원법이 조례에 위임한 것은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명할 수 있는 교습정지처분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규정의 문언상 ‘교습정지처분 등의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대상’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학원법에는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습과정이나 그 교습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서울시 학원조례로부터 재위임을 받은 서울시 학원규칙 별표 4가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위반사항 중 하나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 교습 등)’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학년제·방학제 운영, 중간·기말고사의 실시, 교복·체육복 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이 공교육제도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학원법의 일반 취지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서울시 학원규칙 별표 6 중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 부분은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규칙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다40437, 2008.1.17.]

【판시사항】

- [1]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범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례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헌

[헌재, 2014헌바294, 2015.12.23.]

【판시사항】

1.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본문 부분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 (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4호 중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학습지교사나 대학생, 대학원생과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한 개인과외교습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입법자는 고액의 개인과외교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제한되는 사익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화,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학습지교사의 학습지 관련 지도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학습지 회사의 학습지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행위에 불과함에 비해, 개인과외교습행위는 독립된 영업에 해당하므로 개인과외교습행위와 학습지교사의 지도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그들에게 신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례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헌

[헌재, 2011헌바227, 2013.5.30.]

【판시사항】

1.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 학원의 종류 중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한 것(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의 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종전에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던 유아 대상 교습시설을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중 ‘예능 및 기타’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원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규제강화 대상으로 유아나 장애인 대상 교습학원이나 학교교육과정 교습학원을 명시함으로써 제2조 제1호 본문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위 두 조항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원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규정이 교습대상과 교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습인원, 기간, 시설에 관하여도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점과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개정 전 학원법에 의하더라도 유치원을 제외한 유아 대상 교습시설도 일정한 제한 아래 등록대상이었는데 당해 시설이 교습하는 내용이 개정 전 및 구 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와 ‘교습과정의 분류’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따라 등록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구 학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구체화한 것일 뿐 종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던 유아 대상 교습시설을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헌

[헌재, 2002헌바519, 2003.9.25.]

【판시사항】

1. 학원강사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 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학원강사의 자격제를 설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가 대학 재학 이하 학력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외에 행복추구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학원강사라는 직업선택에 있어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 교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또는 기술·기능, 교습경력 등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이 위임입법에 규정될 것임을 능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같이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학원강사로서의 교습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직업의 자유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의 교습행위’를 자유롭게 행할 자유를 의미하고,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라는 개념표지를 결하여 단지 일시적·일회적이거나 무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보호영역으로 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문제되는 학원강사로서의 교습행위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직업의 자유에 한하여 문제된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제한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준수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질과 능력은 학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인데, 학원의 설립·운영을 규율하는 법령에 일정 수준의 학력과 같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제한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당장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공동체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충돌하는 법익 상호간의 균형성도 구비되어 있으며,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여 학원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같이 일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방식만큼의 효과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의 원칙도 문제되지 않는다.
4. 학원강사라는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대학 재학생과 대학 졸업생을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자라야 대학에서의 다채로운 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본적 소양과 전공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인으로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원강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서 본 제한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기준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학업을 병행하여야 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원강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대학 졸업 후 고정된 생활수단으로서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 재학생은 시행령 소정의 교습경력을 쌓은 다음 학원강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에 제한이 없는 개인 과외교습을 통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므로,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 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 13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헌

[헌재, 99헌바14, 2000.3.30.]

【판시사항】

1. 당해사건에서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경우 벌칙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서부교육청이 한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인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하여 종교교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상 차별을 초래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14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5두48655, 2018.6.21.]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신고 없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호)와 등록 없이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행위(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배치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가)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는 단순히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규정하여 댄스학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단서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모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려는 댄스학원 설립·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원법의 위임 취지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고려할 때,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원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고, 국제표준무도가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학원법의 위임 내용과 취지를 학원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체계는 물론이고 체육시설법령과의 관계 등과 종합하여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 무효이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원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둘 이상의 법령 규정이 정면으로 서로 모순되어 법관에 의한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 규정들이 상위법과 하위법, 구법과 신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도 않아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규정들 모두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또는 모순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서로 모순·충돌하는 범위에서 그 규정들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요컨대 두 규정이 모순·충돌하는 경우에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두 규정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학원법상 댄스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무도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 역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댄스학원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시행령 규정이 서로 그 책임을 미루어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규정이 예정한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어느 하나의 효력이 우선하지 않으면서 서로 모순·충돌하는 관계로서,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그 모순·충돌하는 범위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학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15



교습비 조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대법원, 2010두22542, 2011.3.10.]

【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행한 14일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개별조정명령이 발령된 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후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갑 회사가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판례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99도1172, 2001.2.23.]

【판시사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 17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판시사항】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 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학원)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 중 ‘스터디존’의 경우 좌석별로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이용자가 지정한 좌석에 대한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 시간 그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70. 8. 3. 법률 제2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 3. 3. 대통령령 제12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호)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찾아보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쪽수
학원MAP	학원 등 설립운영 MAP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3
		학원 설립하기 전 체크사항	4~5
		학원 설립 운영 흐름도	6
		설립자의 자격	7
		설립자 관련 구비 서류	8
		학원 기준 면적	9
		강의실 면적 측정	10
		건축물의 용도	11~12
		직통계단	13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14~15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학원 소방 점검	17
		화장실 설치 및 관리	18
		등록할 때 제출서류	19
		교습비등 등록(신고)	20
		강사채용(해임) 등록	21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22
		외국소재 대학 출신 강사 학력조회 방법	23
		학원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	24
		학원 vs 교습소	25
		민원서류의 반려	26
		관련 법규	27
		민원처리기한 및 교육지원청 전화번호 안내	28
학 원	1. 학원설립	학원의 정의	32
		학원의 종류	32
		학원(독서실) 설립 등록 서류	33
		법인 정관 및 대표권한 확인	34
		학원(독서실) 변경 등록 서류	35~36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37~38
		조건부 설립등록	3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40
		설립자의 자격	41
		취업 제한 제도	4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경력 조회 절차	43
		외국인이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	44
		학원의 강사자격	45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강사 자격기준	46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47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	47
		강사 채용시 등록 서류	48~49
		외국소재 대학 출신 강사 학력조회 방법	49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50~51
	2.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52
		특수교육학원 등록 시 교습과정 관련 유의사항	53
		평생교육직업학원의 교습과정	54
		원격교습학원 설립 관련 사항	54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등록	55
	3.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56~58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제한	5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쪽수
학 원	4. 건축물 용도 및 시설	학원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60
		학원 설립 등록	61
		3층 이상의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62~63
		학원설립이 제한되는 용도	64
		학원의 면적기준	65
		강의실 면적측정	66
		지하실의 학원설립	66
		단위시설 기준	67
		소방시설 기준	68~69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70
		(참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1
	5. 학원의 명칭	명칭사용 기준	72
	6. 교습비등	관련 규정	73
		교습비등의 개념	73
		차량비 등록시 제출 서류(예시)	74
		교습비등 반환	74~75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운영	76~77
		교습비등 조정 절차	76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구성	76~77
		교습비등 개별 조정 절차	77
		교습비등 개별 조정 증빙자료 요구 목록 및 검토 사항	78
		소음 · 진동관리법	79
	7. 기타 유의사항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79
		학원 폐원절차 간소화	79
		면허세 납부 및 금액	80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80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 유형.시기	8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81
		집단급식소 신고	8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82~83
		학원의 게시 및 비치서류	84
		법령 서식 및 참고예시문	85~112
교습소	1. 교습소 설립	교습소의 정의	116
		교습소의 시설, 학습자 수 등	116
		교습자의 자격	117~118
		교습소의 명칭	119
		교습소의 과목	119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 교육환경 등의 정화 등	119
		교습소 신고 구비서류	120~121
	2. 교습소 운영	교습소 임시교습자 채용	122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122
		교습비등	123
		교습소 변경 신고	123
		교습소 폐소절차 간소화	123
		교습소의 게시 및 비치 서류	124
		법령서식 및 참고예시문	125~14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쪽수
개인과외교습자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148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48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149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 및 신고	149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150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151
		교습비등	151
		기타 유의사항	15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15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구비서류	153
		법령서식 및 참고예시문	154~159
지도점검	1. 지도·점검(실태조사) 중점사항	시설설비 변경(확장 및 축소) 또는 시설설비 기준 미달	165
		무단 미개원 또는 휴·폐원(소)	165
		시설·설비 무단위치 변경	168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무단 변경	168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신고)	169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영	169
		강사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17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170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170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171
		명칭관련 위반	172
		학교형태 운영 시설	172
		거짓과대 광고 행위	176
		교습비등 게시위반	176
		(광고 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및 교습비등 표시 위반	178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성과 홍보	178
		교습비등의 반환	180
		영수증 미교부·미발급	189
		무자격 강사 채용	190
		강사 인적사항 게시	190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91
		제장부 미배치 또는 부실기재	193
		보험이나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기준미달	19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 실시	19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19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95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19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쪽수
지도점검	2. 학원 불법운영 사례	학원강사 관련	199
		교습과정의 운영 관련	199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의무 위반	199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관련	200
		학원에서 서적(교재) 판매	200
	3.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참고법령	202
		학원·교습소 행정처분(교습정지) 절차 표준	204
		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 절차 표준	205
		행정처분 관련 참고 조항	206
		처분의 사전통지	207
		청문 및 의견제출 당사자에 대한 송달	208
		의견제출 관련	209
		청문 관련	210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211
		행정처분 기준	212
		과태료 부과절차 표준	214
		과태료 관련	216
		과태료 부과기준	218
		과태료 징수 절차 흐름도	222
		재산 압류 절차 흐름도	223
		체납처분 재산압류 세부 흐름도	224
		체납처분 관련	226
		과태료 부과관련 법령해석	228
		과태료 부과 감경 관련	229
		고발 업무처리 절차	230
	4.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232
	5.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전수점검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전수점검	233
	6. 참고규정	학원에서 서적(교재) 판매	201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23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37
		통학차량 안전관리	238
		집단 급식소 신고	241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242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243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245
		학습자의 인권 보호	246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247
		아동학대 발생 시 업무처리절차	248
		민간자격 표시의무	249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개인정보 처리방침	250
		법령서식 및 참고예시문	25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쪽수
학원 등 시설 안전관리	1. 화재 예방	시설 관리, 안전 관리, 화재 발생 대비 비상 조직	285
		화기책임자 지정,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286
	2.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대피방법	287
	3. 지진발생 시 행동 요령	대피방법	288
	4. 중대 재해 처벌 안내	중대 재해 개요, 적용 범위	289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	290
	5.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291
		압사/추락 시 행동요령	292
		붕괴 시 행동요령	293
	6. 안전대책을 위한 도움자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94
		피난안내도	295
		유도등	296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97
		소화전 사용법	298
질의응답	1. 학원(독서실) Q&A	학원 설립·폐원 관련 질의답변	300~311
		학원 명칭 관련 질의답변	311~312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답변	313~316
		유해업소 질의답변	317
		강사 등 질의답변	318~326
		교습 과정 관련 질의답변	326~334
		교습비등 관련 질의답변	335~341
		기타 질의답변	341~343
		벌점 부과에 처분성	344
	2. 교습소 Q&A	교습소 자격 관련 질의답변	345~348
		교습 대상 관련 질의답변	348~349
		교습 과정 관련 질의답변	349~352
		교습소 설립 관련 질의답변	352~357
		교습소 운영 관련 질의답변	357~360
	3. 교습소 Q&A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 질의답변	360~368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관련 질의답변	368~37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관련 질의답변	371~374
		행정처분 관련 질의답변	374~375
	4.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73~392
	5.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393~434



만든 사람



총괄

임영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이지운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정책담당사무관



기획 및 편집

김옥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강승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김준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이주미	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
박현정	서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이성윤	서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정희엽	서부교육지원청 주무관
홍동환	남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최호영	북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왕희연	중부교육지원청 주무관
강다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무관
김현정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무관
이기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무관
김하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무관
이정웅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무관
문수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무관
박진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무관
권다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무관

2025년 학원 업무편람

발행일 : 2024년 12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